

2011 하계대학총장세미나 글로벌시대의 대학 국제화 강화 전략

◆ 일시 : 2011년 8월 9일(화)

◆ 장소 :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2011 하계대학총장세미나 일정표

- 일 시 : 2011. 8. 9(화) 10:00 ~ 19:30
- 장 소 :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 주 제 : 『글로벌시대의 대학 국제화 강화 전략』
- 일 정

| 시 간 | 일 정 | 장 소 |
|-------------|--|-----------|
| 10:00~10:30 | 등 록 | |
| 10:30~10:50 | 개회식 - 개회사 : 김영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신임 총장 소개 | |
| 10:50~11:20 | 기조강연 I - Global Education in the 21 st Century J. Michael Adams(세계대학총장협회 회장, 미국 Fairleigh Dickinson대학교 총장) | 다이너스티홀A |
| 11:20~11:50 | 기조강연 II - Global Partnership Building through Education 김영길 회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동대학교 총장) - Global Citizenship through Education 부구욱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윤리위원회 위원장, 영산대학교 총장) | |
| 11:50~13:20 | 오 찬 | 다이너스티홀B |
| 13:20~14:20 | 주요 현안 논의 | 다이너스티홀A |
| 14:20~14:30 | 특별위원회 분과 회의장 이동 | |
| 14:30~15:40 | 특별위원회 분과별 회의 | |
| | •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 에뜨와르(23층) |
| | • 대학재정대책위원회 | 오키드(23층) |
| | •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 | 플럼(23층) |
| | • 국·공립대학발전위원회 | 뱀부(23층) |
| | • 사학법대책위원회 | 파인(23층) |
| | • 대학평가대책위원회 | 마로니에(3층) |
| 15:40~15:50 | 회의장 이동 | |
| 15:50~16:30 |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 다이너스티홀A |
| 16:30~17:00 | 휴 식 | |
| 17:00~18:00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의 대화 | 다이너스티홀A |
| 18:00~19:30 | 만 찬 | 다이너스티홀B |

차례

| | | |
|---|--|-----|
| ● | 개회사 | 1 |
| | 김영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
| ● | 기조강연 I | |
| - | Global Education in the 21 st Century | 7 |
| | J. Michael Adams 세계대학총장협회 회장, 미국 Fairleigh Dickinson대학교 총장 | |
| ● | 기조강연 II | |
| - | Global Partnership Building through Education | 19 |
| | 김영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동대학교 총장 | |
| - | Global Citizenship through Education | 33 |
| | 부구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윤리위원회 위원장, 영산대학교 총장 | |
| ● | 주요 현안 논의 | 41 |
| ● | 특별위원회 분과별 회의 | |
| • |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 49 |
| • | 대학재정대책위원회 | 63 |
| • |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 | 117 |
| • | 국공립대학발전위원회 | 131 |
| • | 사학법대책위원회 | 149 |
| • | 대학평가대책위원회 | 157 |
| • | 국제화대책위원회 | 191 |
| ●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의 대화 | |



개 회 사

글로벌 교육협력으로 세계를 변화시키자

김영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1950년대 초 발발한 6.25전쟁으로 국토는 폐허가 되고 온 국민이 가난에 허덕이던 한국은 당시 저개발국이었고 세계 최대의 원조수여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한 세대 만에 원조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한국의 경제발전에는 고등교육·연구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국제기구들로부터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처럼 급격한 경제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한국이 개도국들에게 이상적인 모델로 여겨지는 이유는 부족한 천연자원과 막중한 국방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역량개발을 바탕으로 신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한 데 있습니다. 1996년에는 OECD 회원국으로 2009년에는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이 된 한국은 지금까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최대한 환원하고 한국의 발전경험과 기술을 다른 개도국들과 공유함으로써 그들의 경제발전에도 일조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은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발전의 핵심요소로서 국가를 평화, 번영, 정의, 민주주의로 인도하는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내재적 역량 구축의 기본입니다.

높은 수준의 해외재정원조를 받은 한국의 경험은 재정지원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이 이룩한 성공의 비밀은 인간개발정책에 있는데 이 정책들은 여타 개도국에도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힘든 길을 통과한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를 잇는 가교가 될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불과 30년 만에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교육이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 교육 분야에

서 독특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한국이 다른 국가에게 진 빚을 갚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교육원조를 통해 개도국을 돕는 일입니다. 국제사회로 환원하는 일은 공적개발 원조(ODA)와 교육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가능합니다.

현재 세계의 특징은 국가간 및 국가내 부와 소득이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대표됩니다. UNDP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절반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며 이중 절반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유엔이 발표한 8대 새천년개발목표(MDGs) 중에는 2015년까지 절대빈곤을 절반으로 줄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DGs가 수립된 이래로 국제사회는 세계의 기아와 빈곤 감축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정입니다. 전통적인 개도국 원조 방식은 무조건적이거나 엄격하고 구체적인 현금지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개도국을 돕는데 보다 효과적인 방식은 미래의 지도자들, 교육받은 계층, 토착인들에게 기업가정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뉴실타대를 제공하는 동시에 원조자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저는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교육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하며, 보다 많은 사람이 배우고 알며, 보다 많은 사람이 동등하고 정당해지며, 보다 많은 아이들이 살고 생존하며, 보다 많은 어머니들이 건강해지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미래와 국가를 생각할 것이며, 함께 일하고, 삶을 소중히 여기며 이웃을 사랑할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DESJ)은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폐지하고 교과중시학습 보다 학제간 통합교육을 지향합니다. DESJ 국제이행계획(IIS)은 파트너십과 네트워킹, 역량개발과 훈련, 연구와 혁신에 집중합니다. DESJ의 목표는 지속가능발전의 원칙, 가치, 실천을 교육과 학습의 모든 측면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적 노력은 학습자의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며 이로 인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환경적 건전성 및 경제적 생존의 측면에서 더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현재 직면한 세계의 문제와 도전과제들은 에너지, 기후변화, 식량, 물입니다. 환경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창조해야 합니다. 국제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미래의 지도자들에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교육을 통해 국제적 사고방식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타협하지 않고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사회 및 경제 문제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하게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친애하는 총장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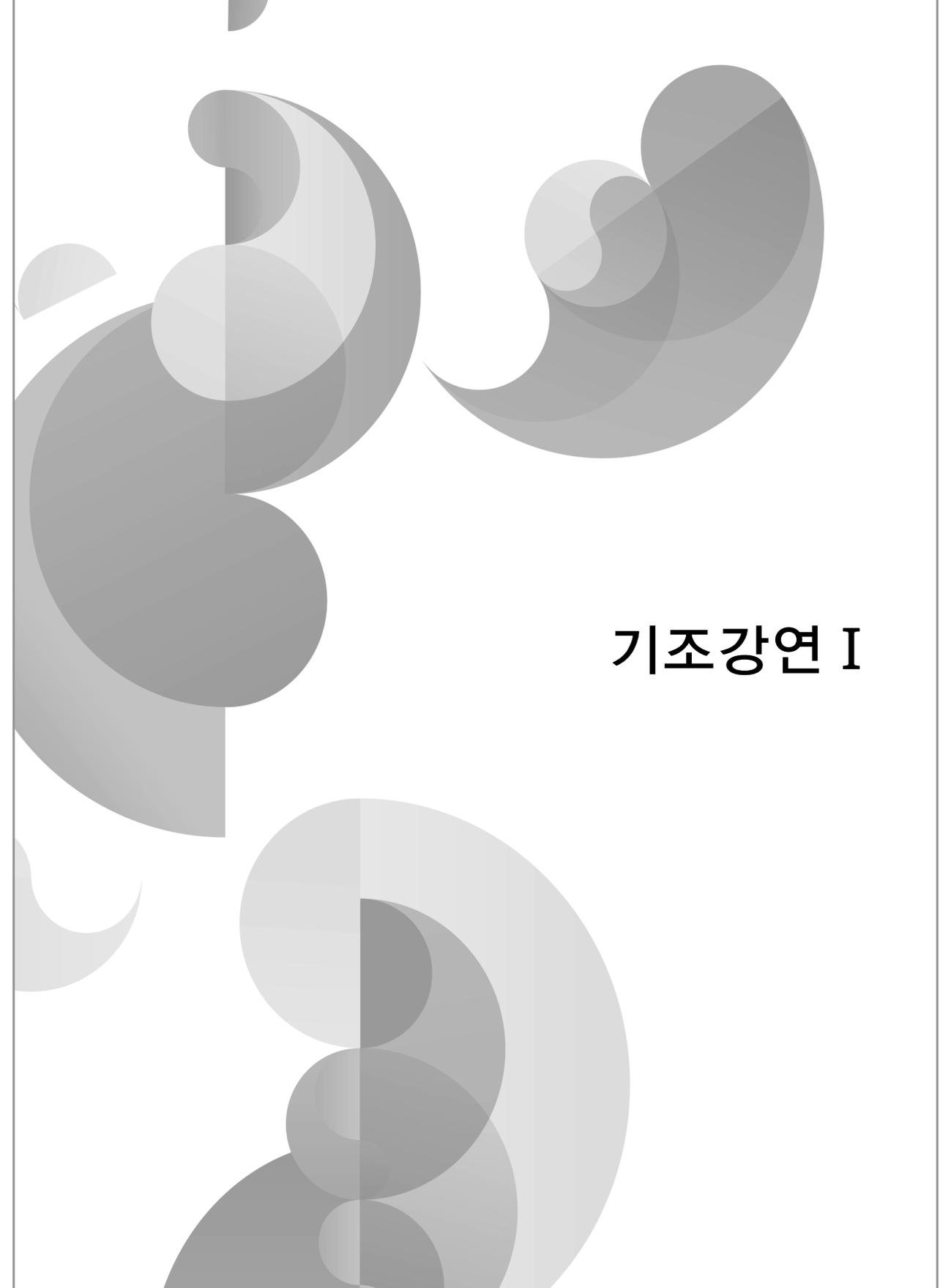
미래의 번영은 국제적 사고와 더불어 실질적인 현재의 행동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열고 국제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더 번영하는, 더 평화로운 세계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교육 지도자들, 교수들, 학생들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제 시민으로서 함께 도전에 맞서야 하는 때입니다.

서울에서 개최하는 이번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 참석하신 총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현실로 실현하는 일에 총장님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조강연 I

Global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J. Michael Adams

President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y Presidents

August 9, 2011

Global Dominos

The world has changed and the signs are everywhere.

It began as a small eruption in one of the smaller ice caps in southern Iceland on March 20, 2010. And then it entered a second explosive phase on April 14th, creating an ash cloud rising 30,000 feet. Because of the eruption's location under a jet stream, ash was carried into heavily used airspace and disrupted air traffic across Europe. In only seven days, the airline industry lost more than \$1 billion dollars, countless customers were stranded, lives were disrupted — and the ripple effect of this local event extended throughout the world.

- In Kenya, produce couldn't be exported and thousands were out of work.
- The German Foundation for Organ Transplants had to resort to ground transportation and narrowed deliveries to those close by.
- Pineapple farmers in Ghana couldn't get their cargo to Europe.
- Nissan Motor Co stopped production in Japanese factories because shipments of tire pressure sensors from Ireland couldn't arrive.
- Medical evacuation flights from Iraq and Afghanistan were taking eight hours longer.
- Weddings in New York City went on without Dutch flowers.
- Swiss supermarkets faced diminished supplies of asparagus from the United States, Cod from Iceland and tuna from Vietnam.

- Cambridge University delayed exams because students abroad couldn't return in time.

What happens in one place ripples across the oceans. What happens in one land spreads to others more quickly than we ever could have imagined. The Iceland explosion is just one example of the integration of our age, the global dominos that fall from place to place and the chain of events that can link our fates. Welcome to the 21st century.

Our economies are indeed linked closely, but more importantly our lives are just as tightly connected. Pollution and plagues ignore border controls. In the frightening H1N1 breakout of 2009, over 250,000 cases were reported in more than 100 countries. Other large-scale threats, such as those stemming from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imperil us all. We cannot hide from our global connections and our global responsibilities.

There are certainly dangers in the global village but there are also opportunities. Economic ties generate tremendous wealth and freedom. Democracy can spread like wildfire and new ideas can smash through the strongest of barricades. There are many opportunities, if you are thinking and acting globally.

Corporations have been thinking globally for a long time. Let me give you just one fascinating example.

On July 17, 1990, Iraqi President Saddam Hussein delivered his “Revolution Day” speech, filled with attacks on Kuwait. That same day — in fact, within hours — a corporate attorney for the Mars chocolate company was delivered a personal translation of Hussein’s comments.

The Mars organization kept close watch because the gulf region represented \$40 million in annual sales, with strong distribution of M&M’s, Snickers and Milky Way bars.

By August 8th, when Iraq “annexed” Kuwait, a Mars team was already in the war zone. They set up a crisis management center at the King James Hotel, in Riyadh, Saudi Arabia. In just a few days the team developed a campaign that included special rebates, personal visits to shopkeepers and a presentation to the generals at the US Army Command center.

While the countries participating in Operation Desert Shield had yet to establish supply lines, Mars received permission to continue shipping its products. It also became the only company to operate an air-conditioned distribution warehouse and to control a fleet of refrigerated supply trucks.

The Snickers’ battle was won. Mars not only saved its operation but actually increased volume and market share. More importantly, it prevented the real enemy — Hershey —

from being anywhere in the region. It pays to keep on top of global events. It pays to be globally aware. It pays to be globally connected.

The Corporate Community Gets It

Groundbreaking developments in communication and transportation technologies have radically altered our world. Finances, goods, services and human destinies are connected in ways never before imagined, so we must learn about each other.

Mars knew this 20 years ago. In fact, most of the business community gets it. They understand the global playing field. They know that events around the world influence their business. They understand that space and distance matter less. They get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alliances and global connections. There are very few — if any — isolationists in the business community. We in education must catch up.

There is much uncertainty in our world but one thing is very clear: To face the major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we must work beyond national borders and cultural boundaries. We must understand each other. We must respect and learn to work alongside each other. We must become world citizens. That requires a different type of education — that requires a global education.

A global education is the only path to success and survival in the 21st century, for individuals, for companies, for countries, and for all humanity.

Scaring Saber-Tooth Tigers

H.G. Wells said in 1920,

“Human history becomes more and more a race between education and catastrophe.”

Ninety years later the warning bell is still ringing. We in education are not winning this race, and we are failing to respond to the global imperative.

Certainly, there are many excellent global studies programs today. And I understand that change is very difficult and it’s hard to figure out — let alone adapt to — all that’s new in the world. We’ve had centuries to develop systems of national education but we haven’t had that long to adjust to the furious pace of globalization.

But local business now requires a global education — the problems of our times demand a global education. Yet, many colleges and schools have proven unresponsive or inert and frankly, face becoming irrelevant.

Why? That is a complex question, but I believe the fundamental reason is fierce resistance to any change in any form for any reason.

Required reading for those interested in educational reform should be *The Saber-Tooth*

Curriculum by J. Abner Peddiwell [a.k.a. Harold Benjamin]. Published in 1939, and even more relevant today, the book offers a tongue-in-cheek description of a supposed groundbreaking discovery of the Paleolithic school system.

According to Peddiwell's "research," the original purpose of Paleolithic schooling was to provide basic life skills to young people:

- Saber-tooth tiger scaring
- Fish-grabbing
- Clubbing woolly horses

The entire educational system was built around developing these core skills.

As the ice age passed, the saber-tooth tigers succumbed to pneumonia, silt from receding glaciers made streams too murky to see fish and the small horses went east to the dry plains. Yet, Peddiwell described, schools continued teaching the same basic life skills, maintaining that they defined an educated person. Educators who suggested that there was no relationship between real life and fish-grabbing were branded as heretics.

While written as a humorous satire, Benjamin's message is painfully current 68 years later. Education must become more flexible and begin adapting to the world of today and tomorrow. We have to wake up and look around us. What is the skill-set for the 21st century?

We must have the courage to rephrase the routine questions and alter the usual vocabulary. It means changing the foundation of the formula, building more bridges between people and cultures and working to produce world citizens.

Many of our academic colleagues have simply not responded to the implications of globalization, our changing world and the threats to the survival of our very species. Frankly, many continue to provide a saber-tooth curriculum.

The challenge is great, but there is no other option. We must be global or risk being irrelevant. We must update the saber-tooth curriculum or suffer the fate of the saber-tooth tiger.

Preparing World Citizens

So, what should define a contemporary education? How do we adapt?

Simply put, we must provide the next generation with a new skill set. We must enable them to connect and collaborate with individuals from other countries and cultures. We must enable them to appreciate diversity and embrace multiple identities. We must help them see beyond the local and identify the global pieces of every puzzle. We must teach them to see the world through the eyes of others. That means, we must prepare them to

think and act like world citizens.

World citizens understand global issues. World citizens understand the interconnected nature of our planet, and they are willing to expand their sphere of consideration beyond national boundaries. They can retain their national identity but also add a level of identity and attachment that recognizes we are all in this together. World citizens break down walls. World citizens build bridges. Perhaps above all, world citizens are committed to acting on behalf of humanity everywhere.

Some critics of this idea say, “I have a passport from my country, but to where do I apply for a “world citizen” passport. And they respond, “Nowhere.”

We believe it is possible to simultaneously be a proud citizen of your native country and also a committed, active world citizen. It is a state of mind, not a piece of paper.

In a course I co-designed and co-taught, called Globalization and World Citizenship, at the end of the semester, we issued each student a certificate of world citizenship. It was a symbolic gesture. Like the Wizard of Oz. The cowardly lion asked for courage and was issued a medal. Suddenly he saw himself differently.

There are no specific tests or lists of credentials to qualify oneself as a world citizen. But, by virtue of living in an increasingly interconnected world, it is up to educated citizens to understand their responsibilities as members of a global community.

It is up to universities to make sure their graduates understand they are world citizens. If not a certificate or degree of world citizenship, we must be granting an awareness of world citizenship.

That is the educational imperative for the 21st century.

The FDU Model

Ideas are easy. Translating ideas into reality and practice is more difficulty. What have we done at my university —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We’ve done some exciting things that change how faculty and students view themselves and their world.

First, we adopted a new University mission: “to prepare world citizens, individuals able to participate, prosper and success in the marketplace of ideas, commerce and culture.” That single change influenced everything we’ve done for the last decade.

We’ve done small things, like delivering free to all students a daily copy of the *New York Time*. We cannot make students read about world issues, but they won’t if there isn’t the opportunity. To expand our self-awareness, campus welcome and directional signs are in seven different languages.

We’ve launched major initiatives like the United Nations Pathways Series, which

regularly brings ambassadors to campus. Nearly 100 ambassadors and heads of states have visited FDU in the last decade. We applied for and earned NGO status with the United Nations — your institutions should also do the same. We became the first university to gain Special Consultative Status with UNESCO. I've appointed many of our faculty NGO committees working on important global policy issues.

We created the Global Virtual Faculty, a group of scholars and professionals from around the world who contribute to the classroom via the Internet. These colleagues — we have about 80 under contract — offer students international dialogues and diverse perspectives on global issues. They include a political scientist from Chile, the editor-in-chief from the Times of India, a former detective from Scotland Yard and a literature professor from South Korea.

FDU introduced the award-winning Core online course The Global Challenge, which introduces students to critical global issues.

We've opened a new campus in Vancouver, Canada. We've developed new partnerships with universities around the world and welcomed more international students. We've established Global Scholars programs that bring global-minded students together for exciting academic and social experiences.

These are just some examples. There is no single path to a global education. Our community has responded in various ways, but the key is everyone knows and values the mission. There is a shared sense of purpose.

When I speak to faculty, I tell them that our world continues to be filled with barriers between countries and cultures. But I prefer bridges over barricades. So I regularly challenge each faculty member to simply build a bridge. Reach out, make a connection, start a conversation and begin a collaboration with someone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And then use that connection to further your research or to provide an international lesson for your students.

Actually, it is only empowered, individual faculty who truly change institutions. It is those connections that add to a global education. Those connections — forged one at a time — can help us change the future.

I'm often asked what advice do I have for colleges looking to build global programs. My answer is that it must begin with a change of mindset. It's not what you do, but it's how you view what you are doing.

Let me say that again, it's not what you do but how you view what you are doing. Do you believe you are preparing world citizens? Particular programs will flow from that vision and will create a very effective global education.

The Charge for Universities

There's another element to global education that I want to discuss and it too requires great adaptation. Global education cannot be achieved through passive learning or mere scholarly study. We need to have our students — and our faculty — engage in active learning and truly connect with the world.

Sometimes in the Academy we have been guilty of too much observation and not enough participation. Sometimes we have confined ourselves to distant towers, removed from real-world problems and challenges. Perhaps that is another reason why we are only slowly awakening to the Global Age.

In the Academy we can no longer encourage study without involvement; we can no longer teach about problems without engaging in problem-solving. If we do not change, then I am fearful we will be left behind. Society is looking for solutions and we have an important role to play.

As the new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y Presidents, I recently offered a challenge for the future; a challenge to universities to take a more active role in global affairs.

I said our leadership must offer more models of global inspiration, global education and perhaps most importantly, global participation. Higher education must get involved with the most important issues of our times. Higher education must serve —

As a Bridge for Human Development

As a Bridge to Peace

As a Bridge for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Let me offer an example.

Introduced last year, the United Nations Academic Impact unite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the United Nations in an exciting alliance. Colleges and universities — more than 700 institutions from 104 different countries — agree to support U.N. goals and principles. Faculty and students become involved in activities that support universal efforts from human rights and literacy to sustainability and conflict resolution.

As Secretary-General Ban Ki-moon so eloquently said, “The United Nations understands the enormous impact of scholarship, innovation and ideas. We are trying to harness that great power to build a better world.”

We must create more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see the world beyond local horizons. We must create new partnerships and build new networks that can bring us together in ways not even dreamt of a short time ago. We must provide students with opportunities 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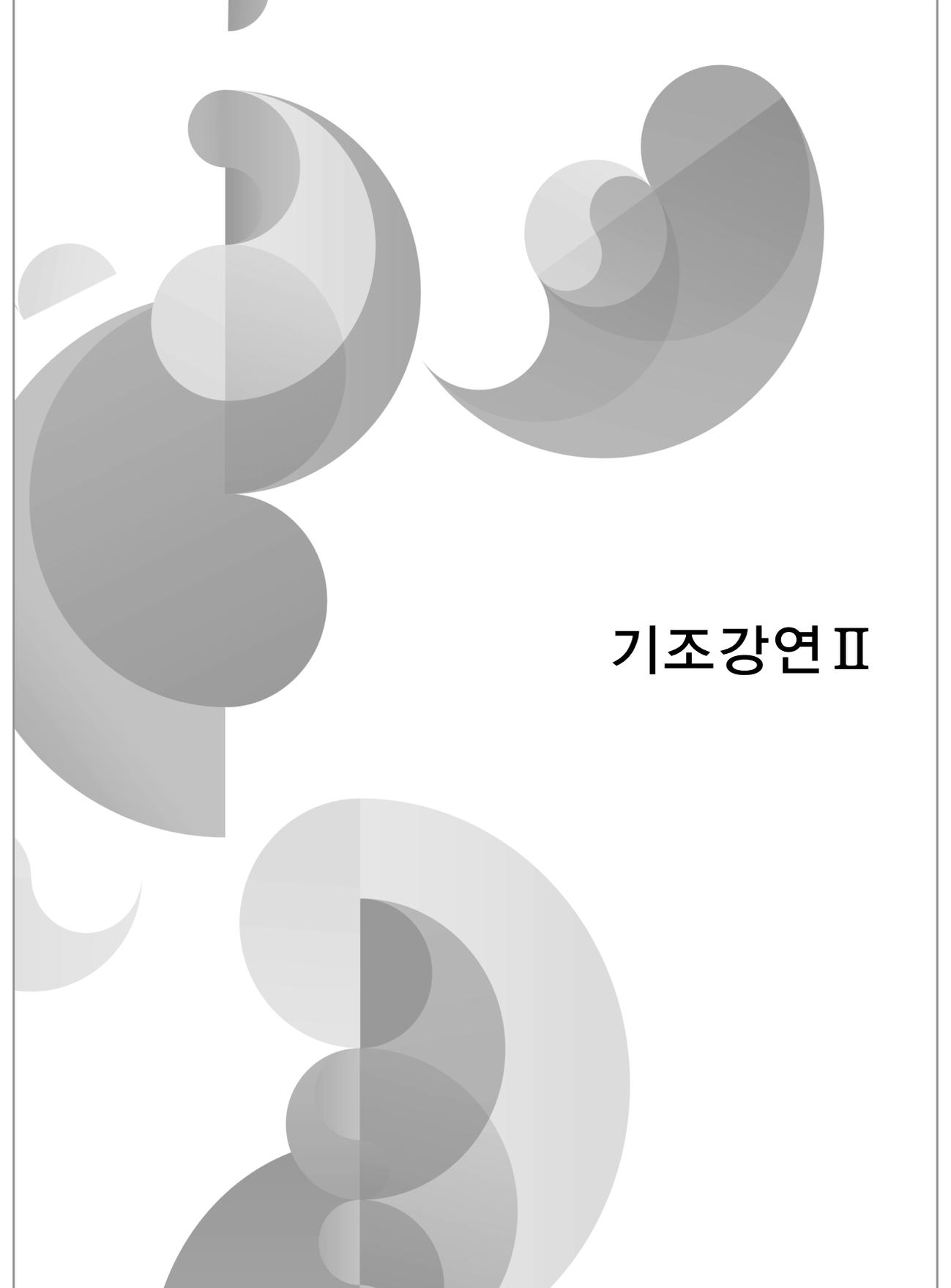
2011 하계대학총장세미나

become engaged and active across borders. It's no longer enough to become aware; global education has to include global participation. We must help our students contribute to the world.

The 21st century keeps raising the stakes. We must get this right, for the sake of ourselves, for the sake of our students and for the sake of all humanity. My hope for the future lies with the next generation. And it lies in the hands of those who will show the way.

But most importantly, it lies with leaders like you.

Thank you.



기조강연Ⅱ

Global Partnership Building through Education

김 영 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동대학교 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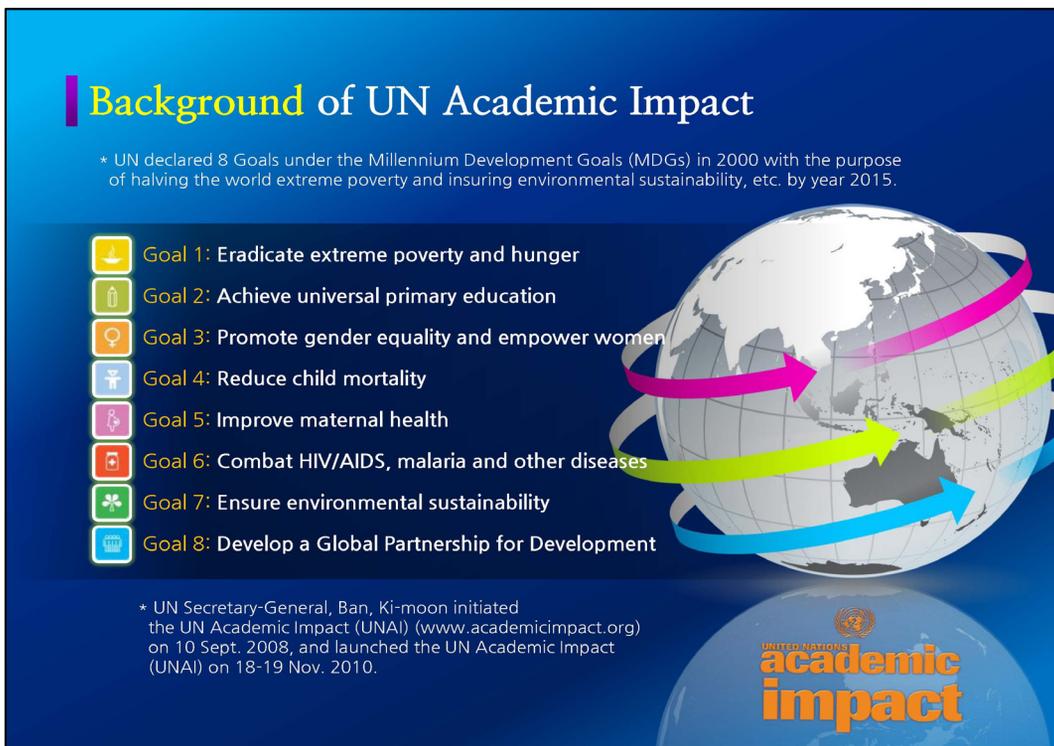
**UN Academic Impact
: Global Challenges**

“Why not Change the World ?”

Vision and Action of UNAI
2011

Sharing a Culture of Intellectual Social Responsibility

Logos for UN Academic Impact, IFU (Innovating Global University), and WBCF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 displayed at the bottom.



Background of UN Academic Impact

* UN declared 8 Goals under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in 2000 with the purpose of halving the world extreme poverty and insur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etc. by year 2015.

-  **Goal 1:**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  **Goal 2:**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  **Goal 3:**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  **Goal 4:** Reduce child mortality
-  **Goal 5:** Improve maternal health
-  **Goal 6:** 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  **Goal 7:**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Goal 8:** Develop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initiated the UN Academic Impact (UNAI) (www.academicimpact.org) on 10 Sept. 2008, and launched the UN Academic Impact (UNAI) on 18-19 Nov. 2010.

UN Academic Impact logo is shown at the bottom right.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Goal 1: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1**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Education can help lift people out of pove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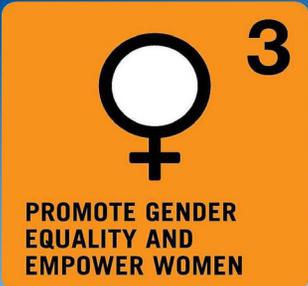
Goal 2: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2**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Every child has the right to go to school, but millions are still being left behind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Goal 3: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3**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Equal schooling for both boys and girls is the foundation for development

Goal 4: Reduce child mortality

 **4**
**REDUCE
CHILD MORTALITY**

Education saves young live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Goal 5: Improve maternal health



Fewer mothers would die if they had education

Goal 6: 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Education is the best vaccine against HIV and AID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Goal 7: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Education is an ag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8: Develop global partnerships for development



A global partnership is needed to fill the financial gap for education

UNESCO Education Natural Sciences Social and Human Sciences Culture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Media Services

About Us Themes Worldwide Events Networks Partners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Education

UNESCO » Education » Education for All

Share A- A+ [Print] [Email]

Leading the international agenda

- Climate Change Education
- Human Rights Education
- Gender and Education
- Education for All**
 - Policy dialogue
 - Monitoring
 - Advocacy
 - Funding
 - Capacity Development
- Education and the MDGs
- Education for All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 Right to Education
- ICTs in Education

Eight reasons why education is important to achieve the MDGs

1. More people would **grow and develop**
2. More people would **learn and know**
3. More people would **be equal and just**
4. More children would **survive and live**
5. More mothers would **be healthier**
6. More people would **be able to combat illness**
7. More people would **think of the future**
8. More people would **work together**

RELATED INFORMATION

THE EIGHT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 Goal 1: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 ▶ Goal 2: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 ▶ Goal 3: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 ▶ Goal 4: Reduce child mortality
- ▶ Goal 5: Improve maternal health
- ▶ Goal 6: 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 ▶ Goal 7: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 Goal 8: Develop global partnerships for development

RESOURCES

- ▶ MDG 2 : Thematic paper
- ▶ MDG 3: Thematic paper
- ▶ MDG Good Practices
- ▶ "Keeping the Promise"(2010)
- ▶ The MDG Report
- ▶ The central role of Education in the MD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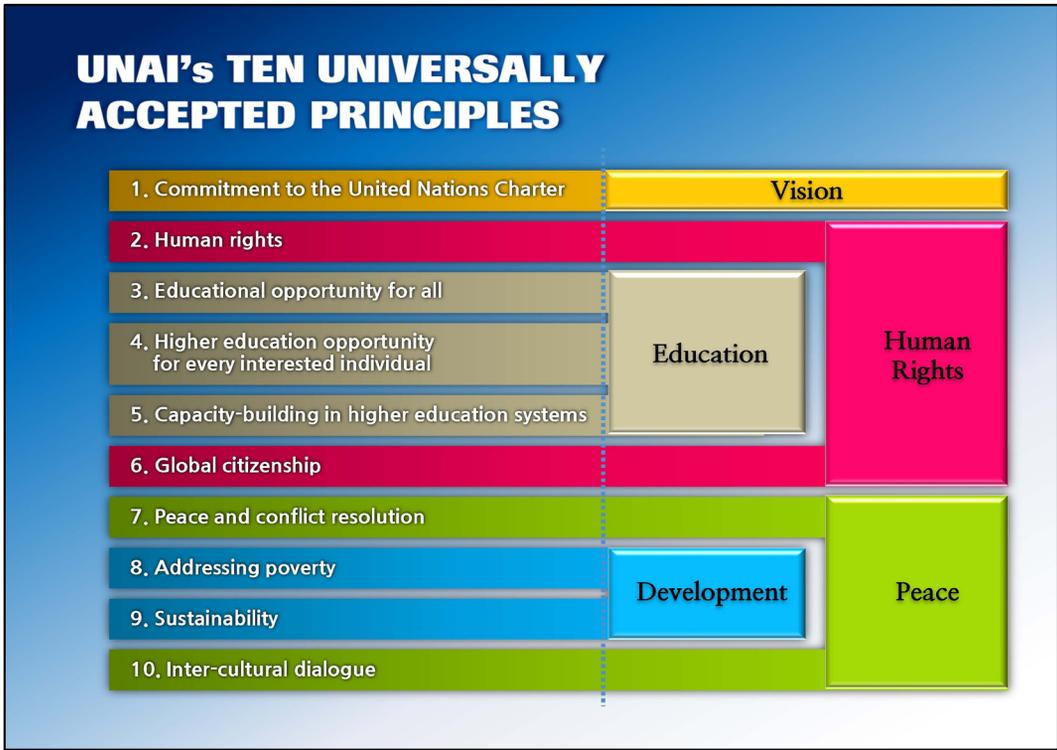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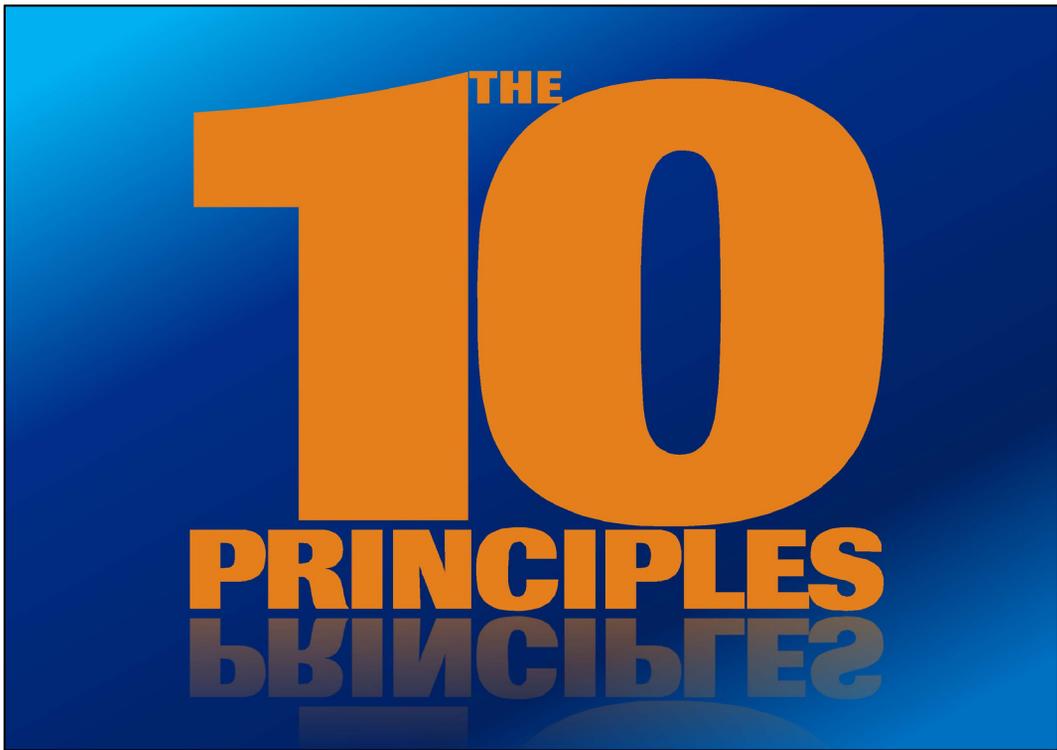
UNITED NATIONS
**academic
impact**
uwb9c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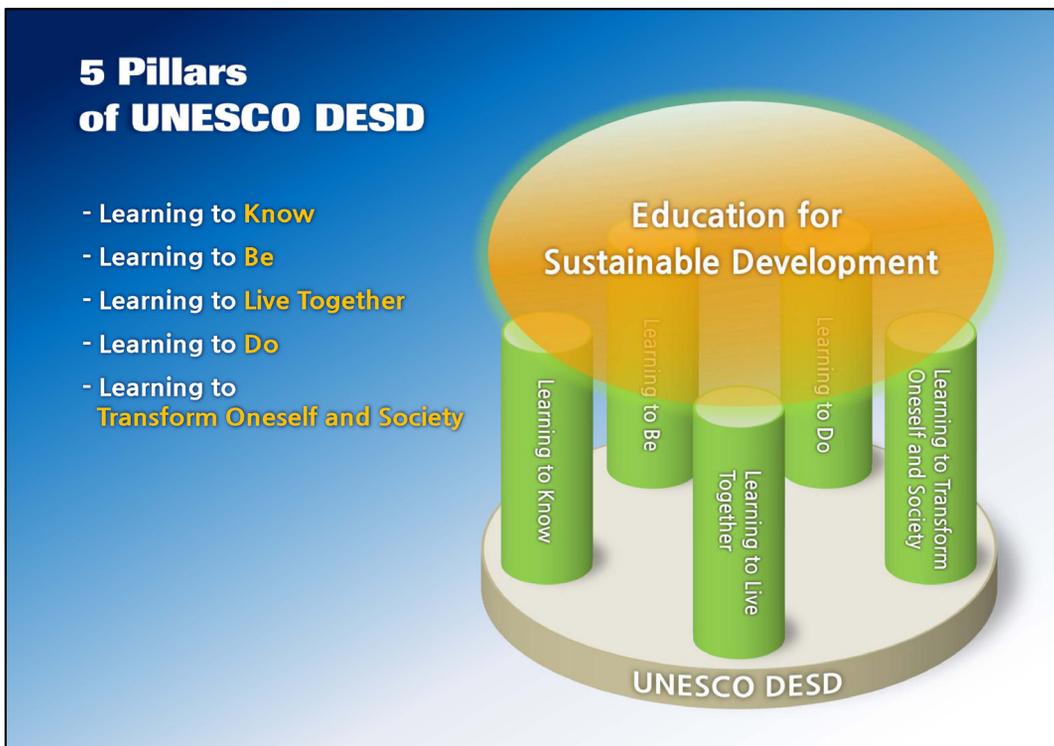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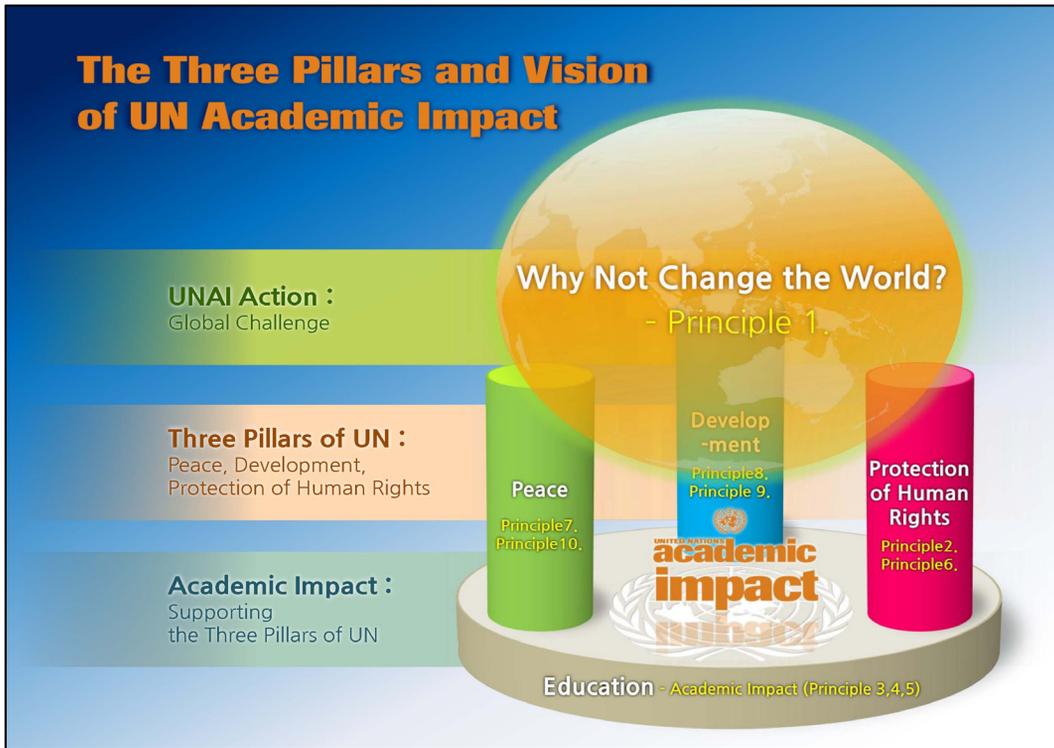
“... **WE HAVE TO STRENGTHEN** its (the United Nations) capacities on each of the three pillars of the United Nations’ work: peace, development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Part of that effort means continuing to open our doors to new partners. The academic community is surely at the top of that list. ... we hope to benefit from your ideas and scholarship.”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10 September 2008*

Objectives

The United NATIONS Academic Impact aligns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scholarship and research with the UN and with each other to address priority issues with which our world is faced. It does that by offering a viable point of contact for ideas and initiatives relevant to the Organization’s mandate and furthering their direct engagement in, or contribution to, relevant programmes and projects.





UNAI's TEN GLOBAL HUBS

| | |
|---|---|
| 1. Commitment to the United Nations Charter | J.F. Oberlin University |
| 2. Human rights | Benedict College(South Carolina) |
| 3. Educational opportunity for all | Lahore University of Management Sciences |
| 4. Higher education opportunity for every interested individual | Hadassah College |
| 5. Capacity-building in higher education systems | Handong Global University |
| 6. Global citizenship | Lehigh University |
| 7. Peace and conflict resolution | Calcutta University |
| 8. Addressing poverty | University of Kwazulu-Natal |
| 9. Sustainability | Black Sea University Network |
| 10. Inter-cultural dialogue | Escuela Politecnica Javeriana del Ecuador |



Launch of United Nations Academic Impact
at UN Headquarters in New York

Nov 18th, 2010

Sharing a culture of intellectual social responsibility



Sharing a Culture of Intellectual Social Responsi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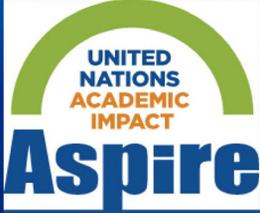
The United Nations
welcomes
Handong Global University
*as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Academic Impact
and values its commitment to the following ten principles*

- ▶ Commitment to the United Nations Charter
- ▶ Human rights
- ▶ Educational opportunity for all
- ▶ Higher education opportunity for every interested individual
- ▶ Capacity-building in higher education systems
- ▶ Global citizenship
- ▶ Peace and conflict resolution
- ▶ Addressing poverty
- ▶ Sustainability
- ▶ The "unlearning" of intolerance



Kiyoo Akasaka
Under-Secretary-General for Communications and Public Information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United N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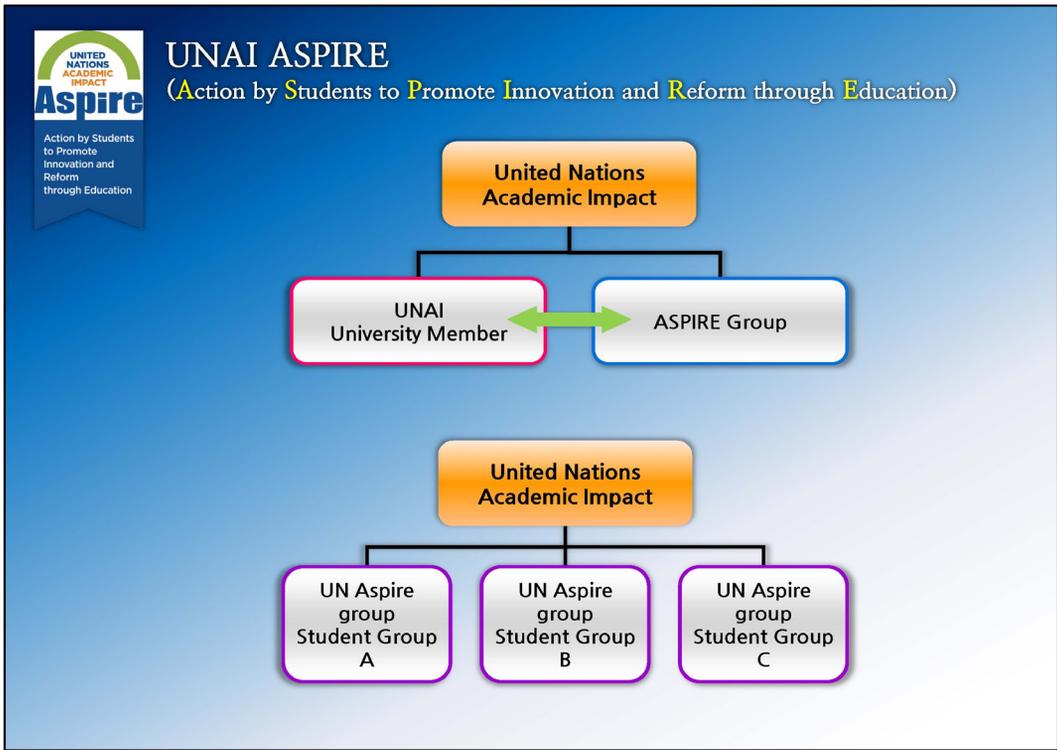
United Nations Academic Impact ASPIRE



Aspire

Action by Students
to Promote
Innovation and
Reform
through Education

through Education
Reform





Curriculum Vitae of Dr. Young-Gil Kim President of Handong Global University

Dr. Young-Gil Kim (ygkim@handong.edu) is the founding and chartered president of Handong Global University (www.handong.edu) in Pohang, Korea since 1995. Since then, he nurtured HGU to what it is today with his new educational philosophy based on cross-border, multidisciplinary and whole-person education with global perspective commensurate with the 21st Century. Prior to becoming the president of HGU, Dr. Kim was a professor of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 at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for 15 years. While Dr. Kim was in the United States, he worked at NASA-Lewis Research Centre in Cleveland, Ohio, on high-temperature alloys for aerospace applications.



Dr. Young-Gil Kim was appointed as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on Science & Technology, 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on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PACEST) of the Republic of Korea since Oct 29, 2008. Also he has been inaugurated as a president of Korean Council of University Education(KCUE), president of the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Korea (ABEEK) and serves as the Chairman of Education Sector of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the UNESCO, and UNESCO Chair/UNITWIN Network of International Centre for Capacity Building and Entrepreneurship at HGU.

Dr. Kim received B.S. in Metallurgical Engineering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in 1964; M.S. in Metallurgical Engineering from University of Missouri-Rolla in 1969, and Ph.D. in Material Science & Engineering from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Troy, New York, in 1972. Dr. Kim received Ph.D. in International Management Honoris Causa from the Institute of Finance and Economics (IFE) of Mongolia in 2003. Dr. Kim also received Honorary Doctorate Degree in Management Science from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in 2011.

HU HANDONG GLOBAL UNIVERSITY

세계시민의식의 교육: 배경, 의미 그리고 대교협의 역할

Global Citizenship through Education

부구욱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윤리위원회 위원장, 영산대학교 총장

1. 2010년 11월 18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유엔본부에서 UN Academic Impact를 제안했습니다. 반 총장은 UNAИ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국경이나 학문의 벽을 넘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면, 그간 인류에게 그토록 많은 고통을 야기했던 복잡다단한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기후변화는 단지 환경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빈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빈곤 역시 단지 실업에 대한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즉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식량안보에 관한 문제는 또한 보건에, 보건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주지하듯이 아이들은 미래의 열쇠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교육은 이 모든 분야에서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By sharing ideas, across borders and disciplines, we can find solutions to the interconnected problems that cause so much suffering. Climate change is not just an environmental threat; it is closely tied to poverty. Poverty is not just about jobs, it is directly related to food security. Food security has an impact on health. Health affects generations of children. Children hold the key to our future. And education can lead to progress on all these fronts.")

반 총장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육을 통해 세계가 봉착하고 있는 난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입니다. 특히 교육을 통해 2015년까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달성하기로 약속한 "새천년개발목표(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달성을 촉진하자는 제안입니다.

2. '새천년개발목표'와 UNAI의 연관성은 UNAI의 10대 강령(principles)을 통해 분명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의 주된 목적은 빈곤, 유아사망, 질병 발생률을 낮추고 기초교육, 양성평등, 산모건강의 확산과 증진과 같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문제의 해결에 있습니다. 반면, UNAI는 한편으로는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 제거, 보편적인 고등교육 수학기회 의 제공, 전 세계에 고등교육 시스템 구축과 같은 평등하고도 보편적인 교육인프라구축을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세계시민의식, 갈등의 평화적 해결, 빈곤과 환경문제, 문명 간 대화와 관용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 10 UNAI Principles

A commitment to the principles inherent in the United Nations Charter as values that education seeks to promote and help fulfill;

A commitment to human rights, among them freedom of inquiry, opinion, and speech;

A commitment to educational opportunity for all people regardless of gender, race, religion or ethnicity;

A commitment to the opportunity for every interested individual to acquire the skills and knowledge necessary for the pursuit of higher education;

A commitment to building capacity in higher education systems across the world;

A commitment to encouraging global citizenship through education;

A commitment to advancing peace and conflict resolution through education;

A commitment to addressing issues of poverty through education;

A commitment to promoting sustainability through education;

A commitment to promoting inter-cultural dialogue and understanding, and the “unlearning” of intolerance, through education.

3. UNA1의 목표 중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학 대다수가 '인성교육'이라는 기치 하에 이루고자 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특히 유엔헌장에 담겨있는 인류공영의 가치와 보편적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평화적인 분쟁의 해결, 빈곤과 가난의 타파, 환경과 발전의 조화, 관용의 확산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는 것은 전 세계 고등교육자가 공유해야 마땅한 가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세계시민의식'이 곧 이러한 생각 모두를 상징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세계시민의식을 갖는 것은 곧 세계 평화와 공존공영을 보편적 가치로 삼아 빈곤, 환경, 분쟁 등의 지구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와 태도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이미 세계시민의식의 중요성이 대두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미 200년도 전인 1795년 칸트는 그의 에세이 <영구평화론>에서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3가지 중 하나로 관용과 상호존중에 입각한 '세계시민권'을 거론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엠마누엘 레비나스가 모든 윤리의 기초로서 '타자'에 대한 자비와 친절 그리고 선행을 강조하였습니다. 자크 데리다 역시 타자에 대한 조건 없는 '환대'가 윤리의 기초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할 경우에도 자신과 대등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 세계시민의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은 지식인들뿐이 아닙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세계 지도자들도 세계시민의식을 고양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7월 24일 베를린 연설에서 말씀한 내용 중 인용하고자 합니다.

"미국과 유럽은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시민이기 때문에** 공유하고 책임의식은 우리가 하나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 다가올 세기에도 우리는 점점 더 적은 일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일을 같이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각국이 서로 유대하고 협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인류의 안녕을 지켜내고 공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때문입니다."

(Yes, there have been differences between America and Europe. No doubt, there will be differences in the future. But the burdens of *global citizenship* continue to bind us together. A change of leadership in Washington will not lift this burden. In this new century, Americans and Europeans alike will be required to do more - not less.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mong nations is not a choice; it is the one way, the only way, to protect our common security and advance our common humanity.)

6. 그렇다면 세계시민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온 인류가 타민족과 국민을, 인종, 종교,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전 세계인이 마치 전 세계가 조국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책임 있는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있는 역량, 즉 민주시민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비판적인 합리성입니다.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치, 사회, 문화의 제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윤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신뢰에 기초한 따뜻한 삶의 터전으로서 존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 즉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공감, 배려 그리고 유대의 성품입니다.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를 조절하고 소통, 연대, 협력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흔히 "행동하는 지식인"이라는 말이 상징하는 이상적인 현대인의 표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 또한 그와 유사합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세계시민이라기 보다는 시민이 갖추어야 하는 덕목입니다. 그러나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세계시민이 갖추어야 하는 덕목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반면 세계시민만이 갖추어야 하는 독특한 세 번째 덕목은 앞의 두 가지와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끌어안고 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비판적 합리성과 따뜻한 성품은 본질, 즉 체(體)의 문제이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용(用)의 문제입니다. 세계시민이 갖추어야 하는 세 번째 덕목은 세계도처에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인권, 빈곤, 질병, 환경 등의 문제를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물론 그 성격에 있어서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일원에 대해 가져야 하는 공감과 배려 그리고 유대 하고자 하는 마음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는 훨씬 더 넓습니다. 가족과 친지는 물론이고 민족과 국가를 넘어 전 인류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과 여유가 필요합니다.

아마 이 밖에도 세계시민이 갖추어야 할 경우 바람직한 덕목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시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합리적인 사고 능력,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하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사회동포에 대한 연민을 가졌다면 가히 세계시민으로서 모자람이 없다고 평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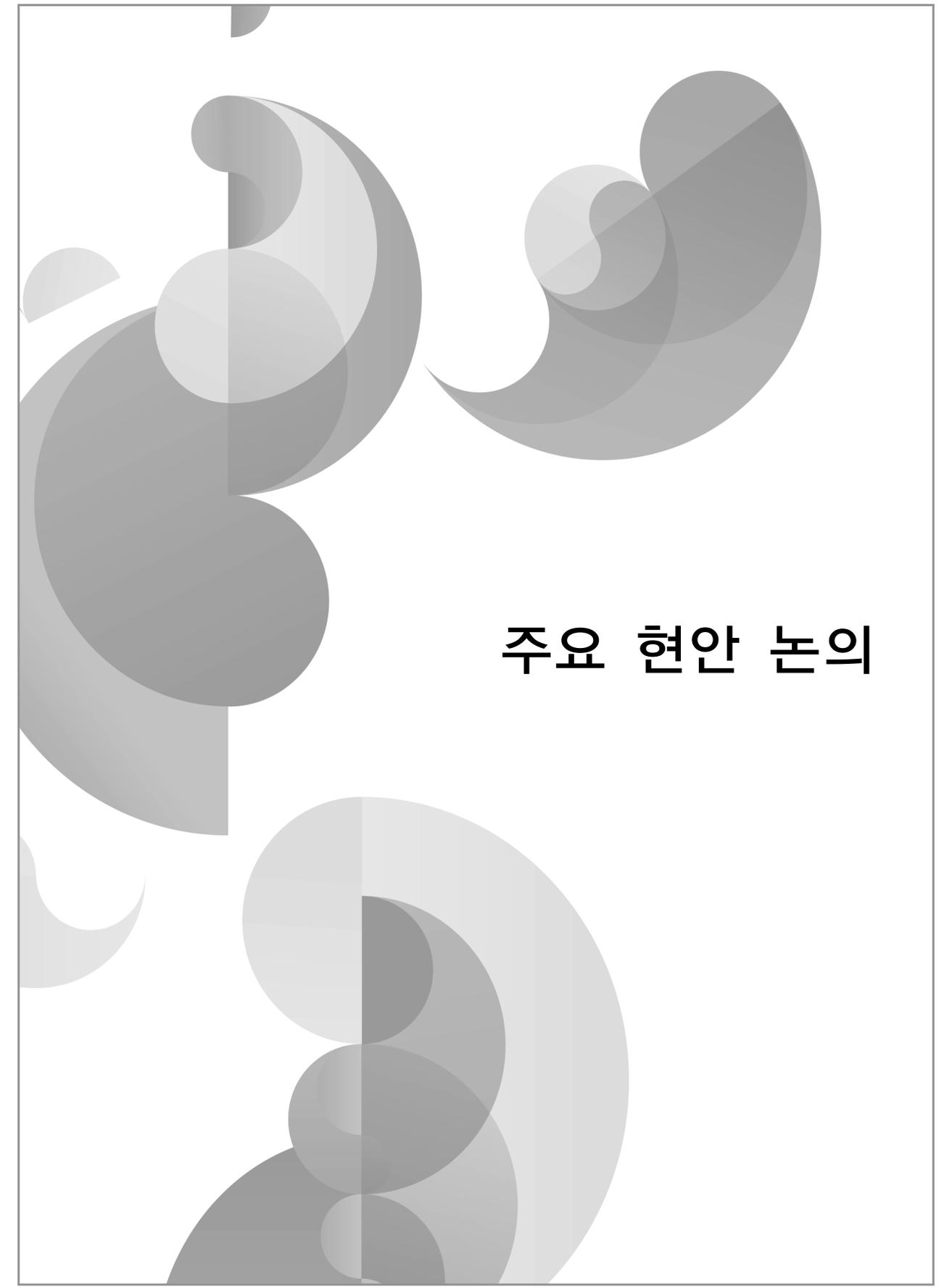
7. 그렇다면 대학은 세계시민교육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대교협과 같은 자율적 협의체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학이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일단 세계시민교육이 우선순위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면 각각의 대학이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서의 품성을 체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대학문화를 '책임 있는 인간', '실천하는 지식인'으로 유도하는 일 또한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대학이 주어진 여건과 필요를 감안하되 부단히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대학사회에는 “국제화”라는 못도 아래, 교수 및 학생의 활발한 국제 교류, 국제 학계에서의 연구 활동, 외국학생의 유치, 국제어 강의의 확대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들 노력도 단순히 국제적 활동에 필요한 실용적 능력을 기르는 데 그치지 않고, 진정 인류문명의 보편가치에 대한 이해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춘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대교협 역시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UNAI와 같은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조하여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각종 포럼이나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도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주위를 환기하는 일 필요합니다. 둘째는 대학이나 기관이 세계시민교육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앞장서야 합니다. 특히 교과부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불이익이나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끝으로 대교협에서도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다양한 교육모델을 연구, 개발하여 세계시민교육에 관심을 갖는 대학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교협의 앞으로 '대학윤리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일을 수행할 것입니다.

8. 최근 한 국제구호시민단체(굿네이버스)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질병과 억압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의 삶을 존중하고, 세계 이웃들의 삶을 존중하며, 나눔의 삶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세계를 품고 적극적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세계시민을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결코 이 시민단체가 하는 일이 초등학생에게만 적합한 일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대학도 세계시민교육에 발 벗고 나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교협 역시 거들어야 할 때입니다.



주요 현안 논의

대학수업목적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제도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

I 보상금제도 문제와 대교협의 대응

1. 대학 수업목적 보상금제도(신탁업체 : 복사전송권협회, 2011년 시행)

〈현 황〉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근거하고 문화부장관 고시(2011. 4. 28)에 따라 대학 수업 과정에서 도서, 음악 등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함, 대학 수업에서 이용하는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개별 이용방식 또는 포괄이용방식에 따라 보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해야 함

〈문제점〉

- 초·중·등 학교 수업의 경우 보상금이 유예되고 있어 대학 수업에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
- 학생 1인당 4,190원이라는 보상금액 산출 근거 미비
- 2010년 대학생수 360만명을 기준으로, 연 150억 가량의 재정 소요
- 2010년 4년제 대학생수 240만명을 기준으로, 연 100억 가량의 재정 소요
- 저작료 지급 기준 방식, 저작자 보상 배분 방식 등 기준 모호
- 대학이 이용내역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행정업무 부담
- 제도도입 논리로 유일하게 호주사례를 제시하고 있어 도입 타당성 미흡

〈복사전송권협회 차원의 계약 추진〉

- 대학에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계약 안내 공문 2차 발송
- 대학교수 대상 저작권 신탁 개별 요청 메일 발송

〈대교협 차원의 대응 상황〉

- 대학교무처장으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료 부당징수 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법적 대응 논리 개발
- 대교협 정책포럼 개최 : 약 300명 참석
- 한나라당과 저작권법 개정 추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CCLKorea 공동 협력 체제 구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 원격대학협의회, 전문대학협의회 대표가 모여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 제도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업목적 저작물에 대한 무료이용에 대한 회원대학 동의를 받기로 결의함 (2011.8.5)

II

향후 보상금제도에 대한 대응 전략

저작물 공유 운동 확산

- 회원대학 총장님들의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에 대한 무료 이용 선언」 (2011.8.9)
- 대학의 저작물 CCL 무료 이용 추진 (2011년8월 말)

법률 개정 추진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개정논리 개발 및 개정 추진
 -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보상금 유예
- 법개정 공동 성명

대학차원의 역사교육강화 방안

I 검토 배경

- G20의 성공적 개최 등 높아진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과 역할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대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역사 교육 강화방안 논의 필요
- 초·중등학교의 역사교육 강화 방안('11.4, 교과부)에 대응하여 대학 차원의 역사 교육 강화 방안 논의 필요

【 참고 : 역사교육 강화방안('11.4) 주요 내용 】

- 1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한국사' 필수 과목화
- 역사 교육과정 체계화 및 쉽고 재미있는 역사 교과서 개발
-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현장 중심의 역사 교육 지원 강화

II 대학 차원의 역사 교육 강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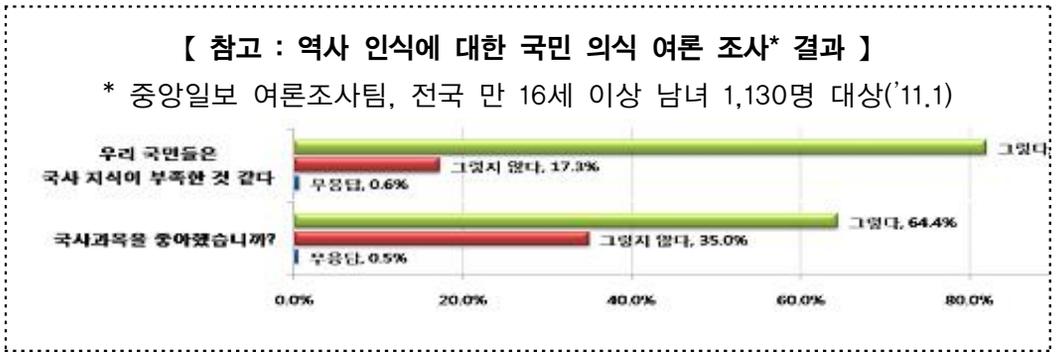
- (학생 선발) 대입전형에서 한국사 반영 강화
 - 대입전형에서 모집단위의 특성과 연계하여 한국사 관련 전형 요소를 반영할 필요

【 참고 : 대입전형에서 한국사 반영 방식 】

- 수능 선택과목으로 응시한 경우 가산점 부여(2012학년도 기준)
 - 부산대(전 모집단위에서 국사 과목 선택시 가산점 부여)

- 성신여대(사학 관련 모집단위의 경우 국사·한국근현대사 또는 국사·세계사 응시자에게 두 과목 백분위 점수 평균 2% 가산)
-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2010학년도 기준)
 - 경상대, 동덕여자대, 부산대, 경북대, 성균관대, 안동대, 전주대 입학 전형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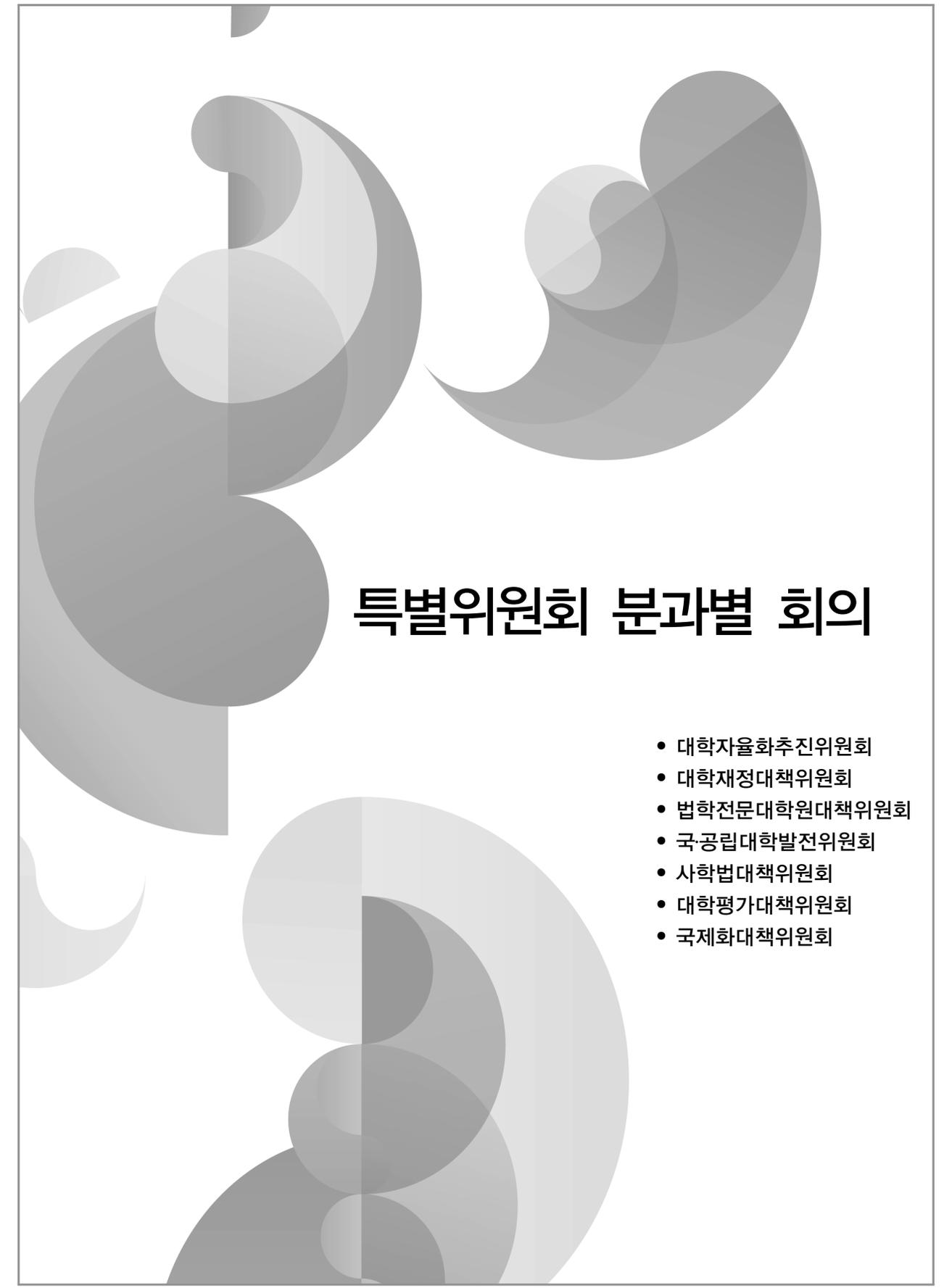
- (교양 교육) 한국사 교양 수업 강화
 -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한국사 수업 개설
 - 학생들이 교양 수업에서 한국사를 필수 이수하도록 규정



- (사회 공헌) 일반인 대상 한국사 강좌 제공 활성화
 - 대학 교수들이 자치단체 및 NGO 등에서 제공하는 인문학 강좌, 대학의 평생교육원 강좌 등을 통해 대중에게 쉽고 재미있는 한국사 강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지원 강화

III 교육협력위원회 논의

- 교육협력위원회에서 대학차원의 ‘역사 교육 강화’ 를 위한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를 도출함('11.6)



특별위원회 분과별 회의

-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 대학재정대책위원회
-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
- 국공립대학발전위원회
- 사학법대책위원회
- 대학평가대책위원회
- 국제화대책위원회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자문교수 김권섭 (전남대학교)

대입환경 변화에 따른 입학사정관제 발전방안

김권섭 | 전남대학교 교수

1. 대입환경 변화와 입학사정관제

1) 입학사정관제 도입 배경

21세기의 급변하는 사회는 기존의 사회적 인재상과는 다른 인재상을 원하고 있으며,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하고 창의적이며 자기주도적 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원하고 있다. 최근 입시변화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은 대학 입시에서 많은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수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편이나, 수능출제 영역 변화는 고교 교과목 이수의 변화를 가져오고, 또한 교과 대신에 대한 학생부 기재 방법의 변화는 기존 학생부 교과 평가방법에서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대입 환경의 변화는 입학사정관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입학사정관제의 발전 방안을 논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대입 환경 변화의 산물이자 대입 환경을 변화시키는 주체라는 점에서 그 도입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통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자율화의 일환으로 대입제도의 선진화와 공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었다. 입학사정관제는 성적 위주의 선발에서 벗어나 지원자의 다면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시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고교 교과 및

비교과 활동 중심의 평가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고교 교육의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다.

2004년 10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 발표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의 개선안」에서는 수능 점수의 등급화와 입학사정에서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 강화가 명시되었다. 2007년 국회 예결위에서 ‘입학사정관계 지원 사업’으로 20억원이 배정되면서 2008년부터 10개 시범 대학을 중심으로 입학사정관계가 도입되었다.

입학사정관계는 대학으로 하여금 입학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을 채용하여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수능 성적,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추천서 등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하여 대학 자체의 평가방법을 통해 대학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는데 초점이 두어졌다. 이처럼 입학사정관계는 고교의 교과 및 비교과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므로 자연스럽게 사교육 시장의 의존도가 낮아지며, 공교육이 활성화 된다. 가장 이상적인 학생선발 방법은 고교 교육과정을 충분히 반영한 평가이며, 입학사정관계는 이러한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학생선발 방법이란 것이 입학사정관계 추진 원동력이었다.

2) 운영 현황

2007년 20억원의 운영 예산으로 입학사정관계 지원사업이 실시되면서 건국대, 경희대, 이화여대, 중앙대, 서울대 등 10개 대학이 시범대학으로 지정되어 약 350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2008년부터 입학사정관계 지원대학은 40개로 확대되었고, 예산도 157억원으로 대폭확대 되었고, 선발인원도 4,555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 시점부터 입학사정관계에 대한 과열 현상이 발생하였고, 대학은 입학사정관계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지 않는 상태에서 선발인원의 확대를 서두르고 있었다.

2009년부터 입학사정관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원사업은 선도대학, 우수대학으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다. 지원예산도 236억원으로 확대되었고, 총 24,622명이 선발되었다. 2010년부터 입학사정관계는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총 60개 대학이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예산도 350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학생선발 규모는 전체 선발인원의 약 10%인 38,222명에 이르게 되면서 입학사정관계 학생선발이 본격화 되었다.

한편, 사회적으로 입학사정관계의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학들은 내실을

더 강조하게 되었고, 2011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의 규모와 학생선발 규모는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표 1. 입학사정관제 지원대학, 지원예산 및 선발학생 변화

| 년도 | 지원대학 | 지원예산 | 선발학생(모집인원 대비) |
|------|---------------------------|------|---------------|
| 2007 | 10개 | 20억 | 350명 |
| 2008 | 40개(신규 30) | 157억 | 4,555명(1.2%) |
| 2009 | 47개(선도 15, 계속 23, 신규 9) | 236억 | 24,622명(6.5%) |
| 2010 | 60개(선도 29, 우수 21, 특성화 10) | 350억 | 38,228명(10%) |
| 2011 | 60개(선도 30, 우수 20, 특성화 10) | 351억 | 41,250명(11%) |

2009년부터 입학사정관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훈련 프로그램’이 실시되어, 서울대, 전남대, 이화여대 등에서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2011년에는 학부모 및 교사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2개 대학이 포함되어 총 9개 대학에서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훈련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으며, 2009년 442명이 이수한 이래 매년 이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2. 입학사정관제의 성과와 문제점

1) 입학사정관 전형 운영

입학사정관제는 지원자의 개인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평가방법의 혁신이다. 입학사정관제는 대학별로 인재상에 맞는 학생선발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의 성적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난다는 자체가 대입제도의 선진화에 해당한다.

교과부와 대교협은 다수·다단계 평가, 서류검색시스템, 회피제척시스템 등을 통하여 입학사정관제가 사회적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였다. 입학사정관제의 운영 과정에서 대학별 경쟁이 치열하기도 하였으나, 대학의 실정에 맞는 내실 있는 운영이 강조되면서 입학사정관제의 무분별한 확대에 따른 사회적 우려는 감소하

였다. 대학에 적합한 전형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학사정관은 전형의 각 단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입학사정관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은 대학의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야기하면서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지원자격 완화와 전형방법의 다양화는 다양한 지역 출신의 지원자에게 입학 기회를 주게 되었고, 입학사정관제 평가방법이 가지는 장점이 부각되었다. 또한, 고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형 운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으로 무늬만 입학사정관제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성적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대학 내 모집단위에서 입학사정관제 입학생의 역량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며, 아직까지 입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분석과 추수지도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학 입장에서 입학사정관제 유지란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경제논리에 직면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2) 고교-대학 연계

입학사정관제의 실시는 고교의 교과 및 비교과 과정을 강조하게 되었고, 대학은 고교 대상 입학설명회 및 교사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고교-대학 연계가 강화되었다. 입학사정관제 체험학습이 대학마다 다양하게 추진되어 많은 지원자가 입학사정관 전형 지원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입학사정관제 실시는 고교 교육 과정이 강조되면서 공교육이 활성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고교-대학 연계는 대학 간 지나친 홍보 경쟁을 야기하였고, 대학은 평가정보에 대한 전면적 공개를 꺼리면서 고교-대학 연계는 한계를 갖게 되었다. 특히, 고교 교육과정이 대학 교육과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학생부 기재 정보의 신뢰성이 중요한데, 사회적으로 학생부 내용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고교에서는 수능 중심의 수업을 아직까지 강조하고 있어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3. 입학사정관제의 발전 방안

입학사정관제는 성적 위주의 정량적 평가에서 벗어나 지원자의 다면적 특성을 정성·정량적 방법에 의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학생선발의 선진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평가자료가 고교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이라는 점에서 사교육을 억제하고 고교 교육의 활성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 방안은 입학사정관제를 힘들게 하기 보다는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며, 대입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과 창의적사고, 그리고 사회적 소통능력이 탁월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입학사정관제는 기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공교육 중심의 평가를 통해 사교육 영향을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입학사정관제의 발전 방안을 고비용 문제의 해결, 입학사정관의 역량 강화, 입학사정관의 정규직화, 입학사정관 전형운영 방향, 고교에 대한 실질적 정보제공,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 관련 성과지표 개발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고비용 문제의 해결

입학사정관제는 선발 비율 대비 비용투자가 높은 전형으로 대학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추진하기 어렵다. 2011년 국고 지원 대학은 총 60개 대학으로 지원 총 금액은 325억원으로 대학별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하기 위해 평균 5.4억원이 소요된다.

고비용 입학사정관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정부의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으나, 입학사정관제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업비 보조가 필요하다. 대학 입장에서는 정부의 입학사정관제 지원금 보조가 중단된다면 고비용의 입학사정관제가 부담스럽게 되므로, 향후 지원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정부는 교육역량강화사업 등과 같은 사업과 연계하여 입학사정관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국립대학의 경우 전형료 수

입에서 입학 관련 비용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형료 수입의 사용이 가능하다면 입학사정관제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의 부담이 감소될 것이다.

셋째, 입학사정관제 고비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입학사정관 전형의 평가 기간을 늘림과 동시에, 입학사정관의 평가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평가 기간이 확대되고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이 제고되면 위촉 입학사정관의 활용 비율이 감소되고, 입학사정관제 운영 비용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입학사정관의 역량 강화

입학사정관은 전형개발과 운영, 교육과 훈련, 상담 및 홍보, 추수지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학마다 입학사정관제 실시 목적과 규모에 따라 입학사정관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으나, 핵심적인 사항은 입학사정관은 학생선발을 위한 전문가라는 점이다.

급변하는 사회와 이에 따른 대입환경의 변화를 입학사정관제에 접합시키기 위해서는 입학사정관 개인별 역량 강화가 최우선이다. 입학사정관 스스로 최고의 입학 전문가라는 자부심이 커질 때 입학사정관제의 질적 발전이 도모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입학사정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첫째, 대학은 입학사정관이 스스로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입학사정관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입학사정관제 전형 개발, 홍보, 추수지도 등에서 입학사정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전형개발에서 평가까지 모든 과정에서 입학사정관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면,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이 자연스럽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3) 입학사정관의 정규직화

입학사정관의 신분 안정화는 입학사정관제의 정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대학별로 정규직, 무기계약직, 연구직 등을 통해 입학사정관의 신분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립대학은 사립대학에 비하여 입학사정관의 신분 안정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입학사정관의 정규직화와 관련하여 대학과 정부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대학은 무기계약직 등을 통해 입학사정관의 신분 안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학이 입학사정관의 신분 안정화를 정부에만 의존하는 경우, 내실 있는 입학사정관제 운영이 힘들게 된다. 대학은 스스로 입학사정관제 정규직화를 시도하면서 정부로 하여금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입학사정관의 정규직과 관련된 제도적 정비를 시도하고 있으나, 제도의 정착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비록 제도적 정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정부의 지속적 노력이 있어야 대학은 정부를 신뢰하면서 입학사정관의 신분 안정화를 추진할 것이다.

4) 입학사정관 전형의 운영 방향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제 취지에 적합한 전형이 실시되어야 한다. 대학별 입학사정관의 규모와 전문성, 예산 규모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지만, 입학사정관 전형의 운영 방향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대학별 적정 규모의 입학사정관제 선발 비율을 정해야 한다. 전국 대학에서 2008학년도 입학사정관제 선발인원은 350명에 불과하였으나, 2010학년도에는 24,622명으로 증가하였고, 2011학년도에는 38,228명으로 증가하였다. 입학사정관제의 무분별한 확대라는 비난이 커지면서 2012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 선발인원은 41,250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는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선발인원은 전체 모집인원의 약 11%에 해당하며, 수시모집 전체의 17.4%에 해당한다. 입학사정관제 확대에서 정부의 정책은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의 실정에 맞도록 추진되어야 그 성과가 나타나므로 대학은 대학에 적합한 선발인원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선행된 후 선발인원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입학사정관제 선발인원

은 전체 모집인원의 10~15%가 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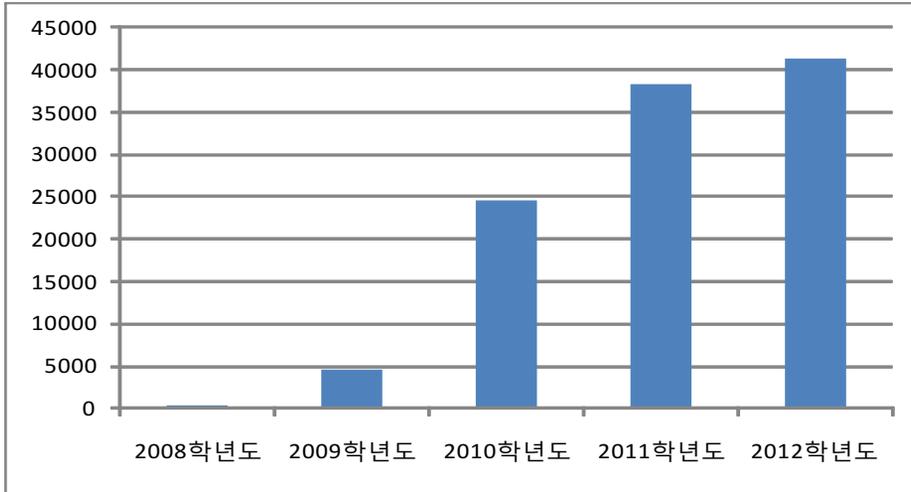


그림 1. 입학사정관 전형 연도별 선발인원의 변화

표 2. 2012학년도 모집시기별 모집인원

| 전체 모집인원 | 수시모집 | | 정시모집 |
|----------|------------|----------|----------|
| | 비 입학사정관 전형 | 입학사정관 전형 | |
| 382,773명 | 196,390명 | 41,250명 | 145,133명 |

둘째, 입학사정관 전형은 인재등용의 다변화라는 맥락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입학사정관계 취지에 적합한 전형이 실시되면, 지원자의 환경을 고려한 종합평가가 실시되므로 보다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학생에게 입학 기회가 제공되며, 성적과 함께 지원자의 잠재력을 고려한 학생선발이 가능해질 것이다. 대학 입학생의 구성이 다양할수록 면학분위기가 고조될 것이고, 이는 대학 취업률과 이미지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입학사정관계는 인재등용의 다변화란 맥락에서 전형이 개발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형개발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5) 고교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정보 제공과 사교육 영향 감소

입학사정관계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그동안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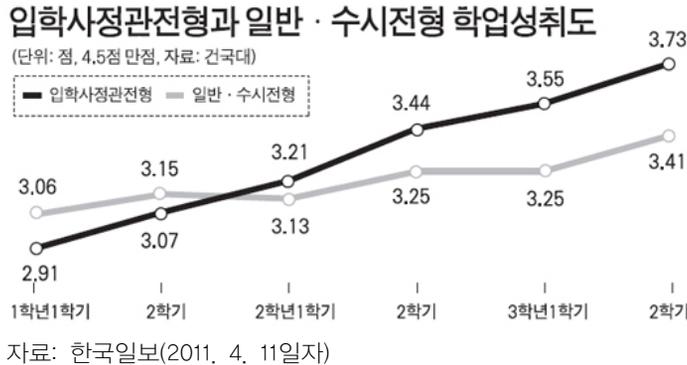
교육과정의 불일치에 따른 교육 효율성이 한국 교육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입학사정관제가 실시되면서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한 평가가 시도되고 있으나, 많은 대학에서 평가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근본적으로 고교-대학 연계가 고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하여 대학 교육과정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라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고교 교육과정을 토대로 평가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고교-대학 연계가 되기 위해 대학은 전형방법,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을 투명하게 공지하여 고교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고교는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고교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정보가 제공되면 고교 교과 및 비교과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사교육의 영향은 자연스럽게 감소될 것이다. 현재 대학은 사교육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원자격 및 평가요소에서 사교육 유발요소를 제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학이 세부 평가요소를 공개할 경우 사교육 시장 개입이 우려된다고 보고 있으나, 대학이 평가정보를 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고교에서 입학사정관제 준비는 소홀할 것이고, 이는 공교육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고교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정보 제공은 궁극적으로 사교육의 영향을 감소시키면서 공교육 활성화를 가져올 것을 판단된다.

6)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 관련 성과지표 개발

입학사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대학별 다양한 추수지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추수지도 차원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입학사정관 전형과 타 전형 간 비교를 통해 얼마나 적합한 학생이 선발되었는가를 평가하는 일이다. 건국대에서 실시한 입학사정관 전형과 타 전형의 학업성취도를 비교하면 입학사정관 전형의 입학생이 입학 당시 학업성취도가 다소 낮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타 전형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에 대한 성과분석은 학점(GPA)과 대학생활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 국한되고 있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잠재력을 제대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입학사정관제란 지원자의 다면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지원자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대학은 학업성취도보다는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은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자기주도성,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 사회 소통력과 봉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과지표가 개발되어 대학 내 구성원 사이에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입학사정관제는 대학 내에서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4. 결론

이상의 논의한 바와 같이 입학사정관제는 대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추진된 주체이자 변화의 대상이 되었으며,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장점이 많다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

향후 입학사정관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비용 문제의 해결, 입학사정관의 역량 강화, 입학사정관의 정규직화, 입학사정관 전형운영 방향, 고교에 대한 실질적 정보제공,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 관련 성과지표 개발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입학사정관제 실시 역사가 짧기 때문에 정착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

으로 판단되지만, 21세기에 맞는 인재선발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학사정관제가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방안을 토대로 보다 내실 있는 입학사정관제가 추진된다면, 우리나라의 입학사정관제의 미래는 상당히 밝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대학재정대책위원회

자문교수 나민주 (충북대학교)

자문교수 김병주 (영남대학교)

대학재정대책위원회

국립대 법인화에 따른 재정문제 해결방안

2011. 8. 9.

나민주
(자문교수, 충북대학교)

목 차

- **국립대 법인화와 재정부문 전망**
 - 국립대 법인화 추진 경과
 - 법인화 재정관련 주요 내용
 - 서울대/울산과기대 사례
- **국립대 재정 구조와 문제**
 - 국립대 수입/지출 구조
 - 재정 구조상 문제
- **대학재정의 국제적 동향**
 - 대학재정 정책 동향
 - 주요국 국립대 재정 구조
- **국립대 법인화에 따른 재정문제 해결방안**
 - 해결방향
 - 재정 확충 방안
 -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

국립대 법인화와 재정부문 전망

국립대 법인화 추진 경과

- **국립대 경쟁력 제고 및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법인화 추진**
 -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에서 국립대 특수법인화 제안, 1995년 5.31 교육개혁안 국립대 선택적 특수법인화 방안 발표, 1997년 국립대학특별회계제도 입법예고, 2002년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도 등
 - 이후 일본의 국립대법인화를 계기로 2005년부터 대학 자율적 선택에 따라 국립대 법인화 본격 추진(울산과기대 신설, 2009 개교, 서울대법인 출범 예정, 2012)
 - 현재 거점 국립대 단계적 법인화 추진, 국립대 선진화방안 병행 추진(성과급적 연봉제 시행, 학장직선제 폐지 등)
- **국립대 법인화 찬반 논란 지속**
 - 찬성론: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운영 효율성 제고
 - 반대론: 신분 불안, 외부 통제 강화(자치 훼손), 국가 재정지원 축소, 등록금 인상, 기초학문 붕괴 → 구조조정(인력, 재정 감소 우려)
 - 부처간 관심 차이: 교과부(대학경쟁력 강화), 행안부(정부조직 축소), 기재부(재정부담 축소)

국립대 법인화와 재정부문 전망

국립대 법인화 추진 배경 및 목적

- **국립대 법인화 추진 배경**
 - 대학경쟁력이 국가경쟁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은 매우 낮다는 현실 인식 바탕(IMD 30위권, SCI, Times 등 대학순위)
 - 국립대 자율성, 책무성 부족 문제의 핵심원인인 대학지배구조 개혁수단으로 법인화 추진(비효율적 인력구조, 법령제약으로 인한 경영 경직성 등)
 -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구조개혁 노력: 특히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각국의 국립대 법인화 정책 추진
- **국립대 법인화 추진 목적**
 - 대학운영에 자율성 부여하고 개방형 의사결정체제 도입
 - 대학 스스로 능동적으로 비전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 추진
 - 세계적인 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선택적 법인화 추진으로 대학마다 법인화 내용/정부재정지원 등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 있으나, 서울대, 울산과기대 사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

국립대 법인화와 재정부문 전망

국립대 법인화 재정관련 주요 내용: 관련법 비교

- **출연금 교부 및 사용 등**
 - 2007년 정부안과 울산과기대법률은 교과부장관이, 서울대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2007년 정부안은 국립대학법인 재무운영관리기관 별도로 설치 운영
-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지원 및 육성**
 - 2007년안: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매년 출연금 지원(일반적인 내용)
 - 울산과기대법: 국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 의무와 타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 지원과 형평성, 불이익 방지(구체적인 내용)
 - 서울대법: 법인설립 당시 서울대 예산과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증가율 고려, 매년 출연금 산정(법인 전환 이후 재정지원 축소 방지 명시),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 출연
- **기초학문 관련내용 등**
 - 2007년안: 국가가 기초학문 분야 지원 육성 대책 수립 시행의무 명기
 - 서울대법: 대학이 주체가 되어 기초학문 지원육성 계획을 수립 공표, 국가는 재정 지원

국립대 법인화와 재정부문 전망

국립대 법인화 재정관련 주요 내용: 관련법 비교

| 구분 | 2007년 법률(안) | 울산과기대 법률 | 서울대 법률(안) |
|---------------|---|---|---|
| 재산 · 회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 지원 및 육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매년 출연금 지원 • 국가는 국립대학법인의 기초학문 분야의 지원, 육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전전화를 위해 국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 • 다른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형평 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매년 지원금 출연 • 서울대법인 설립 당시 종전의 서울대 예산, 고등교육 예산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 매년 출연금 산정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에 관한 계획 수립·공표 및 시행 • 국가는 실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 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 출처: 이필남 외(2010)

국립대 법인화와 재정부문 전망

국립대 법인화에 따른 재정부문 변화 예상

- 국립대 구성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필남 외, 2010): 법인화 이후 재정운용에 대해 자율적 운영(3.26), 투명성(3.16)에 대해서는 긍정적 답변이 많으나, 국가로부터 재정의 안정적 확보(평균 2.32), 자립적인 재정보호(2.42)에 대해서는 부정적 답변이 많고, 등록금 인상(4.35)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게 나타남
- 서울대법의 경우, 정부의 국립대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의무화, 국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 확보 및 자산관리 가능, 기채나 장기차입을 통한 재정보호 수단 보유 가능, 잉여금 이월 및 수익사업 가능을 통해 안정적 재원 확보 가능성 높음
- 국립대 법인화는 안정적 재정보호와 자율적 재정운용에 의의가 있으나, 울산과기대의 경우 울산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되 감사나 결산보고를 하지 않는 반면 중앙정부에서는 예산편성시부터 결산까지 여전히 지속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산후 잉여금에 대해서도 통제가 있음

국립대 법인화와 재정부문 전망

국립대 법인화에 따른 재정부문 변화 예상

- 국립대법인화 이후 국고지원액 확대 가능성 있으나, 등록금 인상 최대한 억제 예상
- 비공무원화에 따른 교직원 연금 및 복리후생 추가부담, 각종 공과금 혜택, 세금 감면 등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추가 재정부담 소요
- 자산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 조직체 설치 및 운영, 발전기금 모금 및 운용 등을 위한 별도 비용 필요
- 법인화의 성패는 재정문제에 달려있음: 대학운영의 자율성 확대, 책무성 제고,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국립대법인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 소요 → 국가와 대학의 공동 노력 필요

국립대 재정 구조와 문제

국립대 재정 규모 및 주요지표

- 재정 규모
 - 2007년 결산기준 5조 5,943억원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8.4%(2조1천억원), 기성회계 30.5%(1조7천억원), 산학협력단회계 26.6%(1조5천억원), 발전기금회계 4.4%(2.5천억원)
- 재정운용관련 주요 지표

| 구분 | 국공립 평균 | 사립대 평균 | 미시건 주립대 | 조지아 공대 | 하버드대 |
|---------------|----------|---------|----------|----------|----------|
| 등록금 수입 비율 | 31.8% | 62.0% | 22.3% | 12.1% | 5.3% |
| 학생당 교육비 | 10,215천원 | 9,061천원 | 12,907달러 | 11,770달러 | 36,227달러 |
|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율 | 39.8% | 32.9% | 47.0% | 50.0% | 38.0% |

국립대 재정 구조와 문제

국립대 재정구조상 문제

- 재정규모의 영세성: 선진국과 비교시 총량규모 영세, 국가차원 중장기투자계획 부재, 최소 운영경비 위주지원, 학생 및 학부모 부담 가중
- 분산적 회계구조: 회계연도/운영방식 상이, 통합적 재정운용 곤란, 적용 법령 및 지침 상이, 회계업무 중복으로 인력/행정비용 가중
- 예산 운용의 경직성: 편성, 지출, 결산과정에서 국가재정 및 회계 관련법률의 일률적 적용, 대학특성 반영 곤란
- 예산운용의 탄력성 및 자율성 부족: 불용액 반납 및 이월의 한계, 수익사업 인센티브 부족, 단년도 지출위주 운용으로 중장기 계획 곤란
- 성과에 대한 책무성 부족: 적법성 위주의 회계 감사, 단식부기 적용으로 활동원가, 성과, 효율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곤란

대학 재정의 국제적 동향

대학 재정 정책 동향

- OECD 주요국의 경우, 국립대에 대해 국가 또는 주정부가 대학재정을 직접 지원하고 있고, 학생 부담은 최소화하고 있음
- 경제 불황으로 인한 긴축재정 속에서 대학관련예산 삭감 압력을 받아왔고, 시장원리적용이 확대되면서 대학재정의 다원화가 강조됨
- 전통적인 수입원인 정부지원, 등록금 이외에 지자체 및 기업과 협력, 기부금, 수익사업 등 대학차원의 재원 확보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
- 대학과 사회의 파트너십 형성이 강조되면서 대학, 연구기관, 지방정부, 기업 간 연계가 강조되고 있고, 고등교육의 보편화가 확대되면서 대학의 평생교육기능이 강화되고 있음
- 유럽 일부 국가들의 경우 학생부담을 늘리고 있으나, 동시에 정부재정지원도 늘리고 있음

대학 재정의 국제적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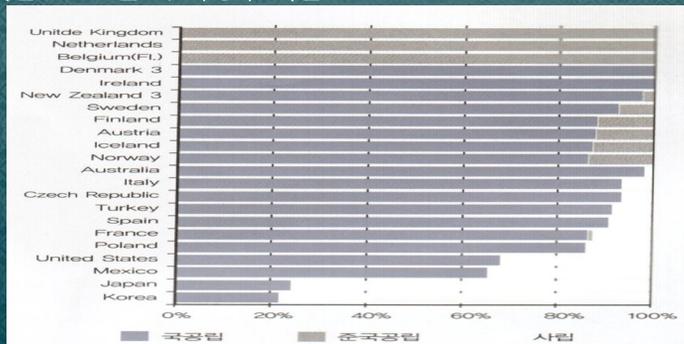
대학 재정 정책 동향

- 고등교육기관 재정에서 공공부담 비중: OECD평균은 73.1%이고, 일본 33.7%, 미국 34.7%, 핀란드 96.1%이며, 한국은 24.3%로 가장 낮음
- 대학재정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정부재정지원방식을 변화시키고 있고, 재정운영에서 자율성과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음
- 국립대에 대해서는 포물리에 의한 총액지원이 일반적이거나, 최근 성과주의도 부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에 기초한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국립대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대학 재정의 국제적 동향

대학 재정 정책 동향

- OECD 주요국의 경우, 대학생은 대부분 공립대학에 등록하거나 정부재정지원을 50%이상 받는 준공립대학에 등록하고 있음
- OECD 평균 기준으로 공립 재학생 비율 78.5%, 준공립 9.1%, 사립 13.9%, 고등교육에서 공립의 비중은 미국 71.9%, 일본 24.1%이고, 한국은 22.2%로 가장 낮음(2005년도, 학생수 기준)



대학 재정의 국제적 동향

주요국 국립대 재정 구조/법인화 사례

- 미국 4년제 공립대학교: 등록금 17.8%, 연방정부 12.4%, 주정부 33.7%, 지역정부 0.6%(정부지원 합계 46.7%), 기부금 및 R&D 5.9%, 기타 29.6%(2005년도, 병원수입 등 포함)
- 영국 고등교육기관: 재정기구 교부금 37.7%, 연구 교부금 및 계약 15.9% (정부 기관지원 53.6%), 수업료, 보조금 및 계약 25.4%, 기부금 및 이자 1.8%, 기타 19.2%(2006/07년도)
- 일본 국립대학법인: 운영비 교부금 54.2%, 수업료 및 입학검정료 16.3%, 잡수입 0.7%, 부속병원 수입 28.8%(2008년도)
- 일본의 국립대법인화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행재정 효율화가 목적이었고, 계약직 증가, 기본운영교부금 축소로 나타나고 있어서 모델로 삼기 어려움
- 싱가포르의 대학 자율성 확대와 경쟁력 제고에 초점: 학생수 기준 국고지원액 결정, 신규사업, 발전계획 등에 따라 지원액 확대

국립대 재정문제 해결방안

국립대의 존재의의와 정부의 역할

- 국립대는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 위한 핵심제도, 대학교육의 질적 발전 선도, 고등교육의 다양성과 기초학문·기술 보존 위한 안전장치, 지역발전의 원동력 이자 지역간 균형발전 구현 위한 핵심축 역할 담당
- 국가는 국립대를 통해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지역 간 고등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책임이 있음
- 국립대의 교육여건은 일부 지표 개선되었으나 지난 10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 혹은 악화
 - 학생당 장학금 6배로, 시간강사료는 2.3배로 증가
 - 학생당 실험실습비는 1.3배 증가
 - 학생당 도서구입비 절반 이하
 - 전임 교수당 조교수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율 등 절반 이하로 감소

국립대 재정문제 해결방안

국립대의 존재의의와 정부의 역할

- 국립대의 여건 악화는 국립대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가 중요한 원인으로서 국립대에 대한 국고 부담율은 50%대에서 담보 혹은 감소하는 경향
- OECD국가의 평균인 70%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국립대 학생등록금 의존도와 학생당 등록금은 지속적으로 상승
- 그간 국립대는 신입생들의 수학능력, 우수연구진의 국립대 교수직 선호도 등에서 수도권 사립대와 비교하여 볼 때, 그 경쟁력이 약화되어 왔음
- 국립대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재정대책과 국가전략이 절실한 시점임

국립대 재정문제 해결방안

국립대 재정문제 해결의 기본방향

- 국립대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규모 확대
- 국립대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방식 개선
- 국립대 차원의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 확대
- 국립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국립대 재정문제 해결방안

정부차원의 해결방안

- 국고지원의 획기적인 확충: 국립대 여건을 개선하고 대학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담 확대 필요 → 국립대 적정 재정지원규모 산정연구에 의하면, 국립대에 대한 정부재정지원규모는 현재보다 최소 30%이상 증액 필요(나민주 외, 2009)
-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국립대 기본운영경비 지원 보장, 수식형 지원방식의 확대 → 국립대 재정지원방식의 조속한 법제화, 국립대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의무화
-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 확보: 포괄적 재정지원,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대학의 책임(4년주기 재정지원), 성과주의 재정제도 적용
- 국립대 발전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투자계획 수립: 법인화 등과 관련한 국립대 발전계획 반영, 10개년 계획에 국립대 부문 반영
- 국립대법인화시 국유재산 무상 양여 및 처분권 확보, 세제상 우대 존속 및 재정운용의 특례 인정(법인세 감면, 국가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특례 인정), 학비 지원제도 강화(소득수준을 반영한 등록금 면제 및 장학금 확대)

국립대 재정문제 해결방안

대학 차원의 자구노력 강화

- 수입구조 개선: 자원 다양화
 - 중앙정부 지원금 이외, 지자체, 기업 등 자원 발굴: 지역 및 기업과 연계 강화
 - 비전과 명분이 있는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발전기금의 확보: 기부금 모금 활동의 활성화
 - 수익사업 확대: 사업 및 임대 수입, 산학협력 민간 R&D자금 유입, 민자유치 확대
 - 평생교육기능 강화: 노인, 주부, 취업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확대
- 지출구조 개선: 효율화 및 책무성 강화
 - 성과주의 예산 배분 확대: 투입 대비 산출 관계 속에서 성과 측정 및 성과 제고
 - 책임경영제 도입: 단과대학, 학과 및 학부단위, 단위기관별 자율성 및 책무성
- 재정운영체제: 조직 강화 및 전문화
 - 자산운용의 효율화 및 자산운용 역량 강화, 재정 기획 운영 평가 전문인력 확보
 - 전문 조직체 설치 및 운영: 기획 및 예산부서 강화 → 예산 및 회계 관리능력 제고
 - 통합 회계 운용, 원가시스템 구축,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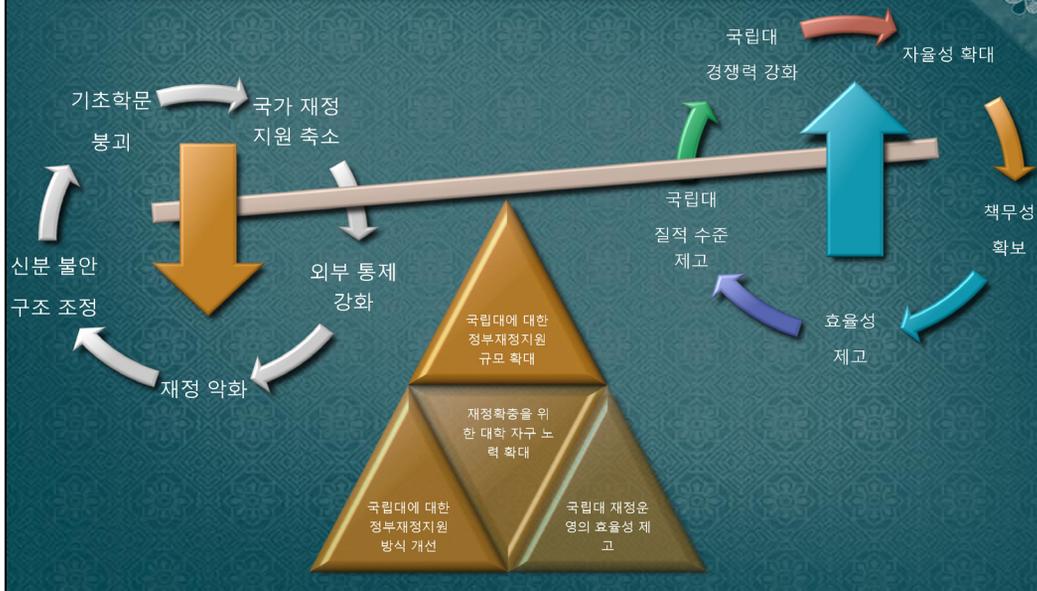
<참고>

서울대법인화 이후 재정회계제도 설계원칙

(서울대, 2009)

- 공공부문 인력감축, 국가재정책임 및 재정지출 감소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규제 완화, 자율성 확대, 정부-국립대간 동반자적 관계 형성 중요
- 법인화에 따른 재정지출 수요 전망: 인건비(물가상승률 등 재반영 100% 국가 책임), 경상비 및 시설확충비(매년 20%씩 증액, 총액 교부), 중장기계획 실현을 위한 국가 출연금
- 재정 확보 원칙: 국가책임성, 책임 분담(재원확보 중장기계획), 적절성(자율성 보장), 장기성(연차특), 다양성(자원 다양화)
- 재정 지출 원칙: 효과성(법인화 목표 달성), 효율성(우선순위 반영), 적시적소, 선택과 집중(상대우위분야 우선 투자)
- 정부와 서울대법인간 재정관계 재구축 원칙: 불이익배제 및 설립자부담주의(법인화 이전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재정책임 분담비율 법제화(국가책임비율 매년 20%씩 증액, 법인화 이후 5년 동안 국가지원규모 2배 수준으로 확대), 중장기계획에 의한 재정지원(4년 단위 계획 수립)

국립대 법인화에 따른 재정문제 해결방향



감사합니다

나민주 (충북대 교육학과 교수)
043-261-2651, 010-2403-2651
demosrah@cbu.ac.kr

사립대학 경상비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방안

김병주 | 영남대학교 교수

I. 서론

4년제대학과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전체의 재정규모는 2005년 이후 2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GDP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언뜻 보면 대단히 큰 금액이다. 하지만 200여개의 4년제 대학을 포함한 400여개의 각종 고등교육기관을 생각하면, 한 개 고등교육기관당 5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서 결코 큰 규모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중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국공립대학을 포함한 전체 대학재정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OECD 평균 78.1%(OECD, 2005)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OECD 국가들은 평균 21.9%만을 민간이 부담하는 반면, 우리 나라 대학재정의 경우 77.4%를 민간이 부담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구매력을 고려하여 수정한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는 6,047달러(PPP)로서 OECD 평균 10,655달러(PPP)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 비율 역시 33%로서 OECD 평균 43%에 미달한다(OECD, 2005).¹⁾ 결국 이처럼 부족한 대학재정과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은 고등교육 여건의 상대적 낙후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정을 인식한 정부는 최근 들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점차 늘리고 있다.

1) 반면 구매력을 고려하여 수정한 우리 나라의 학생 1인당 중등교육비는 PPP\$5,882로서 OECD 평균 PPP\$7,002의 84%에 육박하여 고등교육보다 훨씬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5년간 정부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증가율은 10%를 훨씬 초과하여 정부재정의 증가율을 앞서고 있다. 최근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부문의 절대 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그 비중은 12%대에서 답보상태에 있다.

아직은 초중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 및 설립자 부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 등에 따라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국공립대학에 비하여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규모는 매우 적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현황과 문제를 살펴보고, 사립대학 경상비 지원의 타당성과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대학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와 지원방식

1. 대학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

법적으로 보면, 국가는 대학에 대하여 적어도 세가지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송기창, 2000). 첫째는 국립대학 설립자로서의 역할이며, 둘째는 국·공·사립대학의 교육에 대한 지도·감독자로서의 역할이고, 셋째는 국·공·사립대학의 교육에 대한 지원·육성자로서의 역할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을 포함한 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고(교육기본법 11조 1항),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교육기본법 16조 1항, 고등교육법 4조 1항), 국립대학의 설립자로서 국가는 그동안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가는 대학을 포함한 학교를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고(교육기본법 17조), 대학은 교과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고등교육법 5조, 사립학교법 4조 3항), 국가는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해 왔으며,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모든 대학은 교과부의 지도·감독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육성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대학에 대한 지원·육성의 관건은 대학재정이라고 볼 때, 지원·육성자로서의 역할이란 대학교육 진흥을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의미한다(송기창, 2000). 교육기본법에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법제화되어 있으나, 대학재정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²⁾

교육기본법 2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상징적인 규정일 뿐, 어떠한 재원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관한 언급은 없다.

사립학교법 43조 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사립대학을 포함한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라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 불과하다.

고등교육법 7조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역시 임의규정에 불과하다.

고등교육법 8조에서는 “국가는 학술·학문연구의 진흥과 교육의 연구를 조장하기 위하여 실험실습비, 연구구성비, 또는 장학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여 대학의 실험실습비, 연구구성비, 장학금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새로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1조 제6항에서 ‘정부는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

2) 교육기본법 제7조(교육재정) 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초·중등교육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사항이다.

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외하고는,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다소 임의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대학재정 지원을 위한 재원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가 대학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형편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국가는 학술·학문연구의 진흥과 교육의 연구를 조장하기 위하여 실험실습비, 연구 조성비, 또는 장학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 역시 어느 정도까지 강구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음으로써 지원의 한계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재원이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여부와 지원규모는 어디까지나 국가의 재량사항에 속한다. 특히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재원은 지금까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한 사적 지원에 크게 의존해 왔는데, 이제는 학생납입금, 재단, 사회적 기부 등 어느 것에도 대학재정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국가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 국가의 대학 재정지원 방식

대학에 대하여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는 가장 큰 필요성은 대학교육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지식기반형 인적 자원이 국가발전의 핵심적 요인이고, 이러한 인적자원 개발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고등교육이기 때문이다. 고등교육에 의한 인적자원 투자는 개인적으로는 고용가능성 및 수입 증대, 사회적으로는 경제적 번영과 사회복지를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으로 작용한다.

이에 더하여 고등교육의 경제적 효과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대학은 교육의 수혜자에게는 개인의 자아실현, 신분상승, 고소득 보장 등 사회적·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주고, 개별 기업체에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충원해 준다. 국가사회적으로도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인 경제적 외부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각국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각국의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지원방식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Harrold(1992)는 총괄배분형(block grants), 관료형(bureaucratic approach), 시장형(market approach)으로 구분하였다. OECD는 학생지원형, 기관지원형으로 분류하였다. 학생지원형에는 보조금(grant)과 학자금대여금(loan)이 포함되며, 기관지원형에는 점증형(incremental funding), 수식형(formula funding), 계약형(contractual funding)이 포함된다.

Ziderman과 Albrecht(1995)는 직접지원형, 간접지원형으로 구분하였다. 직접지원형에는 협상형(negotiated funding), 투입기준형(input based funding), 산출기준형(output based funding)이, 간접지원형에는 지불보증제(voucher)이 포함된다. 윤정일(2004)은 재정지원의 대상과 규모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중심으로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의사결정방식을 협상형, 수식형, 시장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고등교육재정 지원방식을 재분류하면 재원종류(공적재원, 사적재원), 지원방법(총괄지원, 수식기준지원, 시장경쟁지원), 지원대상(학생, 대학)에 따라 고등교육재정 지원방식을 분류할 수 있다. 몇가지 중요한 재정지원방식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반상진 외, 2006).

포뮬러펀딩(formula funding system) 지원방식은 교원수나 학생수 등의 중요지표를 통한 수식에 의하여 대학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부실사학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대학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지닌다.

비용분담(cost-sharing) 지원방식은 정부와 수요자간 비용을 분담하여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정부와 수요자간의 사회적 합의가 사전에 논의되지 않고 도입된다면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적 수요는 증대되고 정부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노력보다는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만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성과중심(performance-based approach) 지원방식은 성과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성과중심 재정지원 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할 것인가 하는 점과, 성과중

심 재정지원이 그 의도하는 바대로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우처(voucher) 지원방식은 바우처(교육비지원권)를 수요자에게 제공하여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대학선택권, 소외계층의 고등교육의 균등기회 확보, 대학학령 인구 변화 등의 요인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III. 대학 재정지원의 문제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총량규모가 적다는 것이다. 2006년도 교과부의 고등교육예산은 약 3조5,697억원 규모로서 국내총생산 대비 약 0.44%인데, 이는 OECD 평균인 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고등교육예산 가운데 60%인 2조1,413억원은 국립대 인건비와 운영비, 대학생 학자금으로 지원되고, 나머지 대학정책관련 지원사업 예산은 1조4,284억원 정도이다.

고등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중 12.5%에 불과한데, 이는 일본의 24% 수준에 훨씬 못미치고 전체 학생대비 20%를 초과하는 고등교육 학생수 비중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의 대학교육비의 공공부담비율은 23%로서 OECD 국가 평균(76%)의 1/3도 안된다(OECD, 2006). 낮은 공공부담 비율은 곧 민간부담 교육비의 과중을 의미하는데, 이는 그 동안 한국의 고등교육이 수혜자 부담원칙에 크게 의존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체대학의 86%(학생수 기준 75%)를 차지하는 한국 사립대학의 재원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하며, 국공립대학에서조차 그 비중은 40%를 넘어선다. 이처럼 사부담 재정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당 공교육비는 낮다.

학생당 교육비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중등교육비는 OECD 평균의 약 92%에 이르는 반면, 고등교육비는 OECD 평균의 63%에 그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중등교육에 비해 고등교육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나, 한국의 경우 비슷하다. 1인당 GDP 대

비 학생당 고등교육비 비율 역시 37%로 OECD 평균인 43%에 미달한다(OECD, 2009). 한국의 학생당 교육비가 낮다는 것은 한국의 대학들이 선진국만큼의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증액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둘째,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 지원사업은 정부부처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여전히 중복투자의 비효율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과부, 지식경제부, 과학기술부 등이 부처와 상관없이 산·학협력과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성에 초점을 맞춘 대학 재정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각각의 사업마다 ‘지역인력양성’,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산학협력체제 구축’ 등 조금씩 다른 목적을 띠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산배분의 주체만 다를 뿐 중복사업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대부분의 사업이 상호상승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유사한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행정적 과부하는 물론 비효과적인 사업성고가 나타날 수 있어 정부부처간에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통합·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대학입장에서는 사업별 지원액의 과소로 인해 대형연구 및 교육과정 혁신 등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고, 유사한 성격의 사업계획서 반복 작성, 개별적 사업관리 등으로 인한 운영상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는 한편, 사업별로 각기 다른 분야를 응모하여 한정된 대학자원의 집중을 통한 대학특성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대학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성화 추진의 장애요인 중 하나로 ‘정부재정지원사업간의 연계부족으로 인한 투자효율성 저하’를 들고 있으며, 대학특성화 촉진을 위해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확대, 대학특성화에 대한 각 부처의 재정지원간 연계 강화를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

셋째,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대상간 즉, 기관지원, 교원지원, 학생지원, 국·사립간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006년도 고등교육예산중 학생지원은 4.2%에 불과하고, 사립대학지원 비중은 10% 미만에 불과하다. 효과적인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기관, 교원, 학생간의 이상적인 지원비율은 어떠한 수준인지, 고등교육의 3/4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금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는지, 확대된다면

어느 정도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해답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학생단위 지원의 확대는 국가재정의 한계와 대학재정의 규모를 감안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다. 대학에 대한 직접지원을 확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단위 지원만을 확대할 경우 학생들의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자칫 대학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현재와 같이 평가에 의해 차등적으로 사업별 지원을 체제가 과연 효율적이나 하는 문제이다. 평가에 의한 차등적 재정지원방식에 대해 대학에 대한 교과부의 간접적인 통제라는 인식이 강하고, 이에 대한 대학내 정책저항의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반상진 외, 2006).

다섯째, 수도권 대학과 지방소재 대학간의 학생수 비율을 고려할 때 지방소재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다소 낮다는 것이다. 2005년 기준으로 지방소재대학의 학생수는 62.5%인 반면, 정부의 지원액은 57.3%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균형회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식경제부를 제외하면 수도권 소재대학의 지원비율을 높아진다. 따라서 지방소재 대학에 대학 재정지원의 증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정부의 예산은 전반적으로 연구분야에 비하여 HRD분야의 예산이 과소한 한편, HRD내부에서도 산업인력 양성에 비하여 교육력 강화와 관련된 예산이 과소하여, 전체적으로 교육력 강화의 예산이 10%에도 미달한다.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못지 않게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그동안 상당수의 사업지원이 이공계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분야 대학재정지원 사업은 대부분 이공계 인력양성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사회는 이공계의 인력만으로는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어렵다.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그동안의 사업지원들은 대부분 대학 전체의 질 제고보다는 분야별 특성화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따라 특성화의 방향을 달리 하는 모순을 보이기도 하였다. 분야별 특성화도 중요하지만, 대학 전체의 특성화 혹은 대학전체의 질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으로 방향전환해야 할 것이다.

IV. 사립대학 경상비 지원의 타당성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여부와 지원규모는 어디까지나 국가의 재량사항에 속한다. 특히 사립대학을 단지 공학의 보조수단으로 인식한다면 국고보조는 필요 없다는 결론 도출도 가능하다. 그러나 사립대학이 국공립대학과 대등한 지위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 국민의 교육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보조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사학재단에 대한 지원이라기 보다는 사립대학 학생에 대한 지원이며, 국민의 교육권 보호 차원의 지원이라 할 수 있다.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도 똑같은 국민일진대 국가는 그들을 교육할 당연한 의무를 져야 하며, 그들은 국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들어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의 찬성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김병주, 1996).

첫째, 국·공·사립 대학이 다같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의 공기(公器)이고, 동등한 자격을 갖는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국가 사회에 배출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사립대학의 지위는 법적으로 국·공립대학과 하등 차이없는 공공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지원은 국·공립대학에 준해야 한다.

둘째, 사립대학도 우리 나라 교육의 목적과 교육이념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1조 및 제2조의 정신을 구현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학교의 설치자가 다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셋째, 사립대학은 공익성을 지니며,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바 매우 크다. 공익성과 기여도를 고려할 때 국공립대학에만 지원하는 것은 무리이다.

넷째, 우리 대학교육의 4/5 이상을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어 그 역할의 국가·사회적 중요성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 사립대학 교육의 질이 바로 우리 나라 대학교육의 질을 대변하는 것이며, 사립대학의 질 저하는 바로 대학교육의 질 저하를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과 국가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

다섯째, 정부는 대학교육의 공공성 보장을 위해서도 재정상태가 열악한 사립대학에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감독은 광범위한데, 이는 이들이 공공성을 갖는 기관이므로 인정되는 것이다. 정부의 공공성 보장을 위한 통제 감독은 재정적 지원을 전제로 할 때 설득력이 있다.

여섯째, 학교법인의 재무구조가 열악하여 재정적 기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보조의 확대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일곱째,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학교육을 포함한 교육 전반을 국가가 지원한다.

반면에 사립대학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대논리가 있을 수 있다(이만형, 1996).

첫째, 설립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볼 때 사립대학의 경비는 설립자인 학교법인이 부담함이 마땅하다. 국립대학은 애초에 국가의 필요에 의해 설립되었으므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

둘째,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볼 때, 대학교육의 수익자인 학생이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셋째, 사립대학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하게 되면, 결국 부실사학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부실사학에 대한 국고보조는 낭비적인 것이다.

넷째, 국가재원의 한계로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은 결국 국공립대학의 손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우리 나라 대학교육에서 사립대학의 구성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면 국가의 부담이 과중될 것이다.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요구는 첫째,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거나 사업별 지원이 늘어나도 고등교육의 전반적인 질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사업별 지원이 늘어날수록 대학의 자율성은 줄어드는 데 대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 셋째, 국·사립대간 기능적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립대학 우선지원의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 넷째,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이 80%를 상회하면서 고등교육의 성격이 엘리트 교육에서 보통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 등에 근거하고 있다.

V. 사립대학 경상비 지원을 위한 방안과 과제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등교육재정 규모의 확충이 필요하다.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의 근본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음을 인식할 때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국가적 차원에서 고등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에 대한 각종 재정적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함은 물론 학생수 비중에 맞는 수준의 국고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립대학 경상비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안정적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며, 확보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1. 경상비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의 확보

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도입

1)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도입의 필요성

이는 대학재원의 법적 독립성의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대학재정지원의 목적, 범위, 기준, 재원조달 방법 등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에 대한 책무성을 법제화하고, 재원규모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고등교육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 인상을 통해 재원을 확충하는 방식은 이미 한계에 봉착해 있다.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대부분 저수익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교법인의 전입금을 기대하기 어렵고,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서 사회로부터 기부금을 확충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정부가 일본과 같이 사립대학에 대하여도 경상비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국립대학에 대하여는 인건비, 운영비, 기본사업비를 지원하고, 사립대학에 대하여는 국립대학과 함께 경쟁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사립대학에 경상비를 지원할 여지가 없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할 경우,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을 동등한 지원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이 가능해진다(송기창, 김병주, 백정하, 2008).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찬성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즉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대학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현실에서 우리 대학들은 고등교육시장 개방, 대학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의 미흡 등 대·내외 대학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대학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발전을 위해서라도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다.

둘째,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대학구조개혁을 통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과 국가발전을 선도해 나갈 핵심전략분야의 고급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의 확보와 지원이 절실하다.

셋째, 현재 교육예산의 대부분이 초·중등교육에 투자되고, 고등교육에 투자되는 예산은 전체의 12%에 머무르고 있다. 이제는 인적자본의 확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만이 국가경쟁력 제고의 유일한 수단인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현재와 같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민간영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이제는 국가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안정화할 수 있는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천명호, 2005).

첫째, 정부재정과 교육재정이 부족하고 경직되어 있는 현재의 재정 여건 및 규모에서 추가적인 교부금의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제기이다. 즉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을 못박는 것은 현재의 재정여건상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향후 25년간 매년 2조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의무비율 확보는 지나치게 재정부담을 가중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 제도는 초·중등교육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금 개념 및 운영방식을 차용하고 있으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교부금 제도와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

이다.

셋째, 국민의 조세부담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대학의 책임성과 자율성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즉, 대학은 설립주체가 자기 책임하에 설립·운영하는 것이 원칙인 바 국민의 세금으로 대학운영비를 충당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넷째, 교부금은 국가와 지방간 또는 지방 상호간 재원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일환으로, 고등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교부금 제도의 도입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교부금 형태의 대학재원 확보방안은 재정배분에 있어서 특정세입과 세출을 연계하여 칸막이를 만드는 경우 재정배분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단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여섯째, 보통교육과는 달리 대학교육은 수혜자가 한정돼 있는 만큼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일곱째,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하여 확보된 추가예산을 일정 수식에 따라 균등배분할 경우 부실대학을 양산할 수 있다.

2) 제안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검토

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도입 주장의 태동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2000년의 일이다. 송기창은 ‘대학재정지원정책의 과제와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도입을 주장하였다(2000: 21).

“보다 안정적인 대학재정지원을 위하여 대학지원예산을 법정 교부금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별 재정지원을 가지고는 편중지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대학간 격차를 해소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건없는 지원도 불가능하다. 일단 교부금이 확보되면, 대학에 대하여도 표준교육비 개념을 도입하여 계열별 교육비차이도를 적용한 가중학생수를 기준으로 기준재정수요액

을 산출하고, 기준재정 수입액과의 차액의 일정률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립대는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의 차액의 100%를, 사립대는 50%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2000년 10월 13일 발족한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이하 ‘인자위’)가 마련한 2002년 11월 14일 대통령보고서에 반영되었다(대통령지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2002: 43-44).

“교육예산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예산으로 배정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고등교육정책 추진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자율성을 확보한다. 장기적으로는 대학자치를 실현하고 대학에 대한 재정배분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가칭)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즉, 대학재정의법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대학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선행조건이기 때문에 교부금을 통해 대학재정지원의 목적, 범위, 기준, 재원, 조달방법 등 국가의 고등교육재정지원에 대한 책무성을 법제화하고, 재정규모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고등교육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마련을 검토한다.”

2003년에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도입 방안이 보다 구체화되어 논의되었다(송기창, 2003: 376-377).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매년 확보하기 때문에 세수 증가에 따라 재원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학재정의 경우 예산과정에서 삭감되기 일췌여서 국가예산이 늘어도 대학 관련 사업비 총규모는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고, 새로운 사업을 시행한 후 1~2년이 지나면 다른 사업을 폐지하거나 규모를 축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중략)

따라서 고등교육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2002년

GDP 대비 0.48%인 고등교육재원의 규모를 적어도 GDP의 1% 수준(OECD 국가 평균 1.06%)까지 증액하되, 사업비로 확보할 경우 안정성이 떨어지므로 교부금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되, 교부금법에는 고등교육재원 확보방법, 교부방법,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 책임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은 내국세의 일정률로 확보하는 방안, 법인세에 인력활용세를 부가하는 방안, 국세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개편하고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액은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하여 보전하는 방안,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여 고등교육세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안정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같이 내국세의 일정률로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보고서(나성린 외, 2003)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유사한 고등교육재정지원법안이 제안되었고, 2004년에는 박찬석 의원 등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제안하기에 이른다. 이하에서는 나성린 등의 고등교육재정지원법안(2003)과 박찬석 의원 등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2004)의 내용과 문제점을 각각 검토하여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나) 나성린 등(2003)의 고등교육재정지원법(안) 검토

나성린 등(2003)은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보고서)에서 고등교육재원 확보방안의 하나로 고등교육재정지원금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다음은 연구보고서의 요약문의 일부다(나성린 외, 2003: 2-4).

“고등교육재정 투자 재원마련과 관련하여 고등교육재정투자 GDP대비 1% 확보라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로, 현재의 국세분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개편·확대하여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둘째로, 현재의 국세분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개편하나 현재의 계획대로 관련 세제들을 폐지하고 공약이행을 위해 부족한 재원들을 일반회계로부터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다. 셋째로, 고등교육재정지원금을 신설하여 고등교육재정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다.

제1안은 국세 교육세(4조원 규모)를 고등교육세로 개편 확보하고,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은 내국세 교부율 13%를 4.72% 상향조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7.72%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문제는 국세교육세의 재원 중 등유, 중유, 부탄에 대한 세금과 교통세가 한시세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목들을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목적세로서의 교통세가 2003년 말에 종료되더라도 교통세가 일반소비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기에 그것에 부가세로서의 고등교육세를 부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고등교육재정의 GDP 1%를 5년 만에 달성하기는 어렵다. 즉 2008년말에 가서 여전히 23,351억원이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이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해선 현행 국세교육세의 세원에 부가되는 부가세율을 각 40%씩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제2안은 제1안과 같이 국세분 교육세(4조원 규모)를 고등교육세로 개편 확보하고,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은 내국세 교부율 인상을 통해 보전하며, 제1안의 재원 규모에 국립대학 교원 등의 보수전액(1조 1천억원)을 추가하여 고등교육재정 총 규모를 5조원 수준으로 확보한다. 1안과의 차이점은 고등교육 GDP대비 1% 확보를 고등교육세의 확대 개편으로 모두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교육세 수준을 유지하되 그 차액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지원으로 확보한다. 제2안에 따른 고등교육재원 마련은 일반회계에서 고등교육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마련된 재원의 영속성과 안정성은 떨어지나, 국가 재정배분에 있어서 배분의 효율성을 보다 잘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재정배분에 있어서 특정세입과 세출을 연계하여 칸막이를 만드는 경우엔 효율적인 재정배분으로의 유연성이 저해되는 단점이 발생하고 또한 세입이 보장되어 있어 불필요한 세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재원조달에 따른 재원조달의 안정성 약화는 중장기적인 고등교육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해 예산부처와 교육부처간에 합의

를 함으로써 상당 부분 보완되어 질 수 있다.

제3안은 GDP 대비 1% 확보를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고등교육재정지원금 비율은 5년후 내국세의 6.7%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금법안이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동 법안에는 내국세의 55/1,000 해당액(4조 8천억원)에 국립대학 교원 등의 보수전액(1조 1천억원)을 추가하여 고등교육재정 총규모를 5조 9천억원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부록에 3가지 재원조달방안을 뒷받침하는 세 종류의 고등교육재정지원법안을 제안하고 있다.

다) 박찬석 의원 등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2004)

2004년 11월 24일, 박찬석 등 여야 41인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발의하였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의 필요성에서 살펴보았듯이, 박의원 등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안이유를 “고등교육도 보통교육과 같이 교부금의 교부율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법안은 나성린 등(2003)이 제안한 고등교육재정지원법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고등교육재정지원법안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비교할 때 이 법안의 법조문은 매우 단순화되어 있다. 박찬석 의원 등이 제안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크게 보면 다음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국·공립 및 사립의 고등교육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고등교육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고등교육기관의 구조조정 및 특성화를 유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교부금의 재원은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7.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셋째, 교부금은 대학평가결과, 대학의 특성화 및 구조조정, 지역사회와의 협력, 지역균형발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교부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도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및 연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안에는 교부금의 교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함으로써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 어떤 기준에 의해 교부금을 교부할 것인지 밝히고 있지 않다.

또한, 국립대학에 대학회계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 즉 국립대학의 장에게 예산편성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부금을 학교의 장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등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라) 2009년 11월 이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2009년 11월 이후 3건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이 발의되어 검토중에 있다. 2009년 11월 13일 김우남 의원의 12인, 2009년 11월 23일 임해규 의원의 23인, 2011년 6월 7일 권영길 의원의 9인이 발의한 법안이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부담률은 0.6%수준에 불과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매우 미흡하며, 이로 인해 대학들의 과도한 등록금 의존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고등교육에 관련된 문제 해결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고등교육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김우남 의원등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고등교육기관을 설립·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고등교육의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과 대학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1조).

나. 국내총생산(GDP)의 1.1%를 고등교육기관에 투자하기 위하여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을 2011년 6%, 2012년 6.5%, 2013년 7%, 2014년 7.5%, 2015년 8.4%로 단계적으로 인상함(안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2조).

다. 교육재정의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1.1%에 도달한 이후에도 경제성장률 등의 변

동에 맞추어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국세분 교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라. 국립고등교육기관의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미달액을 기준으로 교부하고, 공·사립고등교육기관의 보통교부금은 국립고등교육기관에 교부된 교부금을 제외한 금액의 2분의 1은 학생 수의 비율에 따라 교부하고, 나머지 2분의 1의 금액은 교원의 수의 비율에 따라 교부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 마. 고등교육기관의 특성화, 지방대학 및 지방거점대학의 육성, 교육여건 개선, 통·폐합 및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 등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고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있어서 지방대학 및 지방거점대학의 육성을 위한 특별교부금의 총액은 전체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에서 지방대학의 학생 수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하며 지방거점대학의 집중 육성을 위한 별도의 교부기준을 마련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임해규 의원등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고등교육기관을 설립·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고등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도록 함(안 제1조).
- 나. 교부금의 재원은 해당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3조제1항).
- 다. 국립고등교육기관의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미달액을 기준으로 교부함(안 제4조제1항).
- 라. 공·사립고등교육기관의 보통교부금은 교부금 재원의 확보 정도에 따라 전년도 국립고등교육기관 재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당해연도 재학생 수로 곱한 금액으로 교부함(안 제4조제2항).
- 마. ㄱ고등교육기관의 다양화·특성화·교육여건 개선, 통·폐합 및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 등에 사업교부금을 교부함(안 제4조제5항).

바. 고등교육기관이 대학평가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사립 대학 내부 구성원간 또는 임원 상호간의 분쟁·소송 진행 등으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부금의 교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권영길 의원등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법은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부금의 재원은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3조)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보통교부금 교부를 신청한 대학에 해당 연도 학생 1인당 등록금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에 등록 학생 수를 곱한 금액을 교부하고 보통교부금은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1인당 등록금 경감을 위한 사업, 고등교육기관의 교직원의 급여 등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고등교육기관의 전임교원 확보율 확대를 위한 사업, 고등교육기관의 시간강의료 및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교부하고 특별교부금은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고등교육여건 개선, 지역간 균형발전, 특성화 교육의 개선 및 육성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교부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고등교육재정의 교부와 관련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금액에 관한 사항,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금조정에 관한 사항,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 및 환수, 제외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교부금심의위원회를 둠(안 제7조).

마. 국가는 고등교육기관이 고등교육법 제11조제4항의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된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교원확보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등 교부금 교부를 제한하도

록 함(안 제8조).

- 바.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교부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교부금이 부당하게 교부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고등교육기관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교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교부금에서 감액하거나 환수하도록 함(안 제9조).
- 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의 배분 기준·배분내역·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
- 아.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교부금액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고등교육기관의 대상에 대하여 세 법률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

| 김우남의원안 | 임해규의원안 | 권영길의원안 |
|---|---|---|
|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1. 고등교육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1. 고등교육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학교·각종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제4항의 전공대학 - 「기능대학법」 제2조에 따른 기능대학 |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1. 고등교육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학교·각종학교) |

각 법안은 정의 규정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학교를 정하고 있다. 권영길의원안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고

등교육기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김우남의원안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까지만 포함하고 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제외시키고 있다. 임해규의원안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모든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및 「기능대학법」 제2조에 따른 기능대학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교부금의 재원 및 종류에 대하여 세 법률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

| 김우남의원안 | 임해규의원안 | 권영길의원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금의 재원 : 내국세 총액의 8.4% □ 교부금의 종류 및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교부금 : 교부금 총액의 40% - 특별교부금 : 교부금 총액의 6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금의 재원 : 내국세 총액의 8.0% □ 교부금의 종류 및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교부금 : 교부금 총액의 60% - 사업교부금 : 교부금 총액의 4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금의 재원 : 내국세 총액의 10.0% □ 교부금의 종류 및 배분을 구분하고 있으나 배분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고, - 특별교부금은 교부금 총액에서 보통교부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김우남의원안은 내국세의 8.4%, 임해규의원안은 내국세의 8.0%, 권영길의원안 내국세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각 법안의 비용추계 내역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추정할 때, 김우남의원안은 12조 5,388억원, 임해규의원안은 12조 4,084억원, 권영길의원안은 16조 2,000억원을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안에서 산정한 교부금액 추정액은 한국은행에서 추정한 GDP 규모(1,115조 3,311억원)의 1.1%(12조 2,686억원)를 상회하는 수준으로서 현행 예산지원 방식으로 추정한 2012년도 고등교육 예산추정액 8조 3,198억원 보다 4조원 이상의 추가재원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표 1〉 GDP 및 정부예산 대비 고등교육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 10년 | '11년 | '12년(추정) | '13년(추정) |
|---------------------|------------|------------|------------|------------|
| ○ GDP 규모 | 10,155,031 | 10,642,472 | 11,153,311 | 11,688,670 |
| ○ GDP 대비 1.1%(A) | 111,705 | 117,067 | 122,686 | 128,575 |
| ○ 전체 고등교육예산규모(B) | 76,389 | 79,657 | 83,198 | 89,861 |
| - 교과부 예산규모 | 59,080 | 62,348 | 65,889 | 72,552 |
| - 타부처 및 지자체 대학지원 규모 | 17,309 | 17,309 | 17,309 | 17,309 |
| ○ 추가 소요액(A-B) | 35,316 | 37,410 | 39,488 | 38,714 |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한편 교부금의 종류 및 배분비율을 보면 김우남의원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누고 보통교부금에 40%, 특별교부금에 60%를 배분하고 있으며, 임해규의원안은 보통교부금과 사업교부금으로 나누고 보통교부금에 60%, 사업교부금에 40%를 배분하고 있다. 권영길의원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배분비율을 구분하지 않고 특별교부금은 교부금 총액에서 보통교부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

| 김우남의원안 | 임해규의원안 | 권영길의원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교부금 교부대상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특별교부금 교부대상 -고등교육기관의 특성화 -지방대학 및 지방거점대학의 육성 -고등교육기관의 교육환경 개선 -고등교육기관의 연구능력 제고 -고등교육기관의 통폐합 및 구조조정 -고등교육기관의 해외교류 사업 -고등교육기관의 산학협력 사업 -그 밖에 고등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교부금 교부대상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사업교부금 교부대상 -고등교육기관의 다양화·특성화 -고등교육기관의 지역간 균형발전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여건 개선 -고등교육기관의 연구능력 제고 -고등교육기관의 통폐합 및 구조조정 -고등교육기관의 산학협력 사업 -그 밖에 고등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교부금 교부대상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학생 등록금 경감 -교직원 급여 등 처우개선 -전임교원 확보율 확대 -시간강사 처우개선 -각종 장학금 지원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 등 -고등교육 연구능력 제고 □ 특별교부금 교부대상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고등교육 여건 개선, 지역간 균형, 특성화 교육여건 및 육성 등 |

각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통교부금은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재정 수요액에서 각 대학의 자체수입에 해당하는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대학의 운영비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적인 규정과 별도로 권영길의원안은 등록금 경감, 전임교원 확보율 확대, 시간강사 처우개선, 장학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통교부금의 교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별교부금’은 일반적으로 재해가 발생하거나 사전에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한 경우에 지출하는 재원을 말하고 ‘사업교부금’은 대학교육역량 강화 등 국가의 정책사업을 지원하는 재원이라는 것이 용어적 의미라 할 수 있으므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분류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달리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에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 등 국가의 정책적 지원사업이 중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통교부금’과 ‘사업교부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세 법률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

| 김우남의원안 | 임해규의원안 | 권영길의원안 |
|--|--|---|
| <p>□ 보통교부금 지급방법</p> <p>-국립 :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 차감한 금액</p> <p>-공·사립 : 총 교부금에서 국립에 교부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은 학생 수의 비율로, 나머지 1/2은 교원 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p> | <p>□ 보통교부금 지급방법</p> <p>-국립 :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 차감한 금액</p> <p>-공·사립 : 총 교부금에서 국립에 교부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전년도 국립 재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을 재학생 수로 곱한 금액</p> | <p>□ 보통교부금 지급방법</p> <p>-(국·공·사립 구분없이):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차감한 금액</p> <p>· 학생 1인당 등록금의 1/2 이상의 금액에 재학생 수를 곱한 금액</p> |
| <p>□ 기준재정수요액</p> <p>-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의 합</p> <p>-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 대통령령으로 정함</p> <p>- 단위비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범위에서 물가변동을 고려하여 부령으로 정함.</p> <p>□ 기준재정수입액</p> <p>- 교부금을 제외한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산학협력단회계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합한 모든 수입예상액</p> <p>- 수입예상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p> | | |

보통교부금 배분기준을 보면 김우남의원안과 임해규의원안은 국립 고등교육기관과 공·사립 고등교육기관의 배분기준을 달리 하여 국립 고등교육기관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교부하고 공·사립 고등교육기관은 국립 고등교육기관에 교부하고 남은 금액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권영길의원안은 국·공·사립 구분 없이 모두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현재의 국립대학에 대한 예산지원 방식은 인건비, 기본경비, 시설비 및 교육기반 조성사업비 등 대학 운영에 필요한 수요액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기성회비·발전기금 등 대학의 수입은 고려되지 않고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립대학 간에 교육비예산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각 제정안과 같이 각 대학의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성회비 등을 포함시킨 기준재정수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교부금으로 지급할 경우 국립대학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잉여재원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지표가 되는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그리고 단위비용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같이 각각 대통령령과 부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통교부금의 배분방법을 보면 김우남의원안은 재원의 50%는 학생 수의 비율에 따라, 나머지 50%는 교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교부하도록 하고, 임해규의원안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학 재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당해연도 학생 수로 곱한 금액을 교부하도록 하도록 하며, 권영길의원안은 학생 1인당 등록금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에 학생 수를 곱한 금액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교부금의 교부 제외 또는 감액에 대하여 세 법률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

| 임해규의원안 | 권영길의원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금의 교부 제외 - 대학평가인증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 대학간 통·폐합 등으로 퇴출대상 대학으로 확정된 경우 - 최근 3년간 재학생 수가 매년 학교규칙에서 정한 학생정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 내부 구성원간 또는 법인 임원 상호간 분쟁·소송 진행 등으로 교부성과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금의 교부 제외 -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된 경우 - 교원확보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대학 운영의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좌동> - 학교경영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법인 부담금,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 교직원 또는 임원의 입학비리나 횡령·배임 등으로 징계 및 처벌을 받은 경우 |

임해규의원안과 권영길의원안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교부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평가기관의 평가인증이나 퇴출대상 대학의 선정을 위해서는 임의적 평가인증제를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 11조의2제2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평가·인증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위한 검토 사항

법률안은 모든 조문이 관련되어 있어서 어느 한 조문이 바뀐다면 다른 조문도 조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쳐 취사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전에 검토해야 할 대안들은 다음과 같다(송기창, 김병주, 백정하, 2008).

첫째, 고등교육재원을 내국세의 일정률만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고등교육세 교부금이나 국립대학 교원보수 교부금 등을 포함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세를 신설할 경우 내국세 교부율을 낮춤으로써 예산부처의 저항을 줄일 수 있고 추가적인 재원확충이 필요할 때 다른 재원에 영향을 주지 않고 확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보수교부금을 둘 경우 인건비에 의한 운영비와 사업비 잠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구조조정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국립대학 교수 확보율이 기준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보수교부금을 둔다하더라도 구조조정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둘째, 사립대학 경상비 보조의 범위와 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사립대학 경상비는 크게 인건비와 운영비와 연구비로 구성된다고 볼 때, 보조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연구비는 교수 개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으므로 기관단위 지원인 경상비 속에 연구비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고 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운영비의 범위를 표준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운영비 집행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경우 교부금제도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상비 지원의 범위를 인건비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단기적으로는 특성화 분야 전임교수 임용을 확대하여 비교 우위 확보를 통해 특성화 분야가 경쟁력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전임교수 인건비(실제인건비가 표준인건비보다 높을 경우 표준인건비, 낮을 경우 실제인건비)의 일정률(예컨대, 50%)을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³⁾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사립대학의 인건비, 운영비, 연구비 등을 포괄하는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공식을 마련하여 차액의 일정률을 지원하는 포물러 펀딩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기준재정수입액에 기성회비, 기부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포함할 것이냐가 쟁

3) 영국의 경우, 고등교육재정 지원을 담당하는 HEFCE는 일정한 배분공식에 의해 대학별 배분액을 결정하고, 지원금 총액이 결정되면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 보조금은 크게 교육보조금과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연구보조금으로 구분되며, 교육보조금은 학생 수, 과목 관련 요인, 학생 관련 요인, 기관 관련 요인을 고려한 표준재원과 전년도 교육보조금, 인플레이션과 같은 요소, 학생 수업료 수입 등을 고려한 추정재원의 차액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연구보조금은 연구의 양과 질적 평가를 바탕으로 기관별·학과별로 배분된다.

일본의 경우,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일반 경상비 지원 성격의 사립대학 경상비 보조와 사업별 지원 성격의 사립대학 교육연구 고도화 추진 특별보조로 구분된다. 사립대학 경상비 보조는 전임교원과 전임직원 인건비의 50%와 시간강사 인건비의 40%, 교직원 복리 후생비의 40%, 교육연구경상비와 후생지도비와 연구여비의 50%를 기준으로, 사립대학 교육연구 고도화 추진 특별보조는 대학원 고도화 추진 특별경비, 학술연구 추진 특별경비, 대학교육 고도화 추진 특별경비, 고도정보화 추진 특별경비로 구분하여 지원된다.

점이 될 수 있으며,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과 단위비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초·중등학교의 학교회계와 마찬가지로 기성회비는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국립대학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며, 기부금과 자체수입 확보노력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기부금과 자체수입을 자구 노력 성과로 간주하여 기준재정수입액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은 단순할수록 좋다고 본다. 학교급별 교육비차이도를 반영하여 산출한 가중학생수를 기준으로 교부금을 배분한 1990년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전공별 교육비 차이도에 따라 가중학생수를 산출한 후 이를 기준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하나의 기준으로 교부금을 배분하는 데 다른 학교간 격차를 시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측정항목을 단순화하되, 가중학생수라는 단일 측정항목보다는 관례대로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로 구분한 후, 인건비는 실소요액(표준 교원수와 표준 인건비보다 낮은 경우 실제 교원수와 실제 인건비를 적용하고, 높은 경우 표준 교원수와 표준 인건비를 적용)을 반영하고, 운영비는 전공별 교육비 차이도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학생수에 의해 배분하고,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보통교부금의 일정률(예컨대, 30%)로 확보하되, 실수요를 반영하여 배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부금의 종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보통교부금을 두는 것은 당연하나, 특별교부금이나 사업교부금을 둘 것인지, 둔다면 특별교부금과 사업교부금의 재원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사업교부금의 용도를 각각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등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교부금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사업교부금 등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보통교부금은 인건비(국·공·사립대학), 운영비(국립대학), 시설비(국립대학) 등을 지원하는 재원이며,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보통교부금의 일부(보수교부금을 제외한 보통교부금의 4% 정도)를 정부에 유보하는 재원이다. 사업교부금은 경상 사업비(국·공·사립대학)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다.

아울러, 증액교부금의 존치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국립 고등교육기관 시설의

신축·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보통교부금만으로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 교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부금 지원 요건과 교부액 감액 기준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원 요건 및 교부금 감액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평가인정, 대학 거버넌스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등록금 적정 인상, 일정 기준의 교수당 학생 수,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학생선발방식 등으로 국가의 고등교육정책 방향을 준수하도록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당해 고등교육기관이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근거한 관할청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개교후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고등교육기관의 수업년한에 해당하는 기간년수를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대학간 통·폐합 등으로 인해 퇴출대상 대학으로 확정된 경우, 당해 고등교육기관의 최근 3년간의 재학생수가 매년마다 학교규칙에서 규정한 학생정원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고등교육기관의 내부 구성원간 또는 법인임원 상호간에 분쟁 또는 소송진행 등으로 투자성과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교부 제외 또는 감액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사업교부금의 교부대상 사업을 어떻게 규정할는지에 관한 사항이다. 사업교부금 교부대상 사업으로는 고등교육기관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한 사업, 고등교육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고등교육기관의 연구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특성화를 위한 대학간 통·폐합 및 구조조정사업, 기타 고등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업 등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나치게 세분화 할 경우 국가가 고등교육재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괄성을 가진 사업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나. 고등교육세의 신설 혹은 전환

현행 교육세는 국세분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로 이원화되어 있다. 교육세가 이원화되었다는 것은 각각의 교육세가 별도의 용도에 쓰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행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는 세금 징수 주체만 다를 뿐, 목적은 똑같이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이다(교육세법 제1조, 지방세법 260조의2). 교육세는 1982년부터 25년 넘게 징수해 왔기 때문에 교육세가 지방교육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적은 충실히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새롭게 고등교육재정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국세 교육세는 고등교육세로 개편하여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고등교육세와 지방교육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세로 역할을 명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송기창, 2006).

2001년에 교육세가 국세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로 이원화된 이후 교육세 징수실적을 보면 2001년을 제외하고는 징수실적이 예산이 훨씬 못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4년 이후 예산액 자체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교육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몇 년 지나지 않아 교육세 존폐의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고등교육재정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세로 전환할 경우 지방교육재정 입장에서는 명분과 실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송기창, 2006).

국세 교육세의 규모는 연간 4조원 정도이나,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등 경기에 민감한 세원의 성격상 신장 가능성이 떨어진다. 세원이 신장되지 않을 경우 세율을 올리거나 세원을 교체하여 세수를 확대해야 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세율인상이나 세원교체 논리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개편할 경우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논리로 교육세율을 바꾸거나 세율을 인상할 여지가 생기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교부율을 교육세만큼 인상함으로써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송기창, 2006).

국세분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개편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그리고 지방정부가 초·중등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세분 교육세가 지원하던 초·중등교육재정의 부족분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등교육 재원확보를 위한 교부금 형태의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지만 지원목적, 대상, 확보방법 등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다. 대학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제도 신설

정치인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대학에 대한 기부금을 1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한다. 정치자금과 같이 10만원 세액공제를 신설할 경우 다음과 같이 약 1조원의 추가재정 확보가 가능하다.

329개(4년제 171개+전문대 158개)*35억(상한선) = 1조 1천5백억 상한

다만 세액공제는 곧 국가 세입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그에 대한 대책이 먼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경상비 지원의 범위와 방식: 평가인증과의 연계 및 포물러펀딩

현재 국립대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설립자 부담원칙이나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평가인정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사업은 단기적으로는 특성화 분야 전임교수 임용을 확대하여 비교 우위 확보를 통해 특성화 분야가 경쟁력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전임교수 인건비(실제인건비가 표준인건비보다 높을 경우 표준인건비, 낮을 경우 실제인건비)의 일정률을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일정률을 지원(formula funding)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사업은 기존 고등교육재정사업과 별도로 신설하여 추진한다. 경상비를 지원받는 사립대학은 평가인정을 받아야 하며, 대학 거버넌스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학에 지원조건(등록금 인상률, 교수당 학생 수, 학생선발방식 등)을 제시하여 국가의 고등교육정책 방향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특성화 분야 전임교수 임용을 확대하여 비교 우위 확보를 통해 특성화 분야가 경쟁력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전임교수 인건비(실제인건비가 표준인건

비보다 높을 경우 표준인건비, 낮을 경우 실제인건비)의 일정률을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일정률을 지원(formula funding)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일본의 경우, 사립대학 전임교원과 전임직원 인건비의 50%와 시간강사 인건비의 40%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직원 복리 후생비의 40%, 교육연구경상비와 후생지도비와 연구여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지원비는 대부분 대학평가에 의한 차등적 재정지원 방식에 의한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선택과 집중원칙과 맥을 같이 한다. 선택과 집중은 형평성과 효율성에서 효율성에 치우친 원칙이다. 효율성이 강조되는 사업에서는 선택과 집중 원칙의 적용이 타당하지만, 형평성이 중요한 사업에까지 선택과 집중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대학의 정원이 많고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존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원칙의 적용은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무차별하게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평등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으며, 고등교육기관간(전문대학과 4년제대학), 교육프로그램간(고등교육 프로그램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지원과 교육지원,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설립별간(국립, 공립, 사립), 지원대상간(기관지원, 프로그램지원, 교수지원, 학생지원), 지역간(수도권과 비수도권), 부처별간(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기타부처), 지원기준별(성과중심, 투입중심 등), 지원내역별간(경상비지원과 사업비지원)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어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지원비 등의 기관평가에 의한 차등적 재정지원은 지원효과에 대한 검증이 용이하지 않고, 평가과정에서도 대학의 규모나 명성 등이 평가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하여 빈익빈부익부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기관에 대한 지원방식을 다양하고, 학생, 교수,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투입대비 성과중심의 직접적인 지원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프로그램중심의 지원방식은 평가에 의한 차등적 재정지원이 갖는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 고등교육의 '사업비'보다는 고등교육 '재원'을 늘려야 한다. 사업비와 교

육비는 다르다. 사업비가 늘면 '사업'의 성과는 나타날지 몰라도 '교육'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지금 대학에 필요한 것은 '사업비'가 아니라, 자율적인 집행이 가능한 '교육재원'이다. 따라서 향후 대학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식(formula)에 의해 지원되는 방식이 타당하다.

포물러 펀딩(Formula funding)은 OECD 주요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학재정지원방식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방식은 정치적인 협상 혹은 과거 전례를 중시하는 협상형(negotiation)에서 출발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포물러 펀딩이 핵심적인 재정지원방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포물러 펀딩은, 1980년대 이후 시장형 재정지원방식이 확산되고 대학재원의 다양화가 강조되어 대학간 경쟁, 수익자 부담, 수익사업이 확대되는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대학에 대한 핵심적인 재정지원방식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나민주, 2008; 유현숙 외, 2005; Hauptman, 2006).

포물러 펀딩(formula funding)은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미리 결정된 배분공식에 의하여 지원하는 방식이다.⁴⁾ 미리 교육활동을 위한 표준적인 조건을 설정하고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비 소요액을 추정하고 그것을 공식화하여 재정을 배분한다는 의미에서 표준교육비 배분, 표준원가 배분, 필요충족배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반상진 외, 2005). 이러한 개념은 미국의 경우 초·중등교육은 물론 고등교육에서도 핵심적인 정부재정 지원방식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자리잡아 왔고, 최근에는 학교 단위책임경영(school-based management)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시·도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분할 때 활용되고 있다.

포물러 펀딩에는 등록학생중심형, 교직원중심형, 혼합형, 한계비용형, 성과중심형 등이 있으나, 교육과정에 따른 비용차이를 반영하여 가중치를 달리하는 등록학생중심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Darling et al., 1989; Zideman & Albrecht, 1995). 첫

4) 용어와 관련하여 formula funding을 '포물러 펀딩'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반상진 외, 2005; 윤정일, 2001), 미리 정해진 수식으로 표현된 배분공식을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수식형' 재정지원으로 번역되기도 한다(유현숙 외, 2005; 나민주, 2008), 이 장에서는 정부 문서의 표기방식을 존중하여 formula funding을 '포물러 펀딩'으로 통일하되, formula는 '배분 공식' 혹은 '수식'으로 표기한다.

째, 등록학생중심형(enrollment-based formula)은 교육과정 혹은 전공영역별 학생당 경비에 근거하여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이 학생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형태는 북미의 보편적인 재정지원방식으로서 등록학생수와 비용간 직선형 관계를 가정한다. 둘째, 교직원중심형(staff-based formula)은 정규 교직원수를 기준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셋째, 혼합형(composite formula)은 다양한 비용범주, 예를 들어 연구, 교육, 봉사를 구분하거나, 프로그램별, 지출영역별로 계수를 정하여 지원규모를 차별화하는 방법이다. 넷째, 한계비용형(marginal cost formula)은 고정비용 혹은 가변비용을 조합하여 한계비용을 계산함으로써 대학규모와 규모효과를 고려하는 방식이다. 다섯째, 성과유인형(performance incentives)은 평가인정을 받은 프로그램의 수, 졸업생의 표준화검사성적, 재학생·졸업생·고용주의 프로그램 서비스 평가, 프로그램에 대한 동료평가, 연구용역, 계약실적 등을 고려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포물러 펀딩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반상진 외, 2005). 첫째, 학교는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대학에서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셋째,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자원이 배분되므로 형평성이 보장된다. 넷째, 교육재정배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즉, 포물러 펀딩을 통해서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재정을 배분하는 입장에서나 사용하는 입장 모두 재정수요에 대한 예측을 상호 합의된 기준에 따라 할 수 있고, 예측된 수요에 따라 확보가능한 재정규모를 장기적으로 전망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예산 편성 및 운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유현숙 외, 2005).

포물러 펀딩의 적용 필요성과 장점은 다른 대학재정지원방식과의 비교를 통해서 분석될 수 있다(나민주, 2008). 대학재정지원방식의 여러 유형 가운데 협상형은 아직도 개발도상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효과적인 대학재정지원방식으로 보기는 어렵다. 협상과정을 통해 정부는 대학에 대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대학으로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나, 효율성에 대한 유인가가 적고, 각 대학은 미래의 예산 확보를 위하여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 대학이 노동시장이나 학생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어렵다. 시장요구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나, 협상형

에서는 재정지출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통제가 수반되어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시장형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나, 이에 따라 단기적 효과와 금전적 가치가 있는 활동이 중시되고, 대학의 경영관리적 측면에 지나치게 강조되며, 관리·홍보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학문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직업주의적 관심이 팽배해져서 진정한 의미의 학문발전이 어려워지고 대학이 학문연구기관이 아니라 직업훈련기관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지원이 감축되고 학생부담은 증가하여 교육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포물리 편당은 1970년대 이후 OECD국가에서 일반적인 대학재정지원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고(Hauptman, 2006; OECD, 1990), 1980년대 시장형이 확대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핵심적 대학재정지원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포물리 편당에 포함된 요소와 가중치들은 각 대학들이 재정지원을 받는 데 무엇이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정부지원이 등록학생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학의 재정수입은 그들이 유치한 학생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각 대학은 시장에서 주목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잠재적인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Clark, 1983). 또한 배분공식(formula)에서 소수민족, 저소득층, 장애자 등 특정학생에 가중치를 부여하면 정책목적에 부합된 신입생 집단을 늘릴 수 있다.

포물리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대부분 원칙적으로 개별대학은 배정받은 예산을 자율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즉, 포물리 편당에 의한 대학재정지원금은 총액(block)으로 배분되는데, 이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자율성에 따른 효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유현숙 외, 2005).

VI. 결 론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 인상을 통해 재원을 확충하는 방식은 이미 한계에 봉착해 있다. 최근에 붙어진 ‘반값 등록금’ 논의는 사립대학의 등록금을 통한 재원 확충이 거

의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도 대부분 저수익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교법인의 전입금을 기대하기 어렵고,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사회로부터 기부금을 확충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정부가 대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본과 같이 사립대학에 대하여도 경상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안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국립대학에 대하여는 인건비, 운영비, 기본사업비를 지원하고, 사립대학에 대하여는 국립대학과 함께 경쟁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사립대학에 경상비를 지원할 여지가 없다. 고등교육재정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할 경우,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을 동등한 지원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비롯한 추가적인 고등교육재정 확보 노력은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를 마련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고등교육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나라의 고등교육은 세계 12위권의 경제규모에 비해 높지 않은 고등교육 경쟁력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양적으로는 세계 최고수준이나 초·중등분야에 비해 대학의 국제경쟁력은 미흡하다는 지적은 이제 귀에 다가올 정도이다. 지원도 없이 비판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고등교육은 사회적 수익보다 사적 수익이 높은 영역이라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특히 사립대학 비중이 80%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가가 사립대학 재정에 무관심할 수만도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사립대학 비중이 비슷한 일본이 오래 전부터 사립대학에 대하여 경상비 지원을 해오고 있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검토보고권영길의원 대표 발의.**
- 김두식(1996).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 기본방향과 내용. **대학교육**, 84.
- 김병주(1996).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 보조는 확대되어야 한다. **대학교육**, 84.
- 김병주(1998). 사립대학 재정의 구조와 문제 분석. **고등교육연구**, 9(2).
- 김병주(2000). 사립대학 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9(2).
- 김병주(2008).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환기의 한국교육정책.** 서울: 학지사.
- 김병주·나민주·이 영(2007).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고등교육재정 확보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16(1).
- 김병주·나민주·유현숙·이영(2007). **지자체(공공) 및 민간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확대방안.** 재정경제부.
- 김병주·박정수·이 영·나민주(2009). **대학재정 지원을 위한 포물러 지표개발 및 재정 운용의 자율성 확대방안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 김병주·나민주·박동열·정성수·정종철·최정윤(2010). **대학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방향.** 교육과학기술부.
- 김병주·나민주·송경오·정성수(2011).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 3개년 성과분석 및 2011년도 사업설계
- 김영섭·김병주·이영·김진영·박호범·이정미(2010). **대학(원) 재정지원 개선·통합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김인제 외(2000). **대학의 재정지원에 대한 효과성 측정 연구: 자료포락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비지원 연구보고서.
- 김진영(2001). **대학재정 지원정책의 현황과 평가.** 한국조세연구원.
- 김화진(1999).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과 배분의 정책방향.** 대학교육, 87.
- 나민주(1998). **대학재정 지원정책 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나민주(2003). **영국의 대학재정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12(2).

- 나성린 외(2002).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비지원 연구보고서.
- 박성수(2002). 사립대학 재정운영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20(2).
- 반상진·김환식·오호영·채창균(2006). 고등교육 재정지원제도 개선방안.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
- 송기창(2000). 대학재정 지원정책의 과제와 개선방향. 교육재정경제연구, 9(2), 1-25.
- 송기창(200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운용성과와 개정방향. 교육재정경제연구, 15(2).
- 송기창(2007). 대학예산 왜 깎였나. 한국교육신문, 2007.10.16.
- 송기창(2009). 국가의 고등교육재원 배분 실태와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18(1).
- 송기창 외(2002). 국가의 대학교육 투자실태 분석.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비지원 연구보고서.
- 송기창, 김병주, 박정수, 정태화(2007). 고등교육재정사업 재구조화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송기창, 김병주, 백정하(2008). 대학재정 확충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을 중심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유현숙 외(2001). 정부부처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분석 및 효율화 방안. 2001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비 지원 연구보고서.
- 유현숙·최정윤·조영하·김민희·신재철·송선영(2006). 고등교육 개혁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평가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윤정일 외(2001). 대학지원 예산구조 및 지원방식 개선연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 연구과제
- 이만형(1996). 사립대학 재정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대학교육, 84.
- 이 영, 우천식(2001). 정부부처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분석 및 효율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이정미·유현숙·이선호·나민주·김민희(2009). 대학재정실태와 성과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이정미 외(2010).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장수명 외(2004). 고등교육 재정지원 성과분석 및 효율화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지원 연구보고서.
- 주철안(2003). 한국의 고등교육재정 지원정책에 관한 분석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12(1).
- 천병호(2005).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검토 보고. 국회 교육위원회.
- Hauptman, A. M.(2001). Reforming the ways in which states finance higher education, In Heller Donald E.(ed.). The states and public higher education policy: Affordability, access, and accountability. Baltimore, MA: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Johnstone, D. B.(2004). The economics and politics of cost sharing in higher education: Cmparative perspectives.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3, 403-410.
- Kezar, A. J., Chambers, T. C., & Burkhardt, J. C.(2005). Higher education for the public good: Emerging voices from a national movement.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Mayston, D. J.(1998). Devolved budgeting, formula funding and equity. Management Accounting Research, 9(1), 37-54.
- OECD(2005). Education at a Glance.
- OECD(2006). Education at a Glance.
- Williams, G.(1992). Changing Patterns of Finance in Higher Education. The Society for Research into Higher Education & Open University Press.
- Ziderman, A. & Albrecht, D.(1995). Financing Univers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New York: The Falmer Press.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

자문교수 함영주 (중앙대학교)

현행 변호사 시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함영주 | 중앙대학교 교수

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내용

1.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

-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면서 바로 학위를 받는다는 것을 조건(석사학위를 시험응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다는 조건¹⁾)으로 졸업예정자들에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²⁾

2.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 비공개

- 불합격자를 제외한 합격자에 대해서는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아니함³⁾

《문제점》

- 학교별(개별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률은 공개될 것으로 판단 됨

1) 예정대로 수료 후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불합격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함

2) 의사고시(1월)등 대부분의 시험과 같이 '졸업 예정자들에게도 시험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의견이 그대로 수용됨

3) 사법시험제도에서 성적경쟁이 대학의 교육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경험을 참조하여 시험을 위한 지나친 성적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

3. 변호사시험의 실시 시기

- 변호사시험을 1월 초순경에 실시하여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변호사시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짐

《문제점》

- 1) 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고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시행되는 연2회 시험실시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
 - 예를 들어 한 과목의 성적이 저조하다고 하여 반드시 1년을 더 기다려야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임
- 2) 과목과락의 경우 그 과목의 성적이 부족한 것인데 왜 다른 과목도 그 다음 회 시험에서 모두 응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박약함
 - 과목과락제가 없는 것은 소수의 합격자를 선발하기 위해 다수를 탈락시켜야 했던 사법시험제도의 잔재가 일부 남아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함
 - 변호사 자격부여가 변호사로서 충분한 자질이 있다는 증명이 아닌 점(오히려 최소한의 자질만 확인하는 것임)⁴⁾, 시험에 의한 평가와 의뢰인들의 변호사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점(변호사시험의 성적과 의뢰인의 만족도 간 상관관계가 성립될 지 의문임), 차세대 변호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을 시험으로 검증하기는 어렵다는 점, 해당 사건에 적합한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분쟁해결능력(dispute resolution skills)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시험과목의 성적이 골고루 좋은 경우보다 특정과목이나 특정분야의 전문성이 탁월한 인재가 성취도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4) 이 점은 사법시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변호사자격의 부여는 변호사로서 첫 출발을 허용하는 의미이지 훌륭한 변호사라는 보증이 아니다.

二. 현행 변호사 시험제도의 문제점

I. 총론적 논의: 논의의 틀 자체에 대한 검토

1. 법학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 법학교육은 이제 왜곡된 ‘색’차원의 논의에서 ‘빛’차원의 논의⁵⁾⁶⁾⁷⁾로 바뀌어야 함
 - 기존의 사법시험에서는 모든 문제에 정해진 정답이 있다는 인식 하에 획일적인 정답을 요구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 내지 못한 새로운 인식에 대해서는 부여해 줄 수 있는 점수가 없었음
 - 현실의 분쟁은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미리 정해진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매우 많음
 - 이제 미리 마련된 정답 외에는 모두 배척되어야 한다는 왜곡된 색 차원 인식에서, 다양한 견해와 방법이 모여 가장 밝고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빛 차원의 인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음

2. 법률시장 개방과 법학교육

-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되는 단계가 되면 외국 대학에서 법학교육을 받은 변호사도 한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을 것임
 - 그 단계에 이르면 국내 변호사 수의 억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임
 -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결론을 도출해 내는 변호사는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개성이 없는 단 한 명의 변호사와 다를 것이 없음
- 한국에서 양성된 변호사가 한국 내에서만 활동한다는 전제부터 재고(再考)하

5) 색의 삼원색은 자홍(Magenta; 빨강), 노랑(Yellow), 청록(Cyan; 파랑)이고 이들을 섞으면 검은색 계열에 가까워진다. 빛의 삼원색은 빨강, 파랑, 녹색이고 이들을 섞으면 흰색계열에 가까워진다.

6) 색의 선명성에 너무 집착을 하면 다른 색은 가까이 하거나 섞어서는 안 되는 배척의 대상으로 왜곡된 인식을 할 수 있다. 이념정당의 극단적 논쟁을 ‘색깔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7) 빛은 다른 빛들이 모일수록 밝은 색이 된다.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다.

여야 합

- 인적자원으로 경쟁하여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의 여건을 고려할 때 방어적인 법률인재육성은 우리의 생존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임
-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배출되는 변호사들로 인하여 국내 변호사시장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인식은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1,000명을 넘어선 이후 설득력을 잃었다고 지적하는 젊은 변호사들의 의견이 많음(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받은 변호사들이 배출되기도 전인 현 단계에 국내 법률시장은 이미 변호사 자격만으로 생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하에 있다고 하는 젊은 변호사들이 많음. 변호사 수가 증가한다고 하여 더 어려워질 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함)
-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배출되는 변호사는 기존의 변호사들에게서는 찾아내지 못했던 능력을 찾아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
 - 이 점에서 기존 변호사가 받은 것과 동일한 실무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변호사회의 주장은 변호사 수를 억제하여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과 모순됨
 - 기존의 변호사 시장이 포화상태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하는 새로운 변호사 교육은 기존의 교육방식과 달라야 하고 새로운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 것임

3.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목표의 구체화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목표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춘 발전가능성에 중점을 둔 변호사의 양성’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기본목표: 변호사가 되기에 필요한 기본능력배양
 - 중점목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변호사 양성⁸⁾⁹⁾¹⁰⁾

8) 이는 마치 박사학위의 수여가 공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인식과 유사하다. 또한 박사학위 심사에서 호평을 받는 것과 장기적으로 훌륭한 학자가 되는 것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작단계에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시스템은 장래의 발전가능성을 너무 일찍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9) 실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중에는 학교나 교수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방학기간에 스스로 외국 로펌이나 국제기구에서 인턴자리를 섭외하여 경험을 쌓고 돌아오는 학생들도 나타나고 있다. 국제화시대를 대비하는 데 눈여겨 볼 점이 아닌가 한다.

10) 기존 사법시험체제 하에서 법률실력은 연수원을 정점으로 변호사를 오래 할수록 점점 떨어진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보다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서는 ‘모든 것을 얻고자 하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All covet, all lose)’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 토대 위에서 논의하여야 함

II. 각론적 논의

1. 학교별(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및 순위 공개 불가

- 학교별(개별 법학전문대학원별) 지원자와 합격자 및 합격률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아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임
- 개인 성적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학교별 합격률을 공개하고 순위경쟁을 시킬 경우 과거 사법시험에서와 같이 각 학교들의 학사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위험이 있음
 - 기존 사법시험제도에서는 학교 간 순위경쟁으로 대학의 법학교육은 황폐화되었고 사법시험반 운영비용이나 학원 프로그램구입비용의 지출로 경쟁대학들은 출혈적인 무한경쟁을 벌여 왔음
- 불합격자가 될 수 있는 소수의 학생을 줄이기 위한 학교의 노력은 외견상 학업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법학전문대학원별로 신입생 선발기준과 특성화의 방향이 다른 점을 고려하면 몇 과목의 점수로 순위를 매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변호사시험 응시자 평균점에 의한 학교별 순위는 우수한 학생의 성적보다는 불합격 선에 있는 저조한 성적의 학생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¹¹⁾ 이 경우 이들 시험성적의 평균에 기초한 학교순위는 학교 교육의 질이 아니라 학생 선발의 질 또는 성적이 저조한 학생의 다과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음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로 교육방식을 전환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적이 나쁜 학생의 수를 줄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각자의 장점을 살려 특정 분야

심각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도록 시스템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11) 교수에 대한 강의평가에서도 간혹 나타나는 문제이다. 소수의 몇 학생들이 작심하고 최저점수를 주게 되면 교수의 강의 평가점수는 급락을 하게 된다. 고득점이 쉽지 않은 시험이나 대부분이 고득점을 하는 시험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에서 아주 우수한 변호사를 양성(이른바 秀越性 교육)하고자 하는 보다 적극적인 것에 있음. 그런데 평균성적을 기준으로 하고 낮은 학생들이 순위를 좌우하는 위 평가방식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과도 배치됨

- 학교에 따라서는 성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의 시험응시자체를 제한하거나 평균성적을 올리려는 각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음
- 더 나아가 학교별 변호사시험 평균점의 순위를 법관, 검사 등의 임용에 활용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의사국가고시 합격률 순위를 곧 의대생들의 자질순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것임. 학교 간 평균점을 올리기 위한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는 부작용이 우려 됨
- 법관 또는 검사의 임용은 해당 기관들이 자신만의 방법을 개발하도록 자율권을 주어 해결할 일이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통하여 결정되도록 할 것은 아님
- 이 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은 사법연수원과 근본적으로 다름: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로 활동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어야 하며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법학전문대학원이 모든 것을 해 주기를 요구하는 견해는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시스템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는 전략적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변호사 중심 교육의 결과를 법관이나 검사의 선발에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검토를 잘 할 것으로 보임

2. 학교별(법학전문대학원별) 교육의 질에 대한 평가

- 대학별 변호사교육의 질에 대한 평가는 단기적인 시험성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의 평판이나 평가에 따라야 하며, 합격자를 선별하는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하는 의뢰인(수요자, 소비자)의 평가에 따르도록 하여야 함

- 이 점에서 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의 수를 통제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의뢰인의 변호사 만족도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선행하여야 할 것임
- 현행 변호사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축적한 역량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임. 이는 단기간에 치러진 시험의 결과를 실제 변호사로 수십 년을 활동하면서 축적한 역량보다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또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정보의 불균형이 매우 심함. 특정인의 소개가 아닌 한 현재 의뢰인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변호사의 출신학교, 출신 지역, 전관여부 정도가 전부라도 해도 과언이 아님.
-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개발이 시급함(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상품구매 후기(後記)와 같은 의뢰인들의 변호사에 대한 평가를 남기는 방식 등을 활용)

3.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문제점

○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7조】

선택과목 :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해설 자료에 의하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유도 등을 위하여”¹²⁾ 전문적 법률분야에 대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게 한다는 취지임
- 위 과목들을 선택과목으로 선정한 이유 및 그 외의 과목을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기준이 없음. 일례로 일본에서는 많이 선택하는 과목인 도산법은 제외되어 있음¹³⁾

12) 법무부,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해설자료』, (2008.10), 30면

13) 2009년 일본 신사법시험 선택과목별 응시자 수(비율)
노동법 3077인(31.6%)

- 결국 위 전문적 법률과목은 각 대학별 특성화 과목과는 별개 분류인 것으로 보이며, 특성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중요 법률분야라는 정도의 의미로 판단됨
- 결국 이는 기본법과목 외의 중요 과목이라는 의미로 판단 됨
- 왜냐하면 “특성화는 ‘기본적 법률과목을 일률적으로 가르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학교별 특성에 맞추어 ‘전문적인 분야를 다양하게 가르치도록’ 한 것**”임
- 특성화 부문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객관식 시험으로 평가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그 과목을 국가시험으로 평가(시험에 의한 평가는 객관화와 일반화가 전제되는 개념임)하겠다는 것은 특성화의 본질과 배치됨¹⁴⁾
- 변호사시험에 속하는 이들 선택과목은 법학전문대학원 교과운영에서도 영향을 미쳐 시험과목 외의 과목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음
- 이 때문에 선택과목에 속하지 않은 과목, 그 중에서도 특히 학교별 특성화 과목이 상대적으로 외면을 받고 있음

《검토사항》

- 변호사시험법 제2조는 변호사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 하도록 하고 있음
- 변호사시험법 제9조 제2항(전문적 법률분야 선택과목에 관한 규정)에 단서를 두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이 전문적 법률분야의 과목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법률과목과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와 같이 일정 전문법률과목의 이수를 변호사시험 응시요건으로 함이 가장 바람직함. 즉 선택과목과 관련된 과목을 일정학점 이상(예 : 15학

도산법 2339인(24.0%)
지적재산법 1471인(15.1%)
경제법 929인(9.6%)
국제관계법(私法系) 710인(7.3%)
환경법 578인(5.9%)
조세법 476인(4.9%)
국제관계법(公法系) 154인(1.6%)

14) 동일한 취지의 견해로 이동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의 변호사시험제도의 방향”, 『「변호사시험제도」에 관한 공청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9. 3. 20), 55면이 있다.

점) 수강하고, 수강한 과목의 평점이 일정수준 이상(예 : B^o)이 될 것을 변호사 시험의 응시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족할 것임

- 각 로스쿨의 특성화에 대한 평가는 대한변협에서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 특성화에 관한 항목이 있으니 그에 따르도록 하면 될 것임

4. 두 차례 행해진 매우 다른 방식의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은 시험유형 제시기능을 못하고 있음

《문제점》

- 두 차례 다른 유형의 변호사 시험이 치러졌고 두 유형 모두 한계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으나 최종 어느 유형을 기본으로 하는지 아니면 이들 유형의 문제점을 극복한 제3의 유형으로 출제될 것인지에 대한 기준제시가 없음

《검토사항》

- 시험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출제유형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확보임
 - 다수가 응시하고 점수로 당락을 결정하는 시험에서 나쁜 기준보다도 더 나쁜 것은 기준이 없거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임
 - 불과 몇 달 후 치러질 변호사 시험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 시점까지 문제의 유형에 대해서조차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임¹⁵⁾
- 문제 풀(pool)의 공개 및 꼭 알아야 할 유형의 문제를 공개¹⁶⁾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알아야 할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임
 - 기존 사법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점은 시험자체의 난이도가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나올지를 모르거나 의외의 시험문제가 나오는 것임

15) 제1차, 제2차의 모의변호사시험에 이어 2011. 7. 12. ~ 7. 1.에 치러진 법학전문대학원이 주관한 모의 변호사시험이 치러져 사실상 3가지 유형이 제시되었다. 특히 이 중 제2차 변호사모의시험의 경우에는 논점을 순서대로 연결하여 사례를 풀어가도록 만든 문제로 연결되는 논점 중에서 정답이 아닌 방향으로 문제를 풀면 다음 논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을 하기 어려워 매우 낮은 점수가 나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출제방식도 유지하는 것인지에 대한 방향제시가 없다.

16) 문제 은행 자체를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 기존 사법시험처럼 중요한 문제라고 해도 이미 출제된 문제나 대학이나 학원의 시험에서 다루어진 문제를 피하는 형태의 출제는 지양되어야 함.
- 숨바꼭질식 또는 기습공격식의 문제출제를 지양(止揚)
- 변호사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¹⁷⁾은 빈발하는 유형의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처리절차 및 방안을 잘 알고 있을 것 및 새로운 유형의 사건에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임. 기본적인 변호사의 자질을 평가하는 변호사 필기시험에서 실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전자에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것임
- 운전면허 필기시험 유형의 출제¹⁸⁾로 변호사에게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문제 풀(pool)을 제시하고 그것을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을 극대화시키면서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파행도 피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임
- 객관식 문제의 경우 출제의도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아는 것 또는 알아야 할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 상대방을 속여 오답을 유도하는 문제출제는 피해야 함
 - 이는 교육방식에는 물론이고 향후 변호사 업무수행자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 함정을 만들어 틀리게 하려는 유형의 객관식 문제는 문제를 푸는 사람의 인성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고 모든 문제를 음모론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향을 강화시킬 우려도 있음
 - 함정유형의 문제를 반복하여 풀게 하고서 성실과 정직을 강조하는 윤리교육의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임
 - 객관식 문제 하나에 한 가지 논점이 아닌 수개의 내용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객관식 출제의 원칙에도 어긋남. 탈락을 유도하는 출제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임(소위 변별력이 필요한 문제). 한 문제 내의 다섯 개 지문에 지문마다 다른 주제를 다루는 것은 한 문제가 아니라 다섯 문제를 한 문제라

17) 그 외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질로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어려운 문제를 많이 아는 것 못지않게 누구나 아는 것을 정직하게 실천하는 것도 포함된다.

18)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를 풀(pool)의 형태로 제공하고 그 안에서 모두 출제가 되는 형식이다.

고 하는 것임

-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한 문제에 담으려고 설문과 지문을 길게 만들면 과거 사법시험에서 그랬던 것처럼 암기위주의 장문속독시험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시험 출제시 객관식 출제방식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도 필요함

5. 시험횟수

《현행 문제점》

- 「변호사시험법」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제4조)에도 연1회로 시험횟수를 제한하여 운영함으로써 로스쿨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게 됨

《검토사항》

- 하계 학기 졸업자를 배려하고, 법학사출신자나 외국로스쿨에서의 학점취득자에게 15학점의 범위 내 학점인정을 하는 규정(「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3항,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며, 외국기관 등에서의 장기연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1년에 2회 변호사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연 2회 실시의 입장을 취한 바 있으며¹⁹⁾, 미국에서는 Delaware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연 2회 2월과 7월의 마지막 주에 변호사시험을 실시²⁰⁾하는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19) 김선수,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한 종합토론문”, 『미국과 일본의 변호사시험 제도와 한국의 과제』,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심포지움, 2008. 11. 17), 158면

20) 법무부, 『각국의 법조인 선발 및 시험문제 유형에 관한 연구』, (2009. 5), 41면 이하 참조.

三. 개선방안 제안

I. 총론적 제안

- 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변호사 자격 부여 후 보다 장기적이고 엄격한 사후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단힌 방식의 문지기형 변호사시험이 아니라 발전가능성에 중점을 둔 열린 방식의 양치기형 인재육성을 도모하는 시험으로 운영하여야 함

II. 각론적 제안

- 학교별(개별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률에 대해서도 비공개 하여야 함.
- 변호사 시험의 최종 유형을 조속히 확정·발표하여 수험생들의 혼선과 시행착오를 예방하여야 함
- 변호사시험은 빈발하는 사건유형에 맞추어 출제 가능한 문제의 풀(pool)을 만들어 공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출제할 필요가 있음(숨바꼭질식 또는 기습공격식 출제의 지양)
- 객관식 문제출제의 경우 아는 것 또는 알아야 할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상대방을 속여 오답을 유도하는 문제유형의 출제는 피해야 함
-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시험제는 폐지하여야 함
- 변호사시험은 1년에 2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공립대학발전위원회

자문교수 신희권 (충남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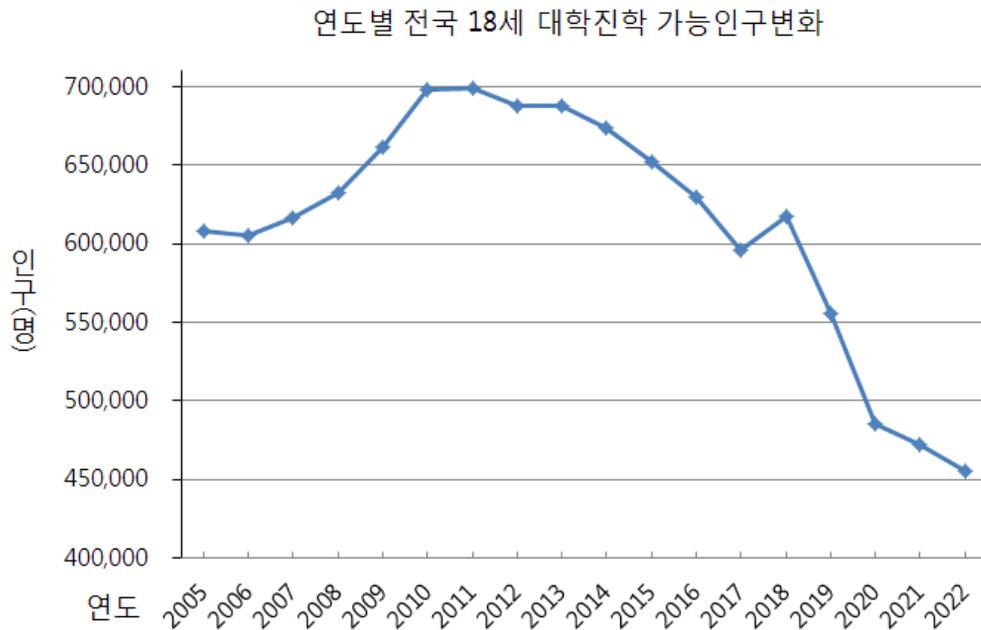
국공립대학의 교원수급정책 방향과 과제

- 시간강사 문제를 중심으로

신희권 | 충남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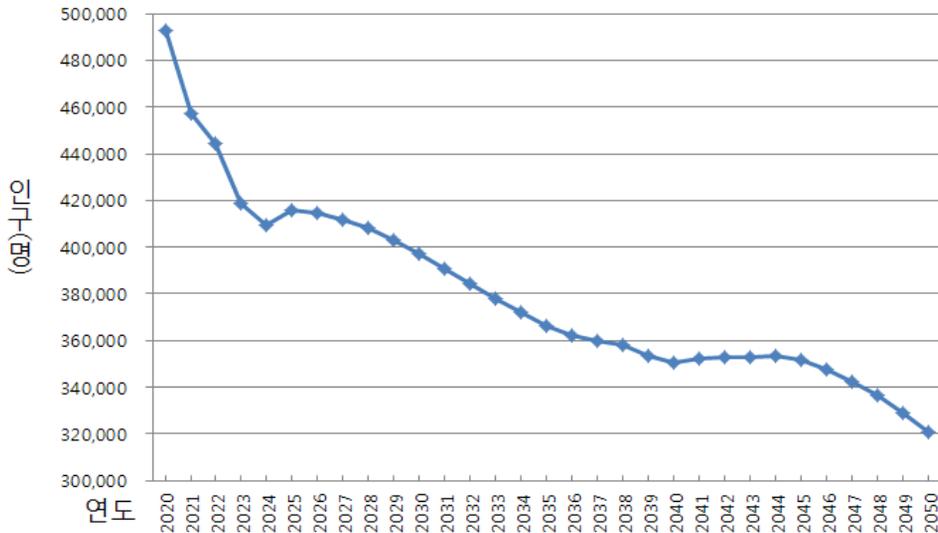
제 1 장 대학 환경의 급속한 변화

1.1. 대학진학 가능인구의 급감



자료: 통계연보, 2010.

2050년까지 전국 18세 대학진학 가능인구변화 추정치



자료: 통계연보, 2010.

1.2. 고등교육 시장의 글로벌화

⊠ 대학의 평가·인증 세계화에 따른 국제적 서열화

국경을 초월하는 고등교육인구의 급격한 이동에 따른 OECD /UNESCO/EUEA 등 국제사회의 평가 요구

서열화에 대응한 세계 대학들의 교육개혁

외국의 대학평가기관: The Times, 상하이 교통대학, US News & World Report

국내의 대학평가기관: 중앙일보, QS-조선일보

⊠ 국가간 이동하는 고등교육 인구 급증(교육경쟁력 있는 대학으로의 유학)

미국 대학내 외국인 유학생 270만(2005년) → 750만(2025년)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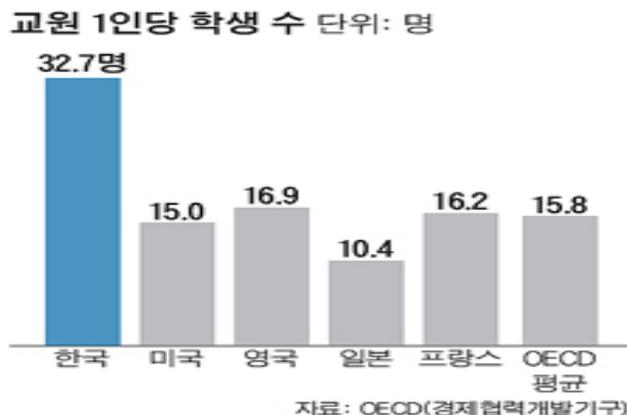
미국 대학내 한국유학생 분포(2005년 13.5%, 1위)

1.3. 미래사회의 교육부문 변화

| ● 일반적 변화 | ● 혁신적 변화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령인구의 감소 ○ 비출석수업 증가 ○ 온라인세계가 교육혁신 주도 ○ 게임을 통한 교육 ○ 교육공간으로의 학교의 의미 퇴색 ○ 대학등교 없는 사이버강의 보편화 ○ 가상교육이 기존교육의 50% 돌파 ○ 새천년세대(1982-1998) 세대의 부상 ○ 제3자 도움 없이 전 세계 주요 언어 동시 통·번역 가능 ○ 유명대학 강좌 오픈 ○ 시장이 대학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잠식 ○ 전 세계 대학 점차적 소멸 ○ 가상교육세계 접속 일반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교육이 전통적인 교육기관 밖에서 이루어질 가능성 ○ 전통교육기관이 교육수요 욕구를 충족치 못함 ○ 개방적이며 능동적인 교육 수요층 등장 ○ 현 교육개념의 재정의 필요 ○ 교원자격증 무용화 ○ 2015년 정보화 사회 종료 후 후기정보화 시대 도래 ○ 시험 무의미 ○ 개인별 맞춤형교육의 등장 ○ 적시학습과 집단지성이 교육의 주요 흐름으로 정착 ○ 국가집단지성 프로그램 등장 ○ 표준화된 교재를 전 세계 한 곳에서 작성 ○ 사이버 나우라는 옷과 안경을 착용 24시간 접속 ○ 지식이상의 가치와 목표를 중시하는 영감의 시대 도래 |

제 2 장 우리나라 대학 여건의 국제 비교

2.1. 교원 1인당 학생수



참조 1: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17.9명, 초등학교 24.1명, 중학교 20.2명, 고등학교 16.5명

OECD 평균은 유치원 14.4명, 초등학교 16.4명, 중학교 13.7명, 고등학교 13.5명

참조 2: 거점국립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수

| 학교명 | 전임교원 확보 현황 | | | | | |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 | | | | |
|-------|-----------------------|-------|--------|----------------------|-------|--------|-----------------------|-------|--------|----------------------|-------|--------|
| | (2010.4.1 현재 편제정원 기준) | | | (2010.4.1 현재 재학생 기준) | | | (2010.4.1 현재 편제정원 기준) | | | (2010.4.1 현재 재학생 기준) | | |
| | 비율 (%) | 국공립순위 | 거점국립순위 | 비율 (%) | 국공립순위 | 거점국립순위 | 명 | 국공립순위 | 거점국립순위 | 명 | 국공립순위 | 거점국립순위 |
| 강원대학교 | 71.2 | 17 | 10 | 74.9 | 14 | 8 | 26.5 | 21 | 10 | 26.1 | 16 | 6 |
| 경북대학교 | 87.3 | 5 | 4 | 92.4 | 4 | 3 | 24.0 | 10 | 6 | 27.2 | 20 | 8 |
| 경상대학교 | 87.3 | 4 | 3 | 83.7 | 8 | 6 | 22.4 | 4 | 3 | 23.4 | 8 | 3 |
| 부산대학교 | 71.9 | 16 | 9 | 67.4 | 19 | 10 | 26.1 | 20 | 9 | 28.3 | 23 | 9 |
| 서울대학교 | 127.8 | 1 | 1 | 116.6 | 2 | 1 | 14.3 | 1 | 1 | 15.9 | 2 | 1 |
| 전남대학교 | 87.0 | 7 | 5 | 89.3 | 5 | 4 | 22.9 | 8 | 5 | 24.4 | 10 | 4 |
| 전북대학교 | 77.3 | 10 | 7 | 84.7 | 7 | 5 | 22.9 | 7 | 4 | 24.7 | 12 | 5 |
| 제주대학교 | 96.4 | 2 | 2 | 96.2 | 3 | 2 | 21.3 | 3 | 2 | 21.4 | 6 | 2 |
| 충남대학교 | 76.0 | 11 | 8 | 69.4 | 18 | 9 | 25.7 | 19 | 8 | 28.6 | 25 | 10 |
| 충북대학교 | 81.1 | 8 | 6 | 75.5 | 12 | 7 | 24.8 | 13 | 7 | 26.6 | 18 | 7 |

2.2.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수준

GDP 대비 교육단계별 공교육비 구성

| 구분 | | 전체 교육단계 | | | 초중등교육단계 | | | 고등교육단계 | | |
|-------------|---------|---------|-------|-----|---------|-------|-----|--------|-------|-----|
| | | 정부 부담 | 민간 부담 | 계 | 정부 부담 | 민간 부담 | 계 | 정부 부담 | 민간 부담 | 계 |
| 발표년도 (2009) | 한 국 | 4.5 | 2.9 | 7.3 | 3.4 | 0.9 | 4.3 | 0.6 | 1.9 | 2.5 |
| | OECD 평균 | 4.9 | 0.8 | 5.8 | 3.4 | 0.3 | 3.8 | 1.0 | 0.5 | 1.5 |
| 발표년도 (2008) | 한 국 | 4.3 | 2.9 | 7.2 | 3.4 | 0.9 | 4.3 | 0.6 | 1.8 | 2.4 |
| | OECD 평균 | 5.0 | 0.8 | 5.8 | 3.5 | 0.3 | 3.8 | 1.1 | 0.4 | 1.5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0, OECD 교육재정조사.

고등교육단계의 교육재정에서 정부부담 비율은 OECD 국가의 평균이 GDP 대비 1.1%(2008년) 혹은 1.0%(2009년)이나 우리나라는 0.6% (2008년, 2009년)에 불과.

반면 민간부담의 비중은 우리나라가 1.8%(2008년), 1.9%(2009년)으로 OECD 국가 평균인 0.4%(2008년), 0.5%(2009년)에 비해 4배 정도.

고등교육예산 규모 추이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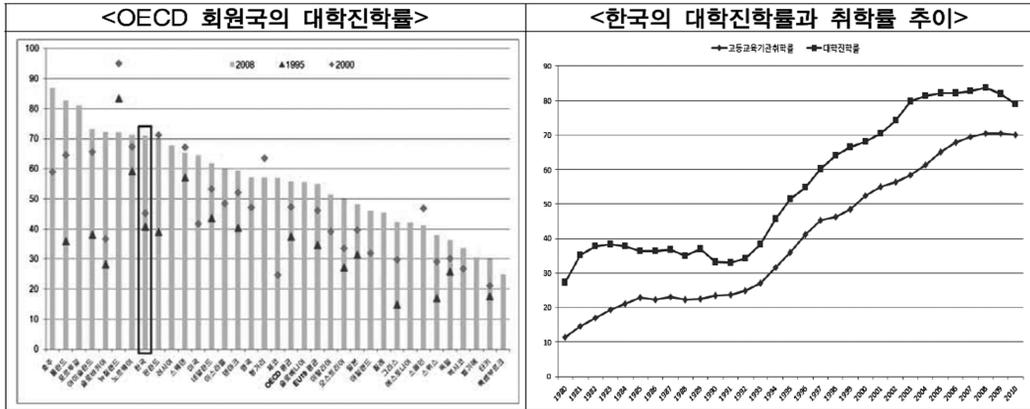
| 연도 | 정부예산(A) | GDP 규모(B) | 교육과학 기술부 예산(C) | 대학예산 (D) | D/A | D/B | D/C |
|------|-------------|-------------|----------------------|-------------|------|------|-------|
| 1990 | 22,689,433 | 186,690,900 | 5,062,431 | 552,664 | 2.43 | 0.30 | 10.92 |
| 1995 | 54,845,022 | 398,837,700 | 12,495,810 | 1,435,196 | 2.62 | 0.36 | 11.49 |
| 2000 | 93,937,057 | 578,664,500 | 19,172,027 | 2,409,700 | 2.57 | 0.42 | 12.57 |
| 2001 | 102,528,518 | 622,122,600 | 20,034,365 | 2,521,000 | 2.46 | 0.41 | 12.58 |
| 2002 | 113,898,884 | 684,263,500 | 22,278,358 | 2,613,300 | 2.29 | 0.38 | 11.73 |
| 2003 | 120,477,623 | 724,675,000 | 24,404,401 | 2,898,600 | 2.41 | 0.40 | 11.88 |
| 2004 | 126,991,802 | 779,380,500 | 26,399,680 | 3,028,700 | 2.38 | 0.39 | 11.47 |
| 2005 | 134,370,378 | 806,621,900 | 27,982,002 | 3,310,800 | 2.46 | 0.41 | 11.83 |
| 2006 | 144,807,610 | 847,876,400 | 29,127,259 | 3,392,500 | 2.34 | 0.40 | 11.65 |
| 2007 | 156,517,719 | 889,422,344 | 31,044,748 | 3,575,900 | 2.28 | 0.40 | 11.52 |
| 2008 | 183,515,764 | 978,498,800 | 35,897,425 | 4,824,658 | 2.63 | 0.49 | 13.44 |
| 2009 | 214,563,409 | 980,413,100 | 38,696,405 | 5,310,567 | 2.48 | 0.54 | 13.72 |
| 평균 | 122,428,602 | 706,455,604 | 24,382,909 | 2,989,465 | 2.44 | 0.42 | 12.26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국가통계포털(KOSIS), <http://www.kosis.kr>

정부로부터의 고등교육투자 규모는 1990년에 5,526억 원에서 2000년도에는 2조 4,097억 원이었고,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도에는 5조 3,106억 원으로 지난 19년 동안 규모면에서 9.5배 정도 증가.

하지만 2009년에 고등교육예산 규모는 정부예산, GDP, 교육과학기술부예산 대비 각각 2.48%, 0.54%, 13.72%로서 2002년 이후 다소 호전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1990년 이후 평균 정부예산 대비 고등교육예산은 2.44%, GDP 대비 평균 0.42%, 교육과학기술부예산 대비 평균 12.26%로서 상대적 규모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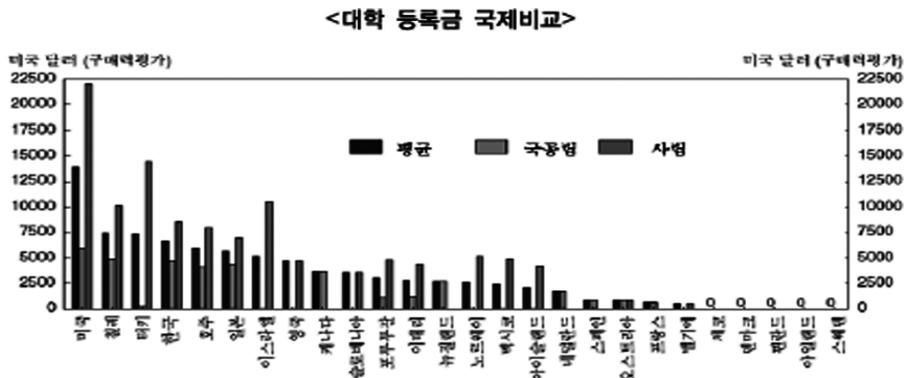
2.3. 기형적으로 높은 대학진학률



주 : 1) OECD 기준 대학진학률은 특정 연령층 인구 중 대학 진학자 비율을 구하여 이를 연령대별로 합산하므로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하는 대학진학률과는 값의 차이 존재.
 2) 취학률=취학적령의 재적학생수 / 취학적령 인구 × 100, 진학률=상급학교 입학생수/졸업생수 × 100.
 자료 : OECD(2010). *Education at a Glance*. e-나라지표.

대학진학률은 1980년대의 30%대에서 1990년대에 급증하여 2000년대 후반 80%대 까지 상승 후 2010년 79% OECD의 2008년 기준 한국의 대학진학률 순위는 OECD 회원국들 가운데 8위

2.4. 대학등록금 수준



주 : '06-'07년 대학 A형(한국의 전문대학 유형의 고등교육기관 제외) 정규학생 기준으로 학비면제와 학비에 대한 세금공제는 미반영.
 자료 : OECD(2011). 「사회정책 보고서」, 원자료는 OECD(2010). *Education at a Glance 2010*.

OECD에 따르면 한국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6,618달러(구매력지수 평가)로 미국, 칠레, 터키 등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

한국의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각각 4,717 달러와 8,519 달러.

2.5. 재학생 충원을 격차

<2010년 재학생 충원을 현황>

(단위 : 개, %)

| 구 분 | | 계 | 재학생 충원율 | | | | | | |
|------|-------|-------|---------|--------|-------------|--------|--------|--------|--------|
| | | | 90% 이상 | | 70%이상~90%미만 | | 70% 미만 | | |
| 일반대학 | 전체 | 191 | 149 | (78.0) | 21 | (11.0) | 21 | (11.0) | |
| | (‘09) | (188) | 148 | (78.7) | 21 | (11.2) | 19 | (10.1) | |
| | 설립 | 국공립 | 28 | 25 | (89.3) | 1 | (3.6) | 2 | (7.1) |
| | | 사립 | 163 | 124 | (76.1) | 20 | (12.3) | 19 | (11.7) |
| | 소재지 | 수도권 | 72 | 67 | (93.1) | 1 | (1.4) | 4 | (5.6) |
| | | 비수도권 | 119 | 82 | (68.9) | 20 | (16.8) | 17 | (14.3) |
| 전문대학 | 전체 | 145 | 97 | (66.9) | 42 | (29.0) | 6 | (4.1) | |
| | (‘09) | (146) | 87 | (59.6) | 51 | (34.9) | 8 | (5.5) | |
| | 설립 | 국공립 | 9 | 6 | (66.7) | 3 | (33.3) | | (0.0) |
| | | 사립 | 136 | 91 | (66.9) | 39 | (28.7) | 6 | (4.4) |
| | 소재지 | 수도권 | 46 | 44 | (95.7) | 2 | (4.3) | | (0.0) |
| | | 비수도권 | 99 | 53 | (53.5) | 40 | (40.4) | 6 | (6.1) |

주 : 1) 재학생 충원율 = (재학생수/편제정원) × 100.

2) 일반대학 192개교(본·분교(11개교) 분리) 중 편제정원이 정해지지 않은 한국과학기술원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 대학정보공시 4-라-1. 재학생 충원율. 교육과학기술부 2010. 9. 30. 보도자료에서 인용.

대학의 공급과잉으로 인해 재학생 충원율이 70% 미만인 일반대학은 총 191개 가운데 11.0%인 21개 대학.

사립대학의 약 12%, 비수도권 대학의 약 14%에 해당하는 대학들의 재학생 충원율이 70% 미만.

국공립대학보다는 사립대학이, 수도권대학보다는 비수도권대학의 충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제 3 장 국공립대학의 교원수급정책 방향

- 3.1.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약 16명)으로 교원 1인 당 학생수를 낮춰야 함
- 3.2. 앞으로 줄어드는 대학진학가능 인구를 고려하여 경직적인 교원수급보다 유연한 교원수급 체제를 갖춰야 함
- 3.3. 미래사회에는 정보화의 진전으로 대학캠퍼스나 오프라인 교육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교원수급체제의 유연성을 높여야 함
- 3.4. 미래사회에서는 상당수의 국/사립 대학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는 바, 거점국립 대학이 각 지역에서 수행할 기능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고 이에 부응한 교원수급정책이 필요함

제 4 장 국공립대학의 교원수급과 시간강사 문제

4.1. 시간강사 관련 법 개정 추진 배경

2010.4.1 기준 국공립대 교원 법정정원 과부족 현황

| 학교 | 국/공립 본/분교 | | 학생 현황 | 교원법정정원(A) | 전임교원 현황(B) | 과부족 (B-A) |
|--------|-----------|----|---------|-----------|------------|-----------|
| 국공립 전체 | | | 400,852 | 19,963 | 15,572 | -4,391 |
| 부산대 | 국립 | 본교 | 33,422 | 1,749 | 1,179 | -570 |
| 경북대 | 국립 | 본교 | 31,967 | 1,666 | 1,173 | -493 |
| 부경대 | 국립 | 본교 | 20,653 | 967 | 560 | -407 |

| 학교 | 국/공립 | 본/분교 | 학생 현황 | 교원법정정원(A) | 전임교원 현황(B) | 과부족 (B-A) |
|-------|------|------|----------|-----------|---------------|--------------|
| 충남대 | 국립 | 본교 | 25,797 | 1,300 | 902 | -398 |
| 전남대 | 국립 | 본교 | 29,223 | 1,544 | 1,200 | -344 |
| 전북대 | 국립 | 본교 | 24,890 | 1,305 | 1,008 | -297 |
| 공주대 | 국립 | 본교 | 17,745 | 823 | 537 | -286 |
| 강원대 | 국립 | 본교 | 24,843 | 1,215 | 953 | -262 |
| 충북대 | 국립 | 본교 | 19,363 | 966 | 729 | -237 |
| 금오공대 | 국립 | 본교 | 7,382 | 370 | 189 | -181 |
| 창원대 | 국립 | 본교 | 10,950 | 496 | 317 | -179 |
| 한국교원대 | 국립 | 본교 | 7,810 | 350 | 185 | -165 |
| 경상대 | 국립 | 본교 | 18,299 | 936 | 783 | -153 |
| 한국해양대 | 국립 | 본교 | 7,561 | 362 | 241 | -121 |
| 순천대 | 국립 | 본교 | 9,101 | 423 | 310 | -113 |
| 목포대 | 국립 | 본교 | 9,091 | 413 | 304 | -109 |
| 서울시립대 | 공립 | 본교 | 11,998 | 544 | 436 | -108 |
| 인천대 | 공립 | 본교 | 10,812 | 494 | 398 | -96 |
| 안동대 | 국립 | 본교 | 7,555 | 350 | 264 | -86 |
| 군산대 | 국립 | 본교 | 8,660 | 406 | 330 | -76 |
| 강릉원주대 | 국립 | 본교 | 8,993 | 436 | 376 | -60 |
| 한국체육대 | 국립 | 본교 | 3,223 | 162 | 103 | -59 |
| 목포해양대 | 국립 | 본교 | 2,608 | 131 | 92 | -39 |
| 제주대 | 국립 | 본교 | 12,057 | 586 | 564 | -22 |
| 울산과기대 | 국립 | 본교 | 1,326 | 65 | 83 | 18 |
| 충주대 | 국립 | 본교 | 2,613 | 126 | 282 | 156 |
| 서울대 | 국립 | 본교 | 32,910 | 1,778 | 2,074 | 296 |

09년 적립금 상위 20개 사립대의 전임교원 과부족 현황

| 순위 | 학교명 | 09년 적립금 현황(천원) | | 10년 학생현황 | 교원 법정정원(A) | 전임 교원 현황(B) | 과부족 (B-A) |
|----|------|----------------|---|----------|------------|-------------|-----------|
| | | 사립대 전체 | | | | | |
| | | 7,087,373,313 | | 1360,400 | 63,419 | 45,263 | -18,156 |
| 1 | 이화여대 | 628,039,550 | 본 | 24,316 | 1,142 | 912 | -230 |
| 2 | 홍익대 | 485,785,452 | 본 | 16,627 | 777 | 509 | -268 |
| | | | 분 | 6,486 | 305 | 193 | -112 |
| 3 | 연세대 | 390,768,814 | 본 | 35,572 | 1,788 | 1,502 | -286 |
| | | | 분 | 8,013 | 403 | 330 | -73 |
| 4 | 수원대 | 257,575,826 | 본 | 12,671 | 595 | 267 | -328 |
| 5 | 동덕여대 | 241,044,061 | 본 | 7,876 | 361 | 193 | -168 |
| 6 | 고려대 | 230,548,546 | 본 | 33,753 | 1,615 | 1,351 | -264 |
| | | | 분 | 8,139 | 364 | 236 | -128 |
| 7 | 청주대 | 218,685,395 | 본 | 14,275 | 630 | 362 | -268 |
| 8 | 숙명여대 | 188,437,177 | 본 | 13,841 | 606 | 435 | -171 |
| 9 | 계명대 | 177,502,095 | 본 | 26,363 | 1,224 | 704 | -520 |
| 10 | 인하대 | 134,237,599 | 본 | 23,542 | 1,111 | 811 | -300 |
| 11 | 세명대 | 130,461,642 | 본 | 8,419 | 400 | 222 | -178 |
| 12 | 영남대 | 123,531,616 | 본 | 28,115 | 1,325 | 809 | -516 |
| 13 | 덕성여대 | 120,812,012 | 본 | 6,219 | 276 | 175 | -101 |
| 14 | 대구대 | 120,413,119 | 본 | 21,937 | 979 | 493 | -486 |
| | | | 분 | 22,009 | 1,184 | 933 | -251 |
| 15 | 경희대 | 110,000,001 | 본 | 13,476 | 653 | 424 | -229 |
| | | | 분 | 13,476 | 653 | 424 | -229 |
| 16 | 성신여대 | 104,390,600 | 본 | 11,605 | 514 | 310 | -204 |
| 17 | 서울여대 | 103,355,157 | 본 | 8,462 | 373 | 229 | -144 |
| 18 | 조선대 | 99,739,690 | 본 | 24,658 | 1,249 | 784 | -465 |
| 19 | 서강대 | 96,846,008 | 본 | 12,982 | 558 | 386 | -172 |
| 20 | 경남대 | 96,811,518 | 본 | 15,341 | 675 | 356 | -319 |

※2009년 적립금 현황, 2010년 4월 1일 기준 학생현황·과부족 현황

시간강사 강의 비중(2011년도 정보공시자료 기준)

| 구분 | | 학기당 총개설 강의학점 | 시간강사 | 비율 | 전임교원 | 비율 | 기타 | 비율 |
|----|-----|--------------------|---------|-------|---------|-------|---------|-------|
| 설립 | 교명 | | | | | | | |
| 국립 | 경북대 | 7,536.0 | 2,530.3 | 33.58 | 4,023.0 | 53.38 | 982.7 | 13.04 |
| | 경상대 | 4,556.2 | 761.3 | 16.71 | 3,637.3 | 79.83 | 157.6 | 3.46 |
| | 부산대 | 6,612.5 | 2,736.0 | 41.38 | 3,545.5 | 53.62 | 331 | 5 |
| | 전북대 | 9,029.4 | 3,060.3 | 33.89 | 4,528.0 | 50.15 | 1,441.1 | 15.96 |
| | 전남대 | 7,190.0 | 2,141.1 | 29.78 | 4,538.8 | 63.13 | 510.1 | 7.09 |
| | 충남대 | 5,702.0 | 1,903.9 | 33.39 | 3,281.7 | 57.55 | 516.4 | 9.06 |
| 사립 | 고려대 | 4,220.0 | 1,377.5 | 32.6 | 2,332.4 | 55.3 | 510.1 | 12.1 |
| | 연세대 | 4,522.0 | 1,186.0 | 26.2 | 3,147.0 | 69.6 | 189 | 4.2 |
| | 서강대 | 1,904.0 | 669.1 | 35.1 | 995.7 | 52.3 | 239.2 | 12.6 |

시간당 시간강사 강의료 현황(2010년)

(단위: 천원)

| 구분 | | 학교수 | 시간당 시간강사 강의료*** | | |
|------|------|-----|-----------------|------|------|
| | | | 최소 | 최대 | 평균 |
| 전체 | | 188 | 20.0 | 60.6 | 39.6 |
| 설립유형 | 국·공립 | 28 | 36.2 | 56.5 | 49.3 |
| | 사립 | 160 | 20.0 | 60.6 | 37.9 |
| 소재지 | 수도권 | 71 | 23.6 | 60.6 | 40.8 |
| | 비수도권 | 117 | 20.0 | 60.3 | 38.9 |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산업대학과 교육대학 등을 포함하지 않음)으로 192개교(본·분교 분리) 중 시간강사 수가 0인 4개교는 제외

** 시간강사 : 2011년 4월 1일, 1학기 현재 재직중인 시간강사(겸임, 명예, 대우, 초빙, 석좌교수 등은 미포함)로, 전년도('10년도) 시간강사(순수시간강사 : 타 직업을 갖지 않은 자)와 기준이 다름

*** 시간당 시간강사 강의료 = (등급별 시간당 지급기준단가×총 강의시간 수)의 총합/총 강의시간 수의 총합

**** 지급기준 단가 : 1인 1시간의 지급기준 단가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전국 시간강사의 강의료(2010년)는 국공립대의 경우 4만 9300원, 사립대의 경우 3만7900원.

시간당 강의료가 가장 높은 대학은 6만600원을 기록한 서강대였으며 대구대(6만 200원), 성균관대(5만9000원) 등.

참조: 충남대 시간강사료

(2011년도 1학기 기준)

| 구분 | 강사료 | 처우개선비 | 연구보조비 | 계 | 비고 |
|----------|--------|-------|-------|--------|-------------------------------|
| 전업 시간강사 | 52,500 | 2,500 | 5,000 | 60,000 | 전업/비전업 구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구분 |
| 비전업 시간강사 | 30,000 | 0 | 0 | 30,000 | |

- 4대보험 :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

시간강사는 대학강의의 30% 이상을 담당하는 등 대학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교원으로서의 지위 불안정 및 낮은 보수 개선 필요.

4.2. 시간강사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시간강사 지원 대안 비교

| 구분 | 고등교육법 개정 정부안 (2011.3) | 교과부(안) 2010.7 입법예고 | 비정규교수노조(안) | 전국교수노조(안) | 정책제언 | |
|-------|-----------------------|----------------------------------|-------------------|---------------------------|------------------------|---|
| 법적 지위 | 명칭 | 강사 | 기간제 강의전담 교수 | 연구강의교수 | 국가교수 | 연구강의교수 |
| | 부여 유무 | 일부 부여 면직, 권고사직 제한 불체포특권 보장 | 일부 부여 | 부여 | 부여 | 부여 |
| | 부여 규모 | - | 2천명 | 약 5만여명 | 5천명에서 단계적으로 3만명까지 | 5천명에서 단계적으로 3만명까지 |
| | | - | 국립대 법정정원 부족분의 10% | 중복강의자 제외 강의시수 및 전업 유무와 무관 | 박사 학위자 중에서 전업 시간강사인 사람 | 현재 박사학위 자이면서 전업 시간강사인 사람 숫자와 앞으로 문단을 국/사립대 기존 교원 고려 |

| 구분 | 고등교육법 개정 정부안 (2011.3) | 교과부(안) 2010.7 입법예고 | 비정규교수노조 (안) | 전국교수 노조(안) | 정책제언 | |
|-----------|-----------------------|---|---|---|------------------------------------|------------------------------------|
| | 부여 시기 | - | 매년 4백명씩 5년간 | 즉시 |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 |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 |
| | 예상 소요 예산 | - | 5년간 520억(년 104억) | 연간 3-7천억 | 연간 1,200 - 9,000억 | 연간 1,200 - 9,000억 |
| | | - | 국립대 법정정원부 족 분 의 10%(400명) * 전임강사 연봉의 60%(2,600만원) | (국공립100% +) 사립 30 - 100% 지원 * 전임강사 연봉의 50%(2,250만원) | 5천-3만명 * 연봉(2,400 - 3,000만원) | 5천-3만명 * 연봉(2,400 - 3,000만원) |
| | 시간 강사 존속 | 폐지 | 존속 | 폐지 | 3만명 도달하면 폐지 | 3만명 도달하면 폐지 |
| | 선발 | 각 대학 | 각 대학 | 각 대학 | 정부 | 거점국립대학 |
| | 교원 충원율 계산 | 강사를 교원확보율에 포함하여 채용 유도 | 기간제 강의전담 교수를 교원확보율에 포함하여 채용 유도(1:1방식) | 물적 급부와 권리의 양에 따라 학 교별 '총량제' | - | 강의를 담당하는 해당 거점 국립대학 교원 확보율에 반영 |
| | 관련법 재개정 | 고등교육법 개정 | 고등교육법 개정 | 고등교육법 개정 | 고등교육법 개정 | 고등교육법 개정 |
| 고용 안정성 제고 | 고용 안정 보장 | 1년 이상 단위 | 1년 이상 단위 | 2년 이상 단위 | 대학교원국가풀(pool)에 등록 | 대학교원국가풀(pool)에 등록 |
| | 재계약 여부 | 제한 없음 | 최대 5년 이내 | 횟수에 상관없이 가능 | - | - |
| | 고용 투명화(재계약 기준) | 국·공립대학 : 자격·재교육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함(교육공무원법 제10조 준용) 임용·재임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 강의평가 실시 | 강의평가, 연구업적, 사회봉사, 경력 등 4개 지표 | 별도의 연구, 교육 및 봉사 업적 규정에 따라 자격 유지 판정 | 별도의 연구, 교육 및 봉사 업적 규정에 따라 자격 유지 판정 |

| 구분 | 고등교육법 개정 정부안 (2011.3) | 교과부(안) 2010.7 입법예고 | 비정규교수노조 (안) | 전국교수 노조(안) | 정책제언 | |
|------------------|-----------------------|--|---|---|-------------------------------|-------------------------------|
| 추 우 개 선 | 강사료 현실화 | 국립대는 2011년 시간당 6만원에서 2013년까지 시간당 8만원으로 인상 사립대는 시간강사 강사료를 공시지표와 평가지표로 활용하여 인상 유도 | 국립대는 향후 5년내 전임강사대비 평균연봉 현재 25% -> 60% 수준 달성(연봉 2,600만원) 사립대는 최저강사료 기준단가 권고(국립대 시간강사료 평균단가) | 노총 2인가구표준생계비 혹은 대졸 초임평균연봉 이상의 최저연봉 이상 지급 의무화 (기본급 도입, 2,500 - 3,000만원) 월급제(방학기간 포함) | 연봉 2,400 - 3,000만원으로 최저생계비 보장 | 연봉 2,400 - 3,000만원으로 최저생계비 보장 |
| | 4대 사회 보험 | 보장 추진계획 마련 | 보장 추진계획 마련 | 보장 | 보장 | 보장 |
| | 연구 공간 확보 | 공동연구실 | 공동연구실 | 공동연구실 | 공동연구실 | 공동연구실 |
| | 교육 및 연구 지원 | 지원 | 지원 | 지원 | 지원 | 지원 |

○ 고등교육법 개정 정부안(2011.3)의 문제점

#서울대는 최근 시간강사 강의료 인상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4만3000원 수준인 강의료를 올해 6만원으로 올려야 한다. 하지만 서울대가 1400여명의 시간강사 예산으로 국고 지원을 받은 것은 35억7000만원. 6만원으로 올리려면 추가로 48억2200만원이 필요하다. 서울대는 올해 부족한 예산은 우선 기성회비에서 일부 충당하고 정부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머니투데이, 2011.05.17>

#서울 한 사립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1100여명의 시간강사를 연봉 계약제의 비정년 강의전담교수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초교양과목부터 시작해 내년

에는 모든 학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시간강사 3~4명이 담당하던 강의를 강의전담교수 1명이 맡는 방식으로 운영돼 사실상의 인력 구조조정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학은 시간강사 모두를 강의전담교수로 전환할 경우 현재 110억원에서 약 62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2011.05.17>

..... 대학가에 따르면 국립대 시간강사 처우 개선에만 연간 최소 15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각 대학은 예산 확보를 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부 사립대는 시간강사를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대의 경우 현재 4만3000원 수준인 시간강사 강의를 올해에는 6만원까지, 2013년에는 8만원으로 올려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국립대 시간강사 지원비로 마련한 예산은 805억원. 최소 15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보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머니투데이, 2011.05.17>

참조:

□ 충남대 소요 재원

- 시간강사료 산출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 산출자료 (2011년 학기당 기준) | | | 소 요 액 | | | 비고 |
|-------|------------------------|--------------------|----|------------|-----------------|------------|----|
| | 강좌수 (%) | 강의시수 (%) | 단가 | 연간인건비 | 보험료 (6,211%) | 계 | |
| 2011년 | | | 60 | 7,959,600 | 494,371 | 8,453,971 | |
| 2012년 | 1,587 (22.6%) | 66,330 (29.47%) | 70 | 9,286,200 | 576,766 | 9,862,966 | |
| 2013년 | | | 80 | 10,612,800 | 659,161 | 11,271,961 | |

※ 시간강사료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

- 2011년 대비 2013년까지 2년간 각각 약 1,408,995천원 추가 소요 예상
(산출식 : 강의시수 × 2학기 × 단가 = 연간인건비)

□ 충남대 향후 계획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위원회 논의 중('11. 06. 22. 현재)
- 고등교육법 개정 추이 관망, 필요시 예산확보 및 관련규정 개정('12. 3월 시행 예정)

사학법대책위원회

자문교수 이시우 (서울여자대학교)

**대교협 사학법대책위원회 회의 자료 초안
(2011.8.9)**
-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육성법안의 마련 -

이시우
(자문교수, 서울여대)

목 차

1

추진 경과

2

현황 및 문제점

3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
육성특별법안의 마련

I. 추진경과

1. 2009년 대교협 하계총장세미나 논의 내용

- 2008년 8월부터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산하 TFT 구성하여 사학법 문제 추진 방안 논의
- 2009년 3월 30일 사립대학육성특별법 제정안 관련 국회발표
- 2009년 4월 9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고려대세미나 TFT 발표의 연장선상에서 2009년 대교협 하계총장세미나 개최 및 논의
- 2009년 대교협 하계총장세미나 논의 내용
- 사립학교법 관련 입법개선방향
 - - 제1안 : 사립학교법의 폐지와 대체입법으로서 사학육성법의 제정
 - - 제2안 :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보완입법으로서 사립대학육성특별법의 제정
 - - 제3안 : 사립학교법의 폐지와 사학 관련 필수사항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의 편제

I. 추진경과

2. 2009년 10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세미나 논의 내용

- 2009년 10월에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세미나에서 발표(김병목 전총장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사립학교법 폐지를 전제로 새로 사립학교법을 대체할 사학진흥법 제정안이 제안됨

3. 2010년 4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세미나

- 이남식 총장 발표:
 - 통제중심의 사학 감독체계인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으로 국공립대학과의 재정지원 차별, 현행 사립학교법상의 문제 조항인 정관, 개방형이사제도,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문제 등을 개정할 것을 주장하며 사립학교진흥법 또는 사립대학진흥법의 제정을 촉구함
- 이영선 총장 토론:
 - 사립대학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사립대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사학진흥법 제정을 통한 경상비 지원의 명문화, 자율적 대학평의회 설치 등이 요구됨

I. 추진경과

4. 2011년 1월 대학교육협의회 동계총장세미나 사학법대책위 논의 내용

- 사립학교법 관련 입법개선방향
 - 제1안: 사립학교법의 폐지와 대체입법으로서 사학육성법의 제정
 - 제2안: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보완입법으로서 사립대학육성특별법의 제정
 - 제3안: 사립학교법의 폐지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개정
 - 제4안: 사립학교법의 폐지와 대체입법으로서 학교법인법, 사학교원에 관한 법률, 사학육성법의 제정

II. 현황 및 문제점

- 제18대국회에서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제안 전망 불투명
- 반값 등록금 문제가 현안이 되어버린 현 시점에서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사학육성특별법안에 담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사학진흥법안을 마련한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의 연계 필요성 여부도 논의 필요

III.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육성특별법안의 마련

1. 사립학교법의 개정 방향

- 사학의 자유 보장
 -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사학의 설립 및 경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명문규정이 없음. 헌법상 사학의 자유에 근거한 사학의 설립 및 경영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사립학교법 규정이 필요함
- 개방이사제 위헌성 해소
 - 제1안 : 개방이사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법(개방이사제 및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제도 모두 폐지)
 - 제2안 : 이사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개방이사를 견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으면서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 사회, 교육·학술계 등의 인사로 하여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에서 선임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방법(개방이사제 유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제도 폐지)

III.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육성특별법안의 마련

1. 사립학교법의 개정 방향

- 대학평의원회 제도 문제점 해소
 - 제1안 : 현재는 사립대학 내에서 법적 심의기구로 되어 있으나 기존의 교무위원회나 학·처장회의와 같은 기구들과 그 기능 및 대표성이 충돌하고 있음
 - 사립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수렴기구로서 대학평의원회제도를 유지하되 대학평의원회를 자문기구화 함으로써 기존의 교무위원회 또는 학·처장회의와 기능 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음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도 개선

III.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육성특별법안의 마련

2. 사학육성특별법안의 내용 (초·중등 사립학교 + 사립대학)

○ 제안이유

-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학의 교육여건 개선 필요
- 사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공헌도에 대한 고려
-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
- 사학 재정의 취약성과 한계에 이른 재정확충
-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사립대학 지원
- 교육재정법률주의의 구현

III.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육성특별법안의 마련

3. 법률(안) 요지

- 사학 설립주체의 확대
- 사립학교와 사립대학은 학교법인에서는 통합적으로 규율하되 지원영역에서는 구분
- 육성재원의 확보 및 지원 대상 사립학교
- 학교법인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립학교육성위원회 및 사립대학육성위원회 설치
 - 사립학교육성위원회 설치
 - 사립대학육성위원회 설치

III.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육성특별법안의 마련

3. 법률(안) 요지

- 사립학교 및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
 -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
 - 사립학교에 대한 표준교육비 국가 부담
 - 그 밖의 지원
 -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
 - 사립대학의 정상적 경비에 대한 보조, 감액 및 중단
 - 우수사립대학에 대한 평가와 지원, 중단 및 환수
 - 그 밖의 지원(기부금에 대한 세법상 우대조치, 캠퍼스부지 조성,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 국제화 지원 및 실업교육 배려
- 표준교육비, 보조금 등 관리와 관할청의 권한
- 본 법안 제9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감사합니다.

대학평가대책위원회

자문교수 김승용 (동국대학교)

자문교수 김복기 (광운대학교)

대학정보공시 현황 및 개선방안

2011 . 8. 10.

김 승 용
(자문교수, 동국대학교)



목 차

01. 정보공시제도 개요 및 운영현황
02. 정보공시제도 문제점
03. 정보공시제도 개선방향

01 대학정보공시 개요 및 운영 현황

- '대학정보공시제' 란?
- 제도시행 취지 및 수요자별 활용
- 추진체계
- 추진조직별 역할
- 대학정보공시 대상학교
- 정보공시 범위
- 정보공시 항목 및 내용
- 정보공시 프로세스
- 공시정보 수집
- 공시정보의 관리 및 검증



대학정보공시제

의미

고등교육기관의 기본운영 상황 및 학생·교원·교육·연구여건에 관한 주요정보를 정보공개 청구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제도 (2008년 12월 첫 시행)

시행 취지

- ◆ 국민의 알 권리와 교육선택권 보장
- ◆ 대학의 책무성 및 경쟁력 강화 (지속적 대학구조개혁 가속화)
- ◆ 학술 및 정책연구 진흥
- ◆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교육관련기관



대학 알리미



수요자



제도시행 취지 및 수요자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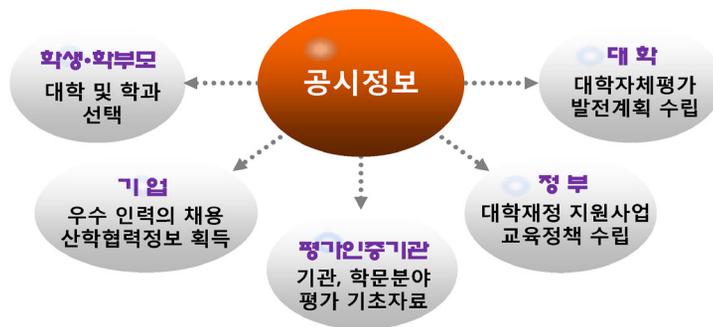
● 대학정보공시제 시행 취지(2008년 12월 첫 시행)

- 국민의 알 권리와 교육선택권 보장
- 대학의 책무성 및 경쟁력 강화
(대학 간 경쟁을 통한 질 제고 촉진 및 지속적 대학구조개혁 가속화)
- 학술 및 정책연구 진흥
-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

[대학정보공시제 추진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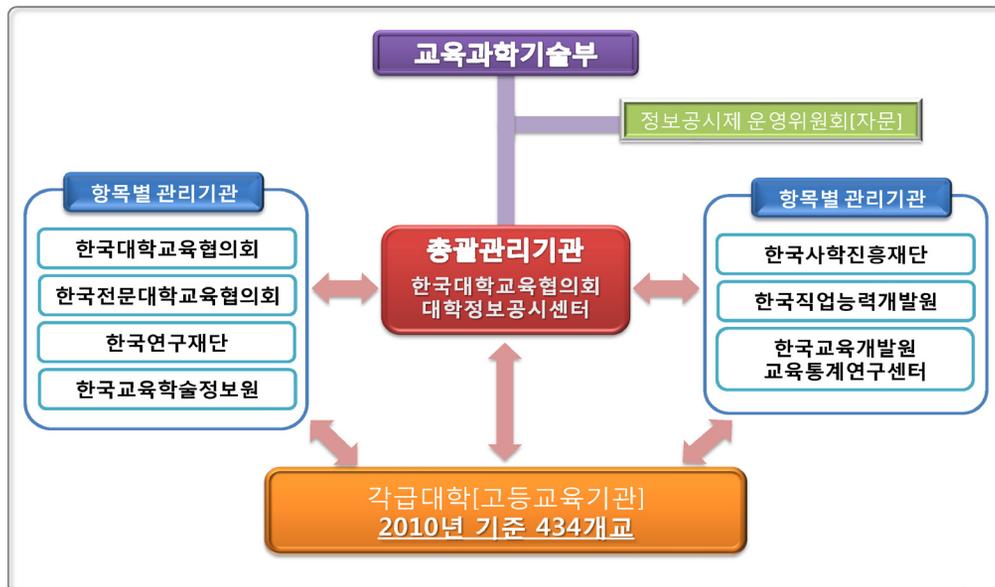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정·공포 : 2007. 5. 25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공포 : 2008. 11. 17

● 수요자별 활용



5

추진 체계



6

추진조직별 역할

| 구 분 | 기 관 명 | 주요 기능 및 역할 |
|---------|--|--|
| 주무 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분석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정보공시 기본계획 수립·조정·승인 총괄관리기관, 항목별관리기관 지정 정보공시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 총괄관리기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정보공시 실행계획 수립 대학정보공시 지침 및 양식 개발·개선·보급 학교별 대학정보공시 지원 및 클러스터 운영 운영 관련 조직간 협조체제 구축 대학정보공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대학정보공시 관련 연구 및 개선방안 도출 대학정보공시 실태 조사 및 평가보고서 작성 |
| 항목별관리기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공시항목 정보의 연계·확인 대학별 정보공시 자료 제공(간접입력) 공시항목 지침 개발 지원 |
| 공시주체 | 대학(고등교육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시 데이터 조사·작성 항목별관리기관 및 총괄관리기관으로의 정보 제출 개별대학 정보공시 |

7

대학정보공시 대상학교

| | 공시대상의 근거 | 학교 종류 | 학교수 |
|------------|--|--------------------|-----|
| 고등교육법 | 고등교육법(제2조) [학제별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234 개교) 전문대학(160 개교) 대학원대학(40 개교) | 대학 | 190 |
| | | 산업대학 | 11 |
| | | 교육대학 | 10 |
| | | 전문대학 | 145 |
| | | 방송대학 | - |
| | | 통신대학 | - |
| | | 방송통신대학 | 1 |
| | | 사이버대학(원격대학) | 16 |
| | | 기술대학 | 1 |
| | | 각종학교 | 5 |
| | | 대학원대학 | 39 |
| 소 계 | | | 418 |
| 그 밖에 다른 법률 | 사립학교법(제45조) / 기능대학법(제18조) | 한국폴리텍대학/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 12 |
| | 한국농업대학설치법(제5조) | 한국농수산대학 | 1 |
| | 한국과학기술원법(제1조) | 한국과학기술원 | 1 |
| | 광주과학기술원법(제1조) | 광주과학기술원 | 1 |
| |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제1조) | 한국학대학원 | 1 |
| 소 계 | | | 16 |
| 합 계 | | | 434 |

8

정보공시 범위

● 공시 범위

| 구분 | 공시 항목 | 공시 내용 | 공시양식 및 지침 |
|------|------------|---------|-------------------------|
| 법적근거 | 특례법 제6조 1항 | 시행령 별표2 | 대학정보공시 지침서 (특례법 제7조 1항) |
| 범위 | 13개 항목 | 61개 내용 | 95개 세부내용 |

[2009년]
 ● 13개 항목
 ● 55개 내용
 ● 81개 세부내용

● 공시 항목 요약

| # | 공시정보 항목 | 비고 |
|-----|--------------------------------------|-------------------------------|
| 1 |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 |
| 2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
| 3 |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 [공시 시기] 공시 세부 항목별로 다른 : |
| 4 | 총원율, 재학생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 수시, 3월, 4월, 6월, 9월, 11월 |
| 5 |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 |
| 6 |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 |
| 7 | 전임교원의 연구 성과에 관한 사항 | |
| 8 |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 [공시횟수] 공시 세부 항목별로 다른 : |
| 8-2 |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 수시, 연 1회, 연 2회 |
| 9 |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 |
| 10 |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 |
| 11 |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 |
| 12 |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 |
| 13 |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 |

9

정보공시 항목 및 내용 (1/3)

* 중앙일보 대학평가 활용 지표

| # | 공시 항목 | 공시 내용 | 공시 기관 | 공시 횟수 | 공시 시기 | 관리 기관 |
|------------------------|---------------------------------|--------------------------|-------|-----------|-------|-----------|
| 1 |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 가. 학교규칙 | 대학 | 수시 | 수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 | | 나. 학교규칙 외 학사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대학 | 수시 | 수시 | |
| 2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가. 교육과정 편성 및 평가 기준 | 대학 | 연 1회 | 3월 | 한국교육개발원 |
| | | 나.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 대학 | 연 1회 | 3월 | |
| 3 |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 가. 대학입학(편입학)전형시행계획 | 대학 | 수시 | 수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 | | 나. 모집 요강(편입학 포함) | 대학 | 수시 | 수시 | |
| 4 | 총원율, 재학생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 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 대학 | 연 1회 | 9월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 | | 나. 기회 균형 선발 결과 | 대학 | 연 1회 | 9월 | |
| | | 다. 신입생 총원 현황 | 대학 | 연 1회 | 9월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 | | 라. 학생 총원 현황(편입학 포함) * | 대학 | 연 1회 | 9월 | |
| | | 마. 재직 학생 현황 * | 대학 | 연 1회 | 9월 | |
| | | 바. 외국인 학생 현황 * | 대학 | 연 1회 | 9월 | |
| | | 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 * | 대학 | 연 1회 | 9월 | |
| | | 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현황 | 전문 대학 | 연 1회 | 9월 | |
| 자.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 대학 | 연 1회 | 9월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 |
| 5 |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 가. 졸업생 현황 | 대학 | 연 1회 | 9월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 | | 나. 졸업생의 진학 현황 | 대학 | 연 1회 | 9월 | |
| | | 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 | 대학 | 연 1회 | 9월 | |
| 6 |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 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현황 * | 대학 | 연 1회 | 9월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 | | 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 | 대학 | 연 1회 | 9월 | |
| | | 다. 전임교원 확보율 * | 대학 | 연 1회 | 9월 | |
| | | 라. 산업계 경력 전임교원 현황 | 대학 | 연 1회 | 9월 | |
| 7 | 전임교원의 연구 성과에 관한 사항 | 마.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 | 대학 | 연 1회 | 9월 | 한국연구재단 |
| | | 가.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실적 * | 대학 | 연 1회 | 9월 | |
| | | 나. 저(著)·역(譯)서 실적 | 대학 | 연 1회 | 9월 | |

10

정보공시 항목 및 내용 (2/3)

| # | 공시 항목 | 공시 내용 | 공시 기관 | 공시 횟수 | 공시 시기 | 관리 기관 |
|-----|-------------------------------------|---------------------------------------|--------|-------|-------------------|-----------------------|
| 8 |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 가. 일반회계 예·결산 현황 | 국공립 대학 | 연 1회 | (예) 6월 (결) 11월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 | | 나. 기성회계 예·결산 현황 | 국공립 대학 | 연 1회 | (예) 6월 (결) 11월 | |
| | | 다. 발전기금 예·결산 현황 | 국공립 대학 | 연 1회 | (예) 6월 (결) 11월 | |
| | | 라. 예·결산(합산 재무제표) 현황 | 사립 대학 | 연 1회 | (예) 6월 (결) 11월 |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 | | 마. 법인회계 예·결산 현황 | 사립 대학 | 연 1회 | (예) 6월 (결) 11월 | |
| | | 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 | 사립 대학 | 연 1회 | (예) 6월 (결) 11월 | |
| | | 사. 적립금 현황 | 사립 대학 | 연 1회 | (결) 11월 | |
| | | 아. 기부금 현황 * | 사립 대학 | 연 1회 | (결) 11월 | |
| | | 자. 산학협력단 회계 현황 * | 대학 | 연 1회 | (예) 6월 (결) 11월 | |
| | | 차. 등록금 현황 | 대학 | 연 2회 | 4월, 11월 | |
| 8-2 |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 가. 등록금 산정 근거 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 | 대학 | 연 2회 | 4월, 11월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 9 | 「고등교육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 대학 | 수시 | 수시 | |
| 10 |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 대학 | 수시 | 수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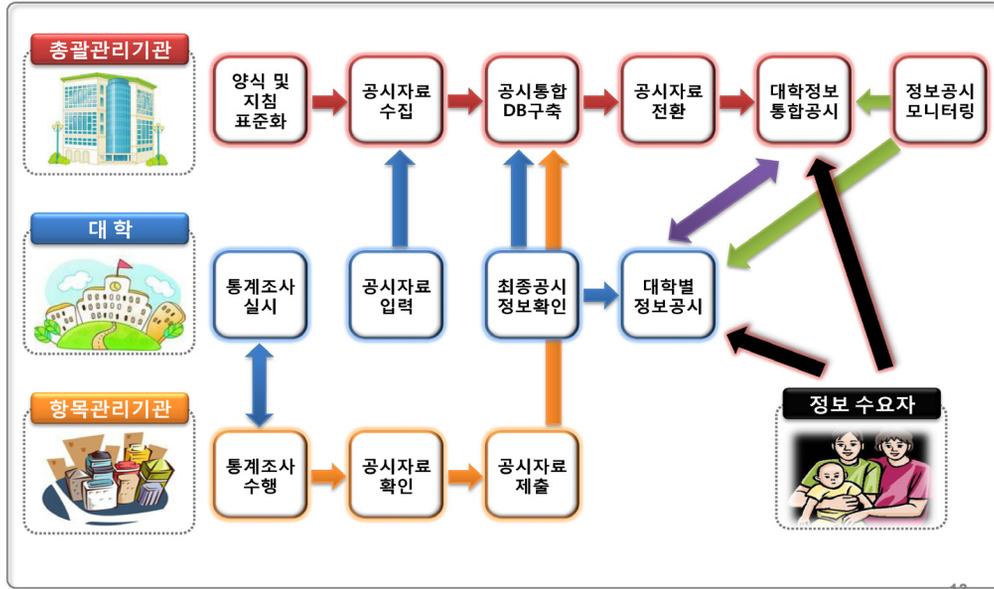
11

정보공시 항목 및 내용 (3/3)

| # | 공시 항목 | 공시 내용 | 공시 기관 | 공시 횟수 | 공시 시기 | 관리 기관 |
|---------------------|------------------------------|--------------------------------|-------|-------|-------|------------------------|
| 11 |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 가. 연구비 수혜 실적 * | 대학 | 연 1회 | 9월 | 한국연구재단 |
| | | 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 | 대학 | 연 1회 | 9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 | | 다. 장학금 수혜 현황 * | 대학 | 연 1회 | 9월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 | | 라.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 | 대학 | 연 1회 | 9월 | |
| | | 마.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개설현황 | 대학 | 연 1회 | 9월 | |
| | | 바.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실적 * | 대학 | 연 1회 | 9월 | 한국연구재단 |
| | | 사.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 | 대학 | 연 1회 | 9월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 아. 교원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 대학 | 연 1회 | 9월 | | | |
| 12 |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 가. 장서 보유 현황 | 대학 | 연 1회 | 9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 | | 나. 도서관 예산 현황 * | 대학 | 연 1회 | 9월 | 한국연구재단 |
| | | 다. 연구시설 현황 | 대학 | 연 1회 | 9월 | |
| 13 |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 가. 정관 | 사립 대학 | 수시 | 수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 | | 나. 법인의 임원 현황 | 사립 대학 | 수시 | 수시 | |
| | | 다. 교지확보 현황 | 대학 | 연 1회 | 9월 | |
| | | 라. 교사시설 확보 현황 | 대학 | 연 1회 | 9월 | 한국사학진흥재단 |
| | | 마. 기숙사 수용 현황 * | 대학 | 연 1회 | 9월 | |
| | | 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 사립 대학 | 연 1회 | 9월 | |
| | | 사. 직원 현황 | 대학 | 연 1회 | 9월 | |
| | | 아.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 | 대학 | 연 1회 | 9월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 | 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 | 대학 | 수시 | 수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 | | 차. 시간강사 강의료 | 대학 | 연 1회 | 4월 | |

12

정보공시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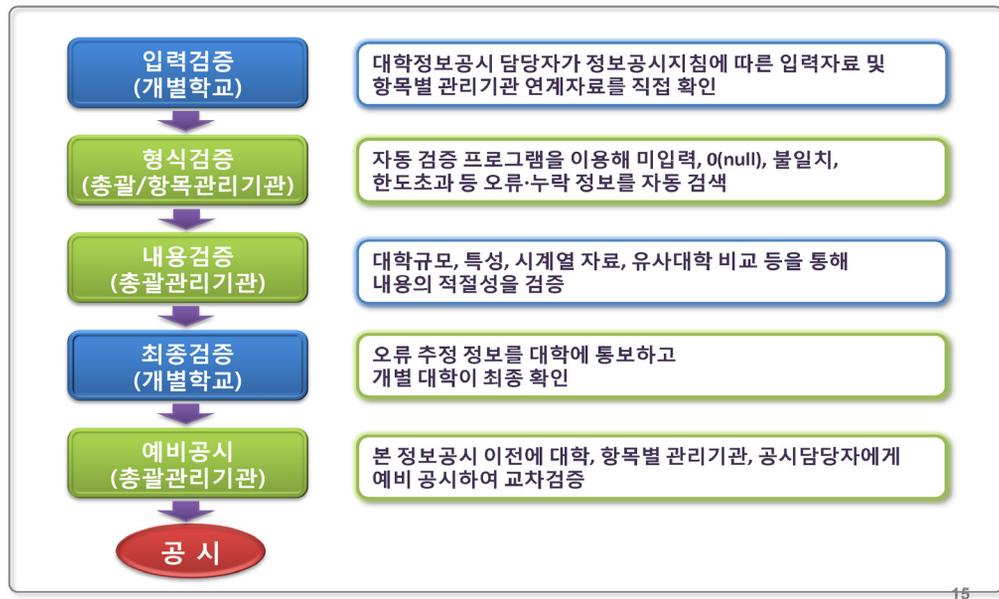
13

공시정보 수집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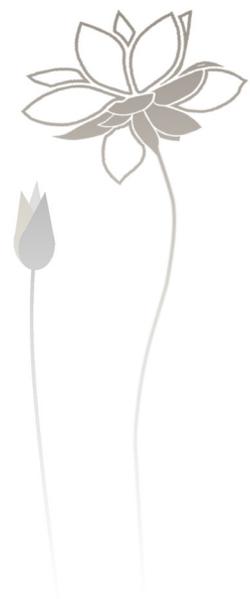
공시정보의 관리 및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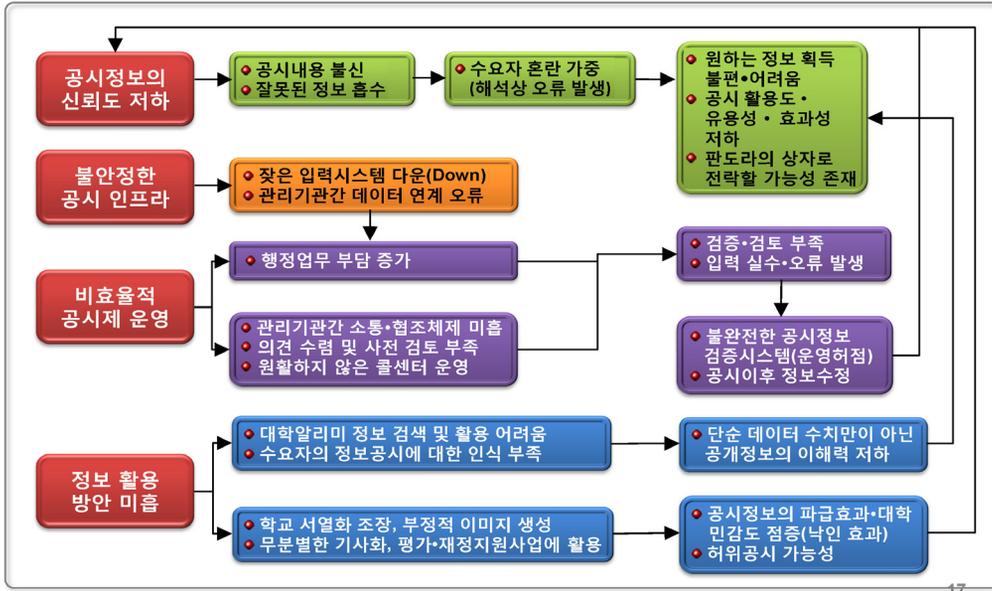
15

02 정보공시제 문제점

- 정보공시제 문제점 요약
- 정보공시제 문제점 인과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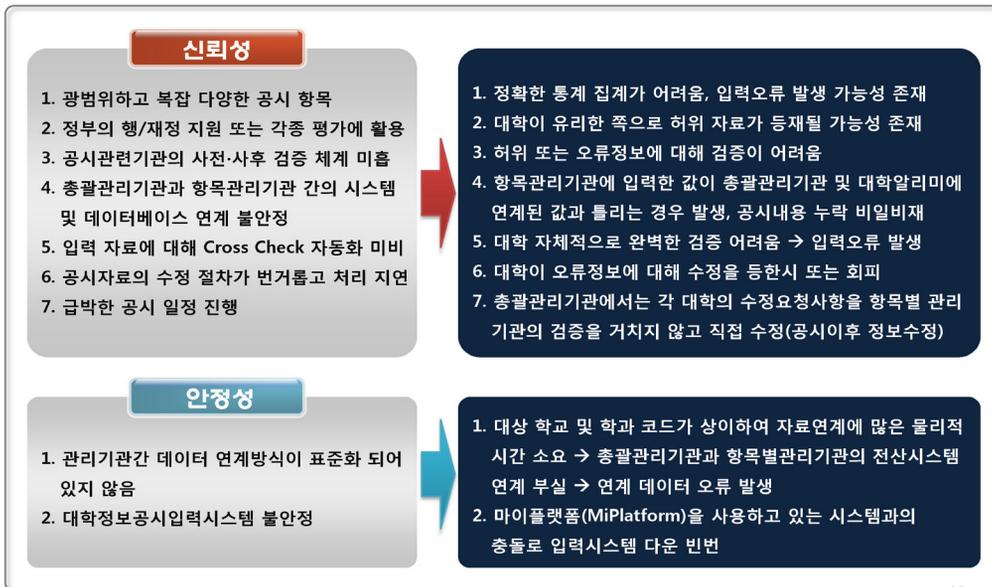


정보공시제 문제점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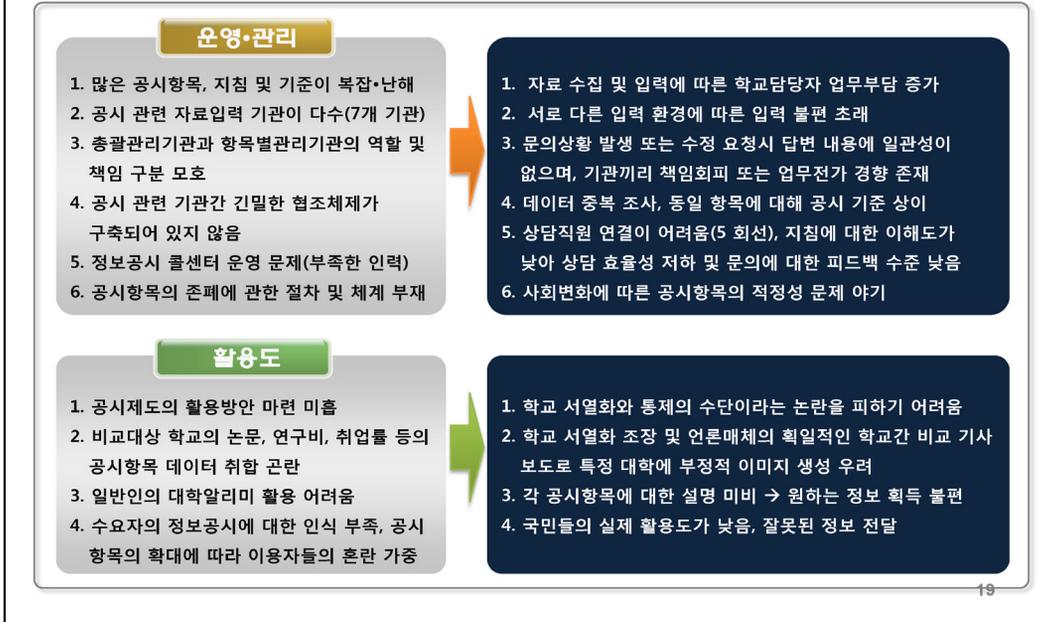


17

정보공시제 문제점 인과관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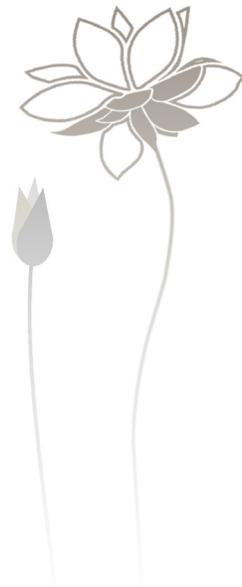


정보공시제 문제점 인과관계(2/2)



03 정보공시제 발전방향

-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발전방향
- 정보공시제 개선방안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발전방향



21

정보공시제 개선방안 (1/4)

신뢰성 제고

정보 생산·입력 주체(대학)의 신뢰성 확보

- 대학의 정보관리능력 및 기록관리체계 향상 : 통계시스템 구축(정부에서 시스템 구축 예산 지원)
- 공시항목별로 작성자(실무자)와 확인자(팀장)를 지정하여 책임성 부여
- 정보공시 입력담당 부서와 총괄담당 부서 간의 기능적 연계 체제 구축
- 공시 총괄담당자는 입력 실무자와 함께 보다 원활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생산을 위한 정기적인 피드백 수행
-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자세 : 성실한 정보 제공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필요
- 자체검증시스템 구축 : 정기적인 검증을 해야 하는 항목을 자체 내규로 포함시켜 활용

공시정보 검증 체계 재정비

- 검증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설계·보완 : 특히 허위공시 검증시스템 마련이 관건
- 시스템에 자료 입력시 오류 최소화를 위한 검증 자동화 시스템 구축 : 공시정보 Cross Check 기능 강화
-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10% 대학 선별하여 각 대학의 공시 내용을 전반적으로 점검 및 확인
- 허위정보 등재에 대한 검증 시스템 강화 : 다양한 사례 수집 및 배포
- 공시관리기관간 전산인프라 호환을 통한 사전·사후 검증시스템 구축
- 검증결과 허위자료 제출(정보공시 의도적 내용 조작)로 판명시 강력한 법적 제재 시행

제도 보완 및 개선

- 대학정보공시 오류정보 신고센터 활성화 및 포상제도 운영
- 대학알리미 상시모니터링 인력 보강 : 웹진 발행, 정기 미팅, 개선사항 도출
- 1년간 공시 정보에 대해 오류 미발견시 인센티브 제공 : 공시운영 모범 대학 선발
- 공시업무 전문성 유지 : 대학정보공시 총괄담당자 및 입력담당자 공시 교육 강화 및 의무화

22

정보공시제 개선방안 (2/4)

안정화 유지

안정적인 공시 인프라 구축

- 정보공시관련 기관들의 안정적인 전산인프라 구축 및 운영
- 정보수요자의 PC 환경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 호환성 문제 해결
- 입력 자료의 무결성 보장 및 장기보존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공시관련 기관간 연계 강화

- 정보 입력에서 공시까지의 유기적 연계 강화 및 체계적인 프로세스 정립
- 공시관련기관간 데이터 연계방식 표준화 : 학교 및 학과코드 통합
- 총괄관리기관과 항목별관리기관의 데이터 연계 안정화 및 개선
- 총괄관리기관은 주무부처인 교과부와 항목별 관리기관, 공시 주체인 대학과의 연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 수행

23

정보공시제 개선방안 (3/4)

효율적 운영·관리

대학, 대학정보공시센터 행정부담 경감

- 대학 : 전담인력 운영, 대학정보공시센터 : 정부의 과감한 물적·인적 자원 지원 필요
- 명확하고 충실한 지침서 제작 필요 : 사례 제시, 항목·용어 상세설명 등
- 항목별관리기관과의 데이터 중복조사 폐지 및 개선, 공시항목 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100개 미만)
- 공시내용 수정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처리
- 공시항목의 자료 입력은 대학정보공시입력시스템으로 일원화(직접입력으로 전환)
- 공시항목 형식 및 기준의 변화를 최소화 하여 입력 오류 방지

공시관련 관리기관간 협조체제 강화

- 총괄관리기관은 항목별관리기관 및 대학과의 정보 조사 및 수집 일정을 조율
- 각 기관의 역할, 책임, 권한을 명확히 하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및 커뮤니케이션 강화
- 조사 기준과 코드를 표준화하여 모든 기관이 통일화된 기준으로 정보가 커뮤니케이션 될 필요가 있음

클센터 서비스 개선

- 상담직원 인력 보충 및 전문화 : 지침서 및 전화응대 교육 필수
- 문의사항에 대한 피드백 강화 : 문의 접수 및 답변 히스토리 관리
- 우수 상담직원 포상제도 실시 : 친절성, 답변 만족도 및 신속성 등 평가

대학정보공시제 자체에 대한 평가와 성찰

- 공시정보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정보공시제도의 문제점 진단 개선 방향 도출
- 공시항목의 존폐에 관한 절차 및 체계 구축 : 대학을 포함한 수요자의 입장에서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납득성 필요
- 총괄관리기관 주관하에 사회변화를 수용·적용하기 위한 공시 내용의 정기검토 필요

24

정보공시제 개선방안 (1/4)

활용도 제고

정보 공시에 대한 인식 제고

- 정보 수요자에 대한 정보공시제 적극 홍보
- 수험생·학부모 : 입시시기에 포탈사이트, 입시관련 책자 등을 통해 정보 공시 활용을 권고하는 홍보 필요,
- 기업, 연구기관 등 : 대학에 대한 정보는 대학알리미에서 우선 참고할 수 있다라는 인식 조성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 공시정보 수요자별 대학정보공시 설명회 개최 : 공시제 홍보 및 수요 조사
- 대학알리미 이용자별(학생/학부모, 기업, 대학, 정부, 연구기관 등) 맞춤 정보 제공 : 정보 가독성 및 이해력 제고
- 정보공시 항목 및 지침 확정을 위한 의견 수렴 및 결과 공고 : 대학 관계자, 정보 수요자, 전문가 대상
- 대학정보공시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 이용자별 각 1명 이상씩 구성
- 대학 공시정보 분석 서비스 강화

대학알리미 웹 인터페이스 개선

- [대학별 검색] 메뉴에서 전체 자료 다운로드 기능 추가
- 대학원별 정보 외에 전체 대학원 통합 자료 검색 기능 필요
- 공시항목에 대한 설명 및 도움말 강화 : 단순 통계 수치 습득 외 공시정보 이해력 증진

대학알리미 사용자를 위한 만족도·요구사항 조사 활성화

- 조사 및 반영 결과를 통계 분석자료와 함께 웹에 공지
- 우수 제안 또는 채택된 제안에 대해 경품 제공
- 정보수요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수요자 피드백을 적극 반영

25

감사합니다



기관평가인증의 동향

2011.8.9

김복기
(자문교수, 광운대학교)

목 차

- 서론
- 인증과 평가
- 인증기준의 비교
- 향후 방향

국제적인 고민(1)

- INTERNATIONAL NETWORK FOR QUALITY ASSURANCE AGENCIES IN HIGHER EDUCATION
- **고등교육의 대중화에 따른 질 관리 필요**
 - 과거의 고등교육은 엘리트 학생에 한해서만 문호를 개방하였으나 1960년대 초부터 보다 광범위하게 능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호를 개방. 이에 따른 ‘**교육의 대중화**’는 **고등교육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관심을 이끔
- **고등교육 졸업생의 국제적 상호 등가성에 따른 이동**
 - 고등교육기관들 사이의 서로 **다른 자격 유형과 체계들이** 학생과 **졸업생들이 나라 간에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서로 다른 **교육시스템과 조화롭게 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구

3

국제적인 고민(2)

- **고등교육 질 관리를 위한 인증기관**
 - 최근, **공적인 책무성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발달은 나라 또는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 시스템들의 질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수 많은 **외부 질 보증(EQA)** 메커니즘의 증가를 이끌어왔음
- **외부 질 보증(EQA) 메커니즘**
 - External quality assurance(EQA)
 - 본래 정부에 의해서, 고등교육기관들 사이에서 질을 보증하는 고등교육기관 협의체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설립되어짐.
 - 이들의 주요 접근 방식은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인증(accreditation)**’, ‘**감사(audit)**’, ‘**사정(assessment)**’으로 요약될 수 있음.

4

국가의 고민

- 어떠한 인력양성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가?
 - 교육체계 구성 : 기본교육 + 고등교육 + 평생교육 등
 - 초등 및 중등 교육기관, 고등 교육기관, 기타 교육기관
 - 운영을 관리 감독(질 관리?) : 고등교육법과 관련 시행령
- 방안 ?
 - 다양한 지원 정책과 평가를 통한 개선 추구
 - 인프라 구축에 중점 + 연구실적 + 교육 ?
 -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인프라는 어느 정도 수준 달성 ?
- 그럼 이런 교육기관의 교육에 대한 질(quality)관리는 ?
 - 보다 체계(시스템)적인 접근은? 벤치마킹?
 - 인증제도라는 수단을 적용해 볼 시점?
 - 고등 교육기관 인증 + 프로그램 인증

5

대학의 고민

- 학생을 가르칠 때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 학생들의 미래 : 인성, 전공능력 등 -> 진학, 취업 등
 - 졸업 후 진출할 분야에서 요구하는 능력
 - 그 학생들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그 능력들을 갖고 졸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
- 지금까지 다양한 노력을 경주
 - 대학(교육)단위 별 자체적인 교육강화 프로젝트
 - 교수개인 별로 다양한 교육방법의 적용
 - 그러나 Ad hoc -> 효과가 크지 않음 : 산업체의 불만
 - 또한 국제적인 실질적인 상호 등가성(통용성)은 ?
- 보다 체계(시스템)적 접근법은? -> 인증제도를 선택
 - 인증제도라는 수단을 적용해 볼까!!!

6

다양한 평가의 모습



우리나라의 인증(평가·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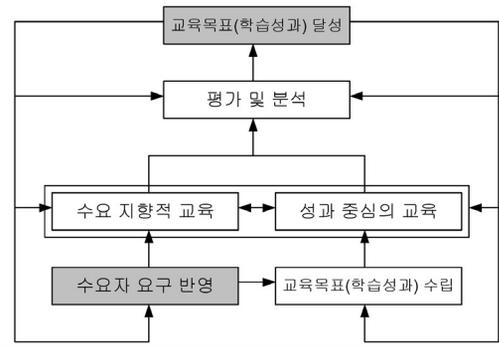
- 정부는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과 질 관리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기존 대학협의체 중심의 대학종합평가(또는 학과평가)에서 **정부 인정기관에 의한 평가·인증제로 전환하고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
 -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제정 2007.5.25 법률 제8492호)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신설 2007.10.17)
 - 대학의 정보공시, 자체평가, 정부 인정기관에 의한 평가·인증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제시
 - 정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통한 **대학교육의 질 보장 체제의 정착에 대한 기틀 마련**
 -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기준 고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26호, 2009. 6. 30)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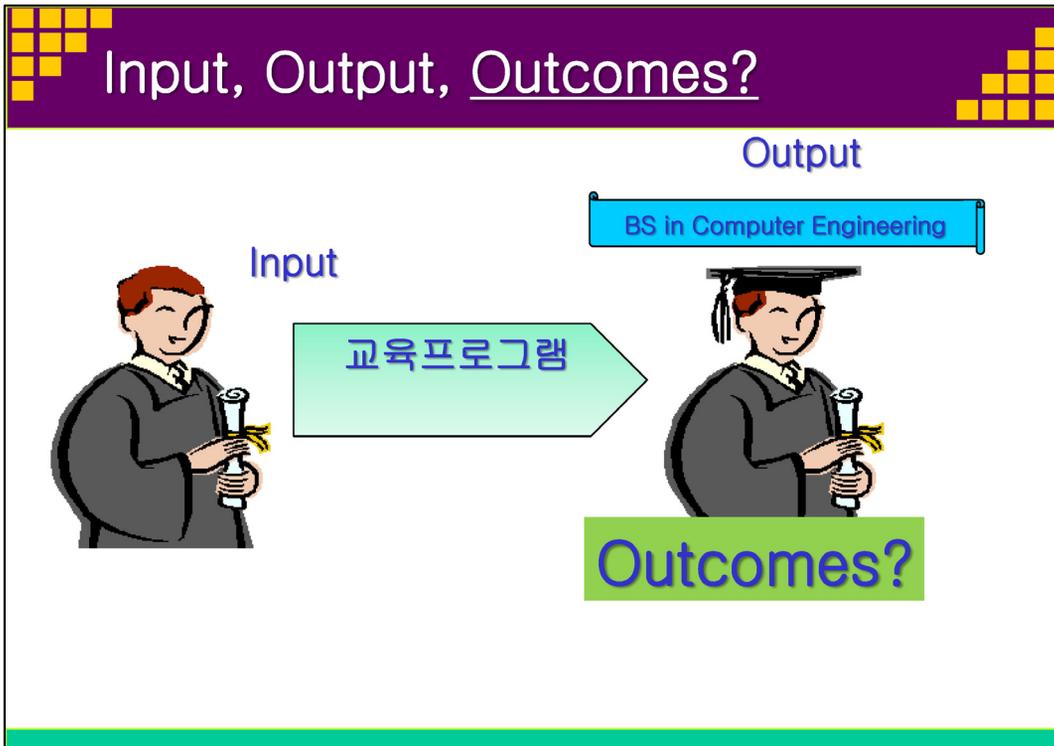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질 보증체계 일반

- 정보공시
 - 국민의 알 권리 관점
- 자체평가
 - 매년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
 - 검토를 할 수 있는 과정이 부재함
- 기관인증
 -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막 시작함)
- 결과활용
 - 기관인증평가를 활용하여 교육의 질 관리와 개선 유도
- 발전방향 ?

인증의 철학

- 성과중심(Outcome-based) 교육 : close-the-loop
 -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학생성과(student outcome), 졸업생 역량(graduate attribute))
 - 달성할 목표설정, 체계의 구축, 실행, 피드백, 개선 등
- 수요지향적(Demand-driven) 교육
 - 이해당사자 참여
 - 다양한 의견수렴
- 달성 관점의 구분
 - 입력(inputs)
 - 체계(systems)
 - 출력(outputs)
 - 성과(outcome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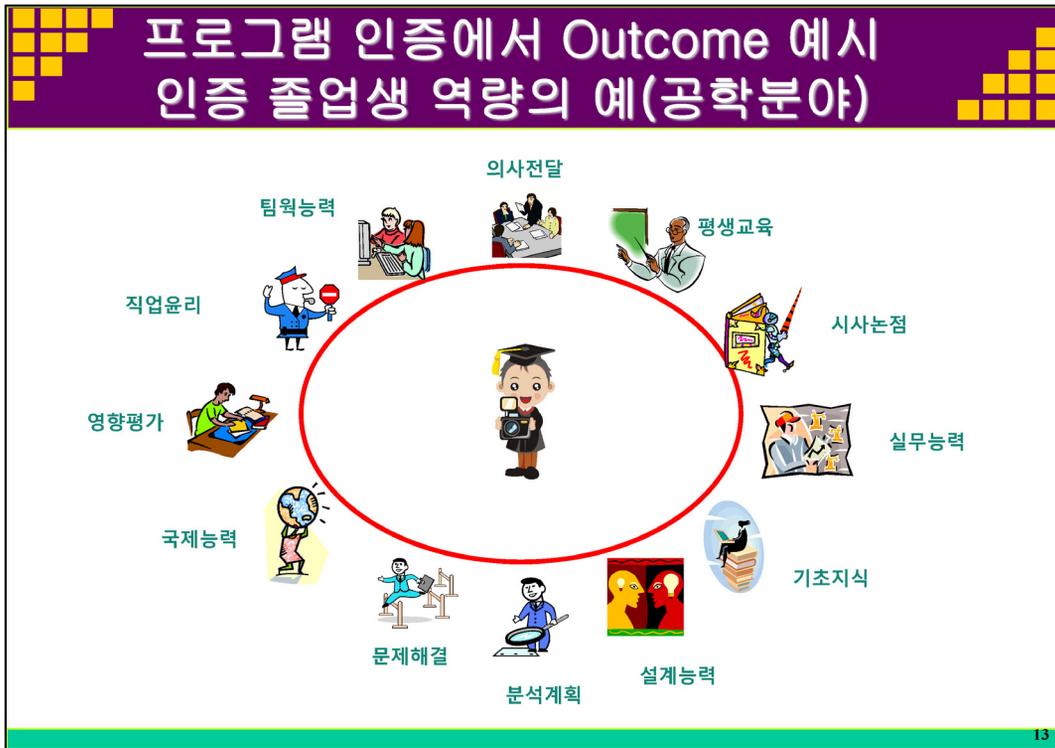




Input, Process, Output과 Outcomes

| 구분 | Input | Process | Output | Outcomes |
|------|-------------------|-------------------|---------------------|------------------------------|
| 학생 | 입학생 성적분포 | 재학기간 중 성적 및 학생 활동 | 졸업학점분포, 졸업생 수 | 졸업 후 학생의 능력과 자질 |
| 교수진 | 교수진의 학위 취득대학 분포 | 교수의 학생지도 및 연구활동 | SCI 논문 수 (양적 평가) | 논문의 인용횟수(질적 평가) |
| 교육환경 | 실험실, 강의실, PC 시설 등 | 구성원들의 적극적 활용 | 1년 동안 활용 실적, 관리일지 등 | * (교육목표, 학습성과) 달성도에 도움 여부 분석 |

Outcome 달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체계 수립과 운영을 통한 CQI



Input-Based vs. Outcome-Based

- Input-Based Criteria vs. Outcome-Based Criteria
 - Input-Based Criteria, Bean-Counting
 - Driver: TaylorMade
 - iron : Honma
 - putter : Odyssey
 - shoes : Footjoy
 - Outcome-Based Evaluation
 - driving distance : 270(m) ?
 - GIR(green in regulation)
 - putt average : 1.6/hole
 - scrambling : par save

14

일반적인 평가와 인증의 차이

- 추구하는 일반 목적과 시행절차는 매우 유사함
- 평가 (assessment & evaluation)
 - 필요에 의해 만든 평가기준을 통하여 “Snapshot”을 찍어 순위를 매기고, 이에 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개념으로 연구,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시행
 - 정량적인 평가 위주로 진행 : 평가표 관점, 포물라 평가
 - 순위가 중요함
- 인증 (assessment & evaluation , accreditation)
 - 사전에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제도, 교육환경과 교육제도의 운영실적(성과, outcome) 및 개선실적 등을 평가, 주로 교육(인력양성)을 주 대상으로 시행
 - 정성적인 평가 위주로 진행 : peer review 관점
 - 순위보다는 최소요건(minimum requirement, 혹은 성과 관점에서 최소요건)을 넘는지에 대한 판단
 - 평가를 통하여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인증을 부여함

15

국외의 기관인증의 위력

WASC 인증

◆NMC&NMA◆ (79) 목록보기 | 요약보기 | 펼쳐보기

사이판NMC대학 유학- 최근 주요 이슈,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NMC's Accreditation, WASC인증 실패로 인한 폐교 위기?

◆NMC&NMA◆

굿맨 2010.07.18 15:50 http://blog.daum.net/goodman0078/663 **복사**

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지금 사이판에 있습니다.

사이판에 들어 와보니 NMC가 폐교된다고 하는등 신문에서 떠들썩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 생각은 개인적일지 몰라도 ^^ 절대 폐교 안됩니다.

사실 WASC가 중요한 요인입니다. ~

인증기관의 예 : WASC의 인증목적

- <http://www.acswasc.org/>

The Purpose of Accreditation

Accreditation is a term that originally meant *trustworthiness* in its middle French, Old Italian usage. The original purpose of accreditation in the United States was designed to encourage the standardization of secondary school programs, primarily to ensure the benefit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that graduating students had mastered a particular body of knowledge. However, today the process developed by the Accrediting Commission for Schools,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 involves a dual purpose that continues the expectation that schools must be worthy of the trust placed in them to provide high quality learning opportunities, but with the added requirement that they clearly demonstrate that they are about the critical business of continual self-improvement.

Ultimately, the accreditation process is all about fostering excellence in the elementary, secondary, adult, postsecondary and supplementary education programs we accredit. Our fundamental cause involves helping schools meaningfully create the highest quality learning experience they can envision for all students. It is WASC's consistent purpose to professionally support schools in creating for themselves a clear vision of what they desire their students to know and be able to do and then to ensure that efficient and relevant systems are in place that predictably result in the fulfillment of those expectations for every child.

The capacity of any organization to improve is directly related to its ability to recognize, acknowledge, and act on its identified strengths and limitations. The accreditation process is a vehicle that enables schools to improve student learning and school performance based on an analysis of those strengths and limitations. Participating schools must meet rigorous, research-based standards that reflect the essential elements of a quality and effective school, but again, must also be able to demonstrate engagement in as well as capacity to provide continuous school improvement.

17

인증기관의 예 : WASC 인증제도(1)

- WASC(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 College)
 - 미국 서부 교육 연합회의 약자로서 미국내의 공립, 사립학교, 그리고 대학교 등의 공신력 있는 평가를 담당하는 인정 기구 중의 하나임
 - 평가대상 : 처음엔 미국 영토 안에 있는 학교를 평가 하는 기구였으나 현재 **미국식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학교들도** 이 기구의 인정을 받게 됨
 - 취득 절차와 유지가 까다로운 인증자격을 갖춘 학교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표준화된 교과과정의 교육(교육과정 혹은 학위과정)을 받는 학교라는 인정을 받게 됨.

18

인증기관의 예 : WASC 인증제도(2)

- WASC(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 College)
 - 평가 작업은 **자체 평가와 방문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다양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한번 인증 받았다고 해서 계속 유지 되는 것은 아니며 **계속적인 WASC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인증제도를 운영**하여 함
 - WASC 인증은 **그 취득 절차와 유지가 까다롭기로** 유명함
 - 통상 WASC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초 신청이후 인증평가 후보자격(Candidate Status) 취득에서부터 해당학교 실태조사, 권고안 이행여부 감사 등등의 과정을 거쳐 통상 3년 이상 ~수 년이 걸려야 최종 정식 인가를 받음
 - 또 WASC 인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계속인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 3년, 5년씩 **계속적인 WASC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함

19

인증기관의 예 : WASC 인증제도(3)

- WASC(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 College)
 - 만약 WASC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인증 및 교과인증 기준에 조금이라도 부적합 하면 즉시 **학교인증이 바로 취소될수도** 있음.
 - 따라서 WASC 에서 인증을 받은 학교는 끊임없이 해마다 WASC의 권고안을 실행하고, 실행한 결과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고, 최신의 학교운영과 교과과정의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학교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함.**

20

국가간 인증기준의 비교

| 기준 | 평가원 | NWCCU(미국) 2003 | Niad-UE(일본) | 직명원 |
|----|------------------|--|---|--------------|
| 1 |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 Institutional Mission and Goals, Planning and Effectiveness | Purpose of University |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
| 2 | 대학구성원 (교수 직원 학생) | Educational Program and Its Effectiveness | Education and Research Structure | 교육 |
| 3 | 교육 | Students | Academic staff and education supporting staff | 산학협력 |
| 4 | 교육시설 | Faculty | Student admission | 학생 |
| 5 | 대학재정 및 경영 | Library and Information Resources | Academic programs | 교원 |
| 6 | 사회봉사 | Governance and Administration | Effectiveness of institutional performance | 도서관 |
| 7 | | Finance | Student support | 경영 및 관리체계 |
| 8 | | Physical Resources | Facilities | 재정 |
| 9 | | Institutional Integrity | Internal quality assurance system | 물적자원 |
| 10 | | | Finance | 대학의 책무와 교육개선 |
| 11 | | | Management | |

21

NWCCU OLD vs. NEW(2010)

| 기준 | NWCCU(미국) 2003 | NWCCU(미국) 2010 |
|----|--|---|
| 1 | Institutional Mission and Goals, Planning and Effectiveness | Mission, Core Themes, and Expectations |
| 2 | Educational Program and Its Effectiveness | Resources and Capacity : Governance / Human Resources / Education Resources / Student Support Resources / Library and Information Resources / Financial Resources / Physical and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
| 3 | Students | Planning and Implementation |
| 4 | Faculty | Effectiveness and Improvement |
| 5 | Library and Information Resources | Mission Fulfillment, Adaptation, and Sustainability |
| 6 | Governance and Administration | (참고 NWCCU : Northwest commission on Colleges & University) |
| 7 | Finance | |
| 8 | Physical Resources | |
| 9 | Institutional Integrity | |

22

Indicators of Standards

- Designed to guide institutions in a process of self-reflection that blends analysis and synthesis in a holistic examination of:
 - The institution's **mission and core themes**;
 - The translation of the **mission's core** themes into assessable objectives supported by **programs and services**;
 - The appraisal of the institution's **potential to fulfill the mission**;
 -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involved in **achieving and assessing the desired outcomes** of programs and services;
 - **An evaluation of the results** of the institution's efforts to fulfill its mission, assess its ability to monitor its environment, and adapt and sustain itself as a viable institution

23

WASC Criteria

A. ORGANIZATION FOR STUDENT LEARNING

- **SCHOOL PURPOSE** / GOVERNANCE / SCHOOL LEADERSHIP
- STAFF
- SCHOOL ENVIRONMENT
- **REPORTING STUDENT PROGRESS** / **SCHOOL IMPROVEMENT PROCESS**

B. CURRICULUM AND INSTRUCTION

- **WHAT STUDENTS LEARN** / **HOW STUDENTS LEARN**
- **HOW ASSESSMENT IS USED**

C. SUPPORT FOR STUDENT PERSONAL AND ACADEMIC GROWTH

- **STUDENT CONNECTEDNESS**
- PARENT / COMMUNITY INVOLVEMENT

D. RESOURCE MANAGEMENT AND DEVELOPMENT

- RESOURCES / RESOURCE PLANNING

24

프로그램 인증기관의 예 ABET



*Leadership and Quality Assurance in Applied Science,
Computing, Engineering, and Technology Education*

ABET Vision
ABET will provide world leadership in assuring quality and in stimulating innovation in applied science, computing, engineering, and technology education.

ABET Mission
ABET serves the public through the promotion and advancement of education in applied science, computing, engineering, and technology. ABET will:

- Accredit educational programs.
- Promote quality and innovation in education.
- Consult and assist in the development and advancement of education worldwide in a financially self-sustaining manner.
- Communicate with our constituencies and the public regarding activities and accomplishments.
- Anticipate and prepare for the changing environment and the future needs of constituencies.
- Manage the operations and resources to be effective and fiscally responsible.

왜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을 평가하여야 하나?

- 평가 없이 교육의 개선이나 시장(현실)의 변화에 대한 교육의 대응이 적절할까?
- 교양 및 전문(전공)분야 교육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
- 이러한 평가는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

(평가)인증기준

평가인증은 왜 하나?

한마디로 교육기관(단위)의 지속적 품질개선을 도와주기 위한 주기적인 외부평가

Key words: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Periodical, external evaluation

- 평가인증의 핵심:
 - 졸업생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는 교육과정 관리 (Quality Control)
 - 지속적인 질 개선 체계의 운영 및 개선
 - 졸업생의 능력과 자질 보장 (Quality Assurance)

평가·인증의 개념

- 기관 평가·인증
 - 인증기관이 규정한 **교육의 질 기준(인증기준)**을 충족하거나 또는 초과하는 대학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 **그 질을 보증하는 것**
 - 평가·인증의 주된 관심은 바로 대학이 교육수요자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질”**
 - 여기서 **“교육의 질”**을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대한 적절한 설정 그리고 그 달성을 위한 제조건들의 충족성과 효과성으로 이해하여야 함
 - 개별 대학들은 인증기관이 제시하고 있는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대학 스스로** 적절한 사명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 **사명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제반 역량을** 자체 평가를 통해 충분히 보여주어야만 함

인증제도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

- 학생의 교육 수준 향상 : 자질과 능력
 - 무엇에 대한 수준의 향상 ? : 입학/졸업시점, 비교할 대상?
 - 교육과정? 학습성과 ? 교육목표? : 이전과 지금 그리고 미래?
- 인증제도 : 졸업생의 질이 일정 수준 이상임을 보장
 - 졸업생의 품질을 보장(Quality Assurance)하는 체계 ?
 - Quality Control 체계 구축 및 운영 필요 ?
 -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CQI) 체계 구축 : 해당 교육기관 교육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입증
 - 구축된 모든 교육체계(시스템)의 실질적인 운영 ???
- 지속적 품질 개선의 실질적인 운영 및 개선결과
 - 체계 구축, 이행, 평가(측정), 분석, 피드백을 통한 개선
 - 공개를 통한 대외적인 신뢰도 확보 : 운영이 쉽지 않음

바람직한 인증제도 운영 결과

- 인증제도는 큰 틀에서 Quality Assurance(QA) 체계
- 또한 지속적 품질 개선(CQI) 체계와 Quality Control(QC) 체계의 운영

목표의 설정
 프로그램 차원 (CQI)
 개별학생 차원 (QC)

입학시점 450 (red circle)
 550 (QC)
 목표설정 650
 650 (CQI)
 졸업시점

교육과정의 수립
 - 교과과정
 - 비교과정
 교육과정의 운영

수준

입학시점 : 450점
 목표 : 650점 (분석결과반영)
 교육과정 수립/운영
 평가 : 졸업시점에 달성여부 측정
 분석 : 평가결과 분석
 개선 : 분석결과 피드백
 개선된 체계의 운영 및 개선결과 공개

550 570 650 670

학생별 졸업기준 프로그램 전체

지속적인 품질개선
 - 교육과정 등 개선
 - 목표 상향 조정

구체적인 목표 성취를 통하여 성과(outcomes)달성을 입증
 논리성과 효율성이 중요

인증기관이 해야 할 일

- **교육의 질적 향상**
 - 대학 평가를 통한 컨설팅 기능
- **산업체에 필요한 인력 양성 기틀 마련**
 - 대학 평가를 통한 교육과정 체계
- **국제화 시대의 활동을 위한 준비**
 - 인증을 통하여 상호 등가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아시아 공동체에서 주도적 역할 가능

33

향후 보완사항

- **국제적 실질적인 상호등가를 위한 노력**
 - 국제적인 협력 증대를 위한 노력
 - 한중일 CAMPUS ASIA 추진
 - UNESCO Regional Convention
- **인증제도의 보완**
 - 인증기준의 평가항목 조정
 - 성과중심의 질 보증체계 구현
 - 평가준거를 이용한 평가방법의 개선 필요
- **국가의 질보증 체계의 개선**
 - 정보공시, 자체평가, 인증평가, 결과활용
 - 인증평가의 기본요건으로 자체평가(와 정보공시)를 활용하는 체계로 개선

34

감 사 합 니 다

질 의 및 응 답

국제화대책위원회

자문교수 이옥화 (충북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교육을 위한 대학간 커리큘럼 개발

2011. 8. 9.

이 옥 화

(자문교수, 충북대학교)

고등교육의 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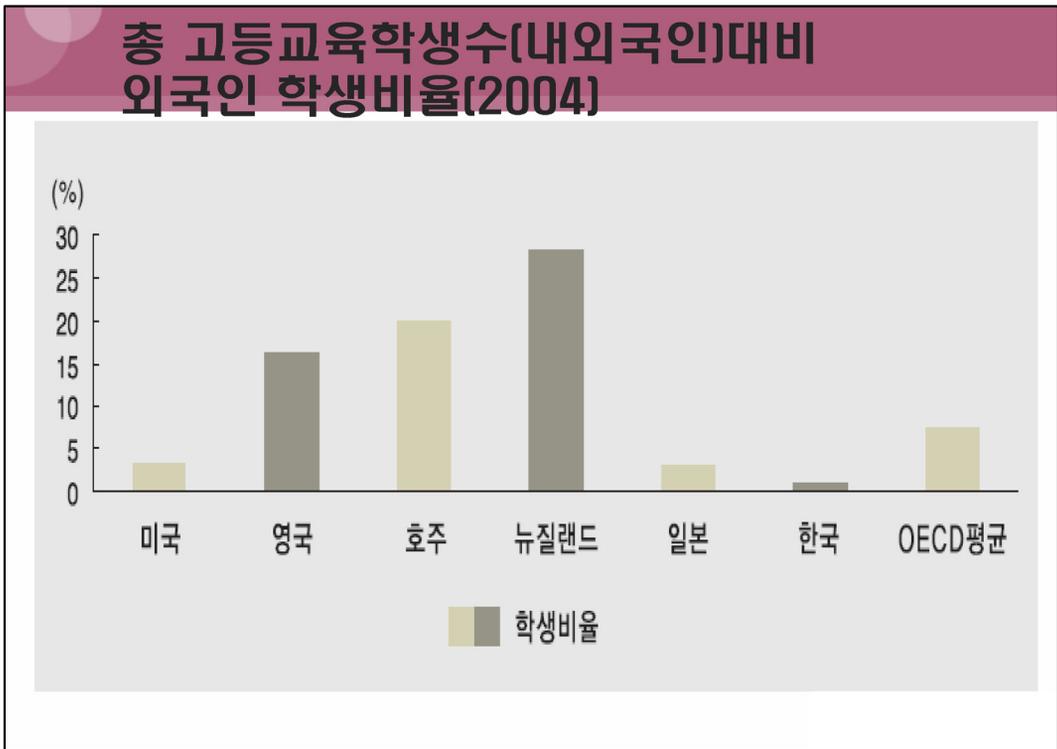
- **대학교육의 글로벌 경쟁 심화**
 - 대학들간의 경쟁력을 세계적인 기준으로 평가 및 공개
 - 대학생들은 전세계적으로 대학 교육을 쇼핑
 - 범세계적인 우수 학생 및 교수 유치 경쟁이 예상
 - 학교 평가 순위의 중요성 및 영향력이 증대됨
 - 한국은 교육서비스 수지 적자폭이 큼

유학생 현황

(2010.4.1기준 교육통계)

| 국가 | 중국 | 일본 | 미국 | 호주 | 전세계 |
|-------------|-------------------|-------------------|-------------------|------------------|-------------------|
| 한국내 외국인 유학생 | 57,783 (68.9%) | 3,876 (4.6%) | 2,1932 (2.6%) | 134 (0.2%) | 83,842 (100%) |
| 외국내 한국인 유학생 | 64,232 (25.5%) | 27,965 (11.1%) | 75,065 (29.8%) | 17,829 (7.1%) | 251,887 (100%) |

한국은 7.1% (2004년도 통계 0.7%- 당시 OECD국 평균 9.6%) 로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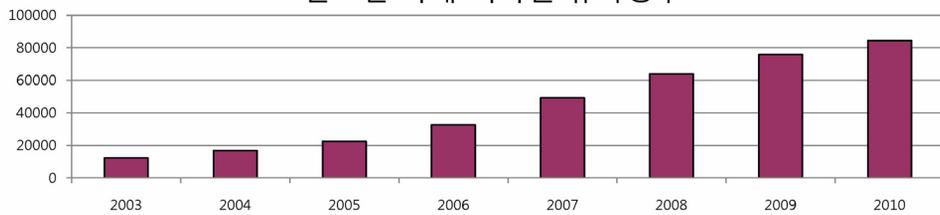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2010. 4. 1기준)

• 연도별 유학생수

| 연 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유학 생수 | 12,314 | 16,832 | 22,526 | 32,557 | 49,270 | 63,952 | 75,850 | 83,842 |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수



유학형태별 유학생수 (2010. 4. 1기준)

| 유 학 형 태 | 2009년도 | 2010년도 | 증감 |
|---------------|---------------|---------------|--------------|
| 자비유학생 | 64,271 | 71,843 | 7,572 |
| 정부초청 장학생 | 1,629 | 1,942 | 313 |
| 대학초청 장학생 | 6,634 | 8,091 | 1,457 |
| 자국정부 파견장학생 | 503 | 493 | -10 |
| 기타 | 2,813 | 1,473 | -1,340 |
| 합 계 | 75,850 | 83,842 | 7,992 |

출신지역별 유학생수

| 지역 | 어학연수 | 과정별 | | | | | | 기타연수 | 합계 |
|-------|--------|--------|-------|-------|-------|-----|--------|-------|--------|
| | | 인문사회 | 공학계 | 자연과학계 | 예체능계 | 의학계 | 계 | | |
| 아시아 | 15,372 | 39,392 | 8,702 | 4,076 | 3,778 | 470 | 56,418 | 48 | 71,838 |
| 아프리카 | 162 | 433 | 112 | 47 | 5 | 11 | 608 | 809 | 1,579 |
| 오세아니아 | 64 | 118 | 14 | 9 | 11 | 6 | 158 | 1,154 | 1,376 |
| 북미 | 680 | 1,180 | 100 | 125 | 110 | 91 | 1,606 | 16 | 2,302 |
| 남미 | 152 | 227 | 57 | 14 | 10 | 3 | 311 | 4,693 | 5,156 |
| 유럽 | 634 | 699 | 106 | 41 | 47 | 6 | 899 | 58 | 1,591 |
| 합계 | 17,064 | 42,049 | 9,091 | 4,312 | 3,961 | 587 | 60,000 | 6,778 | 83,842 |

주요 국가별 유학생 현황

| 국가 | 중국 | 일본 | 몽골 | 미국 | 베트남 | 대만 | 기타 | 계 |
|--------|--------|-------|-------|-------|-------|-------|--------|--------|
| 유학생수 | 57,783 | 3,876 | 3,333 | 2,193 | 1,914 | 1,419 | 13,324 | 83,842 |
| 비율 (%) | 68.9 | 4.6 | 4.0 | 2.6 | 2.3 | 1.7 | 15.9 | 100 |

유학생 유치 상위 10개교 [2010.4]

| 학교 | 어학연수 | 대학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기타 | 합계 |
|--------|-------|-------|------|------|-----|-------|
| 경희대학교 | 891 | 1,739 | 482 | 168 | 197 | 3,477 |
| 연세대학교 | 1,665 | 681 | 489 | 166 | 403 | 3,404 |
| 이화여대 | 1,834 | 165 | 226 | 31 | 777 | 3,033 |
| 성균관대학교 | 269 | 1,420 | 335 | 154 | 299 | 2,477 |
| 건국대학교 | 317 | 1,332 | 298 | 119 | 396 | 2,462 |
| 서울대학교 | 518 | 673 | 567 | 256 | 224 | 2,238 |
| 고려대학교 | 705 | 348 | 490 | 141 | 390 | 2,074 |
| 한양대학교 | 427 | 1,073 | 276 | 135 | 78 | 1,989 |
| 중앙대학교 | 407 | 892 | 384 | 31 | - | 1,714 |
| 상명대학교 | 787 | 723 | 76 | 7 | 39 | 1,632 |

1000명 이상 유학생 보유 대학 [2010.4.1기준]

| 순위 | 대학명 | 과 정 별 | | | | | 합계 |
|----|----------|-------|-------|------|------|------|-------|
| | | 어학연수 | 대학 | 대학원 | | 기타연수 | |
| | | |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 |
| 학교 | 어학연수 | 대학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기타연수 | 합계 | |
| 1 | 경희대학교 | 891 | 1,739 | 482 | 168 | 197 | 3,477 |
| 2 | 연세대학교 | 1,665 | 681 | 489 | 166 | 403 | 3,404 |
| 3 | 이화여자대학교 | 1,834 | 165 | 226 | 31 | 777 | 3,033 |
| 4 | 성균관대학교 | 269 | 1,420 | 335 | 154 | 299 | 2,477 |
| 5 | 건국대학교 | 317 | 1,332 | 298 | 119 | 396 | 2,462 |
| 6 | 서울대학교 | 518 | 673 | 567 | 256 | 224 | 2,238 |
| 7 | 고려대학교 | 705 | 348 | 490 | 141 | 390 | 2,074 |
| 8 | 한양대학교 | 427 | 1,073 | 276 | 135 | 78 | 1,989 |
| 9 | 중앙대학교 | 407 | 892 | 384 | 31 | - | 1,714 |
| 10 | 상명대학교 | 787 | 723 | 76 | 7 | 39 | 1,632 |
| 11 | 청주대학교 | 171 | 1,096 | 100 | 6 | 34 | 1,407 |
| 12 | 동국대학교 | 161 | 878 | 235 | 33 | 63 | 1,370 |
| 13 | 전북대학교 | 64 | 573 | 329 | 133 | 157 | 1,256 |
| 14 | 경북대학교 | 196 | 664 | 188 | 101 | 76 | 1,225 |
| 15 | 인하대학교 | 198 | 570 | 171 | 173 | 88 | 1,200 |
| 16 | 선문대학교 | 341 | 718 | 97 | 21 | 8 | 1,185 |
| 17 | 한국외국어대학교 | 386 | 422 | 101 | 37 | 214 | 1,160 |
| 18 | 계명대학교 | 140 | 823 | 117 | 9 | 44 | 1,133 |
| 19 | 전남대학교 | 247 | 548 | 218 | 98 | 20 | 1,131 |
| 20 | 배재대학교 | 179 | 626 | 142 | 25 | 128 | 1,100 |
| 21 | 영남대학교 | 125 | 608 | 201 | 72 | 90 | 1,096 |
| 22 | 충남대학교 | 218 | 343 | 295 | 119 | 80 | 1,055 |
| 23 | 우석대학교 | 105 | 850 | 89 | 1 | - | 1,045 |
| 24 | 부산대학교 | 164 | 475 | 257 | 98 | 34 | 1,028 |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 국제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김귀성, 김영태(2010)

-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 영어전용 교육과정 운영,
 - 유학생 기숙사 확보 등 지원정책 수립,
 - 유학 안내 시스템의 개발 운영 등을 실시
 - 수도권 대학 보다는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활발
- 유학 중 가장 어려운 문제로는 언어, 학업 문제
- 유학예비교육 : 해당국 언어, 역사, 사회문화 등에 대한 사전교육으로 미비
- 한국어능력 : 유학을 결정하기 전 한국어능력이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 (58.4%)
- 한국어 말하기, 쓰기, 듣기 순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학사문제에 대한 상담 : 학과교수, 선후배
- 학사관련 정보의 획득원 : 도서관 (55.1%) 모바일 도서관
- 수업참여도 : 학부나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 유학생들이 여학원에 수학하는 학생에 비해 낮은 편
- 한국인교수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 분야로는 수업에 이해촉진, 유학생의 의견에 대한 고려, 공부방법 제시, 인간적인 상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대학 학습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주휘정(2010)

-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에 입학하기까지 보다 대학 입학 이후 학습지원체제의 부재, 영어강의의 부족, 캠퍼스의 낮은 이문화 이해 및 수용도 등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음
- 국내유학목적은 정규학위과정 이수
- 수업매개어 말하기 능력이 부족
 - 외국인유학생이 의사소통으로 인한 학습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의 다양한 구성원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학문적 토론이 대학교육의 필수요소라고 생각할수록 한국인 학생과의 강의실 내 관계는 불만족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대학 학습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주희정(2010)

- 팀프로젝트에서 한국학생들의 이문화 개방성 및 인내심 부족으로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협동학습에서 소외
 - 유학생 수용국의 주류 학생들은 언어 및 시간의 경제성, 편리성 등을 이유로 문화, 언어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 학생들과 학습을 위한 상호작용을 꺼린다
 - 한국인 학생들과 팀프로젝트를 통해 상호협력을 기대하였으나 그 경험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 강의실 밖에서 팀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면 한국학생들은 시간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한국어로만 대화를 하기 때문에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유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배제됨
 - 따라서 팀프로젝트에서 본의 아니게 프리라이더(free-rider)가 되고 만다.
- 이문화 및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ward diversity)
 - 성공적인 인턴십을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과 문화이해를 가장 중요한 요소
 - 한국 사회 전체가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학습환경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 고비용 저효율
 - 수강생 수가 소수인 외국인 학생을 배려해야 함
 - 교수는 이중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 한국 학생들에게 영어 강의는 학습성취 측면에서 비효율적
- 언어 장벽 : 한국어 강의, 영어 강의
- 교수방법의 특성
 - 교수별, 과목별, 교수법의 다양
 - 질관리 필요
 - 다양한 문화적 이해
 - 언어의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 공개 강의 자료의 적극적인 활용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방향

- 목적:
 -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에서 탈출
 - 학생: 수업의 질 향상
 - 학교: 학교 운영 비용 절감
 - 교수: 연구 및 수업을 위한 생산성 향상
- 방법:
 - IT기반의 학생주도적 능동적 학습
 - 학교간 수업 자료 및 방법의 공개 및 공유
 - 지역사회와의 연계로 학습 활동을 지원받음

대학의 교수학습 발달 방향

Pedagogy as knowledge transfer – understanding is socially constructed

- 집단지성, 적시학습, 개별화 교육
- Most everyday “real world” learning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are social, informal, and situated activities
- 사회 변화 수용 (적시교육)
- 학생주도적 융합형 과정
- 개성과 소질 반영
- 글로벌 인재의 부상

교수의 자기 역량 개발

- 평생학습자
 - 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함
- 교육연구자
 - 새로운 교수법, 평가 방법, 타교과와의 연계 융합 방법 등을 연구
- 커뮤니티와의 협력 coordinator
 - 학교 교육의 장을 실생활의 장으로 연결
 - 각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학교 교육의 확장
- 교육 디자이너
 - 개개인의 요구별 교육과정의 재구성
 -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제공

대학간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공유

- 대학간 자료 이용의 platform
 - KOCW
 - 전국의 대학 이러닝 센터
 - 대교협 산하 국가교수-학습연구원 (NITL)
 - 공개 교육 자료 Open Educational Resources
 - 콘텐츠 자유이용
 - CCL 운동 및 Open Source 운동 추진 중
- * CCL(Creative Commons License) : 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

국가교수-학습연구원 (NITL) (안)

- 대학 교수·학습개발센터들 간의 연계 및 교류의 활성화
- 권역 CTL, 대학 CTL 간에 교수-학습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체제
- 국가교수학습연구원
- 권역 교수학습센터
- 대학 교수학습센터

공개교육자료 (Open Educational Resources)

- 무료로 사용, 편집, 재배포가 가능한 학습자료
 - 무료 배포 및 이용을 허용하는 지적 재산권의 교수학습연구자료
 - 공유(Shareness), 개방(Openness), 참여(Participation), 협력(Collaboration)정신에 기반 : 누구나 사용 접근 허용, 사용허가 권리
- 공개의 의미 :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접근이 가능, 교육자료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음
 - 재사용 (reuse) : 콘텐츠 변경없이 사용 (복사)
 - 수정(revise) : 수정 변경 재구성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외국어 번역)
 - 혼합(remix) : 기존 콘텐츠에 수정된 콘텐츠를 섞어 새로운 내용을 만듦
 - 재분배 (redistribution) : 여러 유형의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권리 (콘텐츠 복사본을 친구에게 주기)

OER 콘텐츠의 단계

- 개발 :
동영상, 이미지, 사진 등의 MM를 DB 내 Learning Object화 하기
- 공개 :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활용 :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안 제시
- 소멸 :
생명을 다한 정보의 소멸을 제때 해야 정보의 신뢰성이 높아짐

OER 현황

- 중국
 - 150개 이상의 대학이 450여개 이상의 교육과정은 온라인에서 공유
- (<http://www.core.org.cn/en/>)
- 프랑스
 - 11개의 대학이 파리텍 오픈코스웨어 프로젝트 (ParisTech OCW project)에 참여하면서 2010년 현재 190여개의 교육과정을 제공
- (<http://graduateschool.paristech.fr/?langue=EN>)
- 일본
 - 24개. 대.이. 일본 오픈코스웨어 연맹을 설립하고 1,500여 교과목 제공
- (<http://www.jocw.jp/>)
- 미국
 - 2007년 현재 7개의 대학 (MIT, Rice, Johns Hopkins, Tufts, Carnegie Mellon, and Utah State University)이 참여 수천개 이상의 교과목 내용을 제공
- <http://ocw.mit.edu/>, <http://ocw.usu.edu/>, <http://cnx.rice.edu/>,
- <http://ocw.jhsph.edu/>, <http://ocw.tufts.edu/>, <http://www.cmu.edu/oli/>,
- 2010년 현재 24개 대학이 OCW 컨소시엄에 참여
- MIT는 2010년 현재 2000여 교과목을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

(Hewlett재단 보고서(2007) & OECD의 보고서(2008), 박인우(2010)에서. 인용)

국내의 OER 사이트

• 대학 OCW

- 경희대학교 OCW : <http://ocw.khu.ac.kr>
- 고려대학교 OCW : <http://ocw.korea.edu>
- 동양미래대학교 OCW : <http://ocw.dongyang.ac.kr>
- 서울대학교 OCW : <http://ocw.snu.ac.kr>
- 성균관대학교 아이캠퍼스 : www.icampus.ac.kr
- 숙명여자대학교 OCW : <http://ocw.sookmyung.ac.kr>
- 울산대학교 강의 공개 : <http://open.ulsan.ac.kr>
- 울산대학교 OCW : <http://ocw.ulsan.ac.kr>
- SNUi(서울대학교 공개강의) : <http://snui.ac.kr/>

• KOCW 사이트: <http://www.kocw.net>

KOCW

- <http://www.kocw.net/home/notice/noticeView.do?noticeId=10000>
- KOCW 공개 강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황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되며, 매달 첫째 날 업데이트 됨.
(2011.06.30 기준)

| 구분 | | 누적 | | | |
|----|----------|-------|---------|---------|---------|
| | | 기관수 | 강의수 | 강의자료 | 대표차시 |
| 국내 | 대학 | 112 | 1,861 | 24,335 | 19,218 |
| | · WCU | 27 | 638 | 6,469 | 5,141 |
| | · 광역 | 19 | 68 | 1,117 | 742 |
| | · 교육역량 | 11 | 67 | 921 | 785 |
| | · 인문사회지원 | 10 | 13 | 55 | 55 |
| | 유관기관 | 7 | 80 | 158 | 142 |
| | 소계 | 119 | 1,941 | 24,493 | 19,360 |
| 해외 | 해외공개강의 | 11 | 643 | 798 | 798 |
| | OAI | 3 | - | 118,974 | 118,974 |
| | 소계 | 14 | 643 | 119,772 | 119,772 |
| 계 | 133 | 2,584 | 144,265 | 139,132 | |

※ WCU, 광역, 교육역량 및 인문사회지원 콘텐츠 및 기관 수는 모두 대학에 포함되는 수치임

- Wikiversity (<http://www.wikiversity.org>),
- OER Commons (<http://www.oercommons.org>),
- YouTube EDU (<http://www.youtube.com/education>),
- Academic Earth (<http://academicearth.org/>),
- Peer 2 Peer University (<http://p2pu.org>)
- TED www.ted.org

왜 많은 대학들은 OER에 참여하나?

- 국제화 (globalization)
 - 고등교육은 자국의 국경에 의해 보호받지 못함. 전세계 대학들과 공개 경쟁하는 시대
- 인구 분포
 - 학령인구의 감소
 - 평생교육 인구의 증가
 - 공개교육자료는 성인 교육에 효과적
- 고등교육의 governance
 - 교육의 수혜자들이 대학의 책무성, 효율성, 효과성에 의문시
- 과학기술의 발달
 - 인터넷에서의 이러닝 발달
- 대학의 이타성
 - 대학의 교육 기부 : 사회에 기여
- 비용 절감
 - 자료의 재사용
 - 자료의 수집 관리 보관 용이
- 자료 공개로 교수의 역량 강화
- 신입생 모집에 활용

OER 활용에 따르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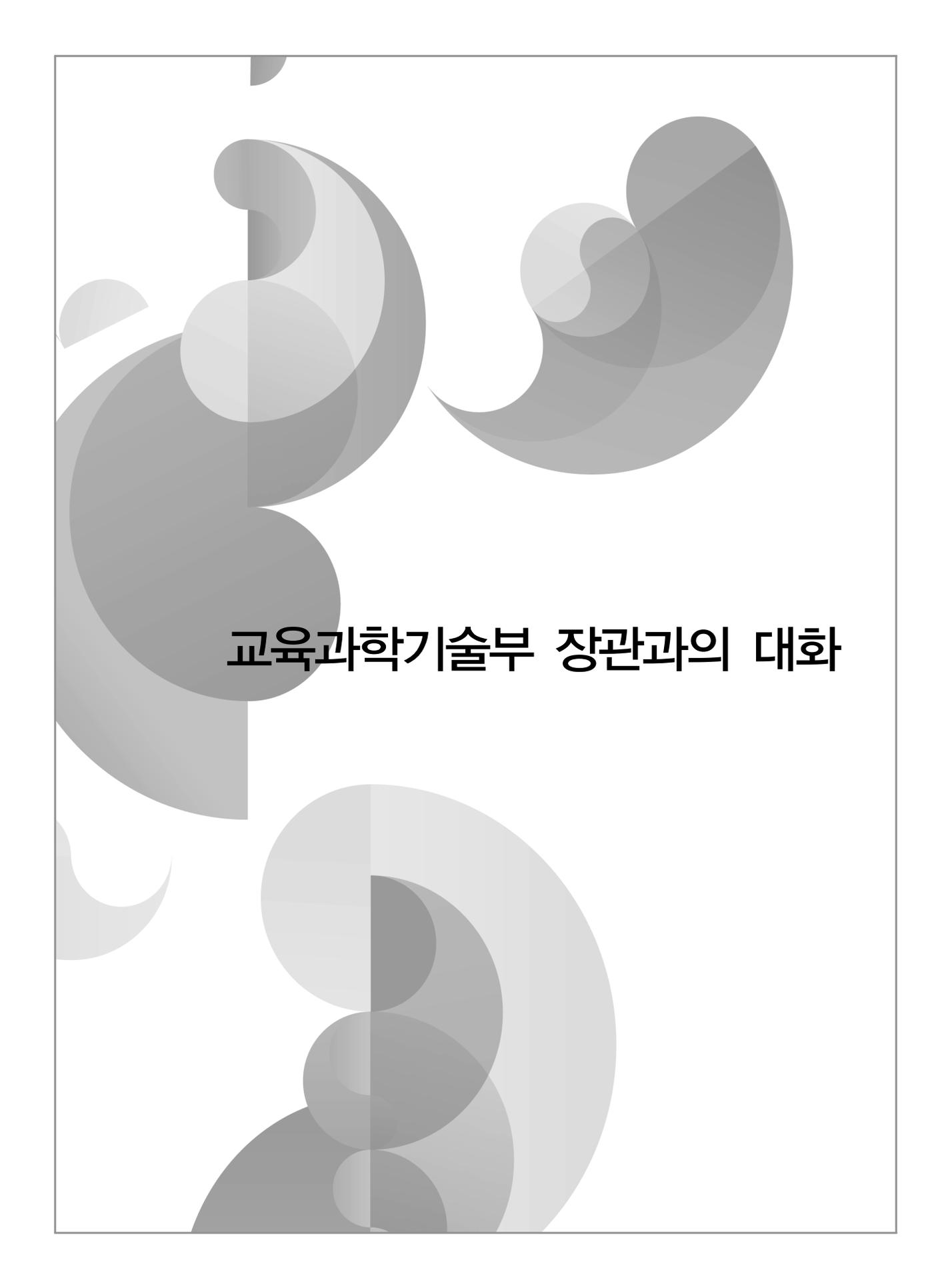
- 공개교육자료가 활용보다 공개에 관심이 쏠려
 - KOCW 활용을 정규 학점교류에 적용 미비
 - 이러닝 학점 교류 종합 관리 시스템 부재
 - 이러닝 학점 교류에 따르는 질관리 시스템 필요
 - 저작권 문제 해결 방안
 - 활용에 따르는 정책적 지원 개발 필요
- 저작권 보호
 - 교수가 학교의 월급을 받으며 개발한 자료들은 학교에서 소유권을 갖는가? 교수 개인이 소유권을 갖는가?
 - 저작권 관리 원칙의 수립과 함께 권리의 표현, 사용 범위의 공지,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따른 저작권 관리 방안 수립
 - 자료 제공자의 권리 보호
 - 공개자료에 포함된 자료의 권리 보호
 - 학습 콘텐츠 저작권 운용 원칙 수립
 - 학습관리 시스템에서 접근 및 운용할 수 있는 저작권 운용 방안 수립

OER 활용에 따르는 이슈

- 질관리
 - 교육정보는 질관리가 생명. 질의 수준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용자가 줄고 이는 다시 무료정보의 제공자를 유인하는데 치명적
 - 고비용을 들이지 않고 무료교육정보의 질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모델이 필요
 - 품질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 및 공개된 자원을 유지 관리를 위한 모델 개발 및 운영
 - 질관리는 궁극적으로 커뮤니티에서 하게 해야 됨
 - 무료로 제공되는 교육정보의 품질관리의 주체를 다수의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체제로 구축할 것
 -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함
- 운영 및 관리 모델
 - OER은 수익은 없고 지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고비용 서비스
 -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활용 모델이 제시되어야 함.

참고자료

-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 6회 회의자료 정보화전략위원회(2011) 교육과학기술부 발표자료 (6.29)
- 김귀성,김영태(2010).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 국제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원광대 학생생활연구 제29호 43-66.
- 박인우(2010) 고등교육 공개 교수학습자료와 정규교육 연계 방안연구 2010-12 keris, CR 2010-12
- 박정호 (2010). 교육정보 자유이용체제 구축 방안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보고 krc 2010-10 (2010.12월)
- 임진혁(2011) "교육의 질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한 파괴적 교육혁신", 2011.6.3
- 주휘정(2010),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대학 학습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고려대 교육문제연구, 2010.3. 제 36집 135-159
-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0)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의 고등교육 (The tower and the cloud), 한국연구정보센터 고등교육정보화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IT와 국가발전전략 심포지엄 2011.6.21
- UNESCO(2009). Open Educational Resources Conversations in Cyberspace, 2009
- Next knowledge Factbook 2010
http://www.nextupresearch.com/Site/nextup_files/Next%20Knowledge%20Factbook%20v4.pdf.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의 대화



MEMO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enclosed by a thin black border. The interior of this area is filled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providing a guide for writing. There are 25 dotted lines in total, spaced evenly down the page.



MEMO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enclosed by a thin black border. The interior is filled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providing a guide for writing.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MEMO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enclosed by a thin black border. The interior is filled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providing a guide for writing.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MEMO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enclosed by a thin black border. The interior is filled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providing a guide for writing.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MEMO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enclosed by a thin black border. The interior of this area is filled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providing a guide for writing.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MEMO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enclosed by a thin black border. The interior of this area is filled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providing a guide for writing.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2011 하계대학총장세미나
글로벌시대의 대학 국제화 강화 전략**

2011년 8월 일 인쇄

2011년 8월 일 발행

발행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5

홈페이지 : <http://www.kcue.or.kr>

전 화 : (02)6393-5200

인쇄처 : (주)현대아트컴 (02)2278-4482

ISBN : 978-89-6609-068-6

※ 이 책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 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